#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공직선거 업무편람 

2018. 3.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담당 공무원 교육 계획

## 교육 개요

$\theta$ 기
간: 2018.3.26. ~ 4.17. 09:30 ~ 17:10
© 대 상 : 10개 권역 7,800 여 명
※ 시•도(3명), 시•군•구(3명), 읍•면•동(2명) 선거•전산 담당자

## - 일정 / 장소

| 권 역 | 인천 | 서울 | 경기 | 강원 | 대전, 세종, 충북, 충남 | 굉주, 전남 | 전북 | 부산, 울산, 경남 | 제주 | 대구, 경북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 | 3.26. (월) | 3.27.(화) | 3.28. (수) | 4.3. (화) | 4.4. (수) | 4.5. (목) | 4.10. (화) | 4.11. (수) | 4.13.(금) | 4.17. (화) |
| 장 소 |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 세종대학교 대양홀 | 안산 문회예술회관 | 한림대학교 일성아트홀 | 충북 학생교육 문화원 | 전남도청 김대중강당 | 군산대학교 아카데미홀 | 부산시민회관 대강당 | 제주 웰컴센터 | 의성 문화회관 |
| 인 원 | 340명 | 930명 | 1,221명 | 431명 | 1,037명 | 880명 | 555명 | 1,267명 | 96명 | 1,148명 |

## 세부시간계획

| 시 간 | 내 용 | 비 고 |
| :---: | :---: | :---: |
| 09:30~10:00 (30') | - 등록 및 안내 | 선거의회과/자치단체 공무원 |
| 10:00~10:05 (5') | - 개회 및 국민의례 | 사회자 |
| 10:05~10:10 (5') | - 인사 말씀 | 지방자치분권실장 자치분권정책관 선거의회과장 |
| 10:10~11:00 (50') | - 법정선거사무처리 요령 |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
| 11:00~11:30 (30') | - 사건•사고 사례 및 예방 대책 | 중앙선관위 (선거1과) |
| 11:30~12:20 (50') | -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 중앙선관위 (조사1과) |
| 12:20~12:30 (10') | - 「공직선거비리익명신고센터」 운영 개요 |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
| 12:30~13:50 (80') | - 점심 |  |
| 13:50~16:00 (130') | - 선거인명부작성 프로그램 운용 요령 | 행정안전부 (주민과) |
| 16:00~16:10 (10') | - 휴식 |  |
| 16:10~16:50 (40') | - 결격사유조회시스템 운용 요령 |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과) |
| 16:50~17:10 (20) | - 질의응답 |  |
| 17:10 | - 교육 종료 |  |

## 「CONTENTS 7

## I．공직선거법 개요

제 1 장 총 칙
1．목적（「법」 § 1） ..... 3
2．선거인의 정의（「법」 § 3） ..... 3
3．인구의 기준（「법」 §4） ..... 3
4．선거사무 협조（「법」§5） ..... 5
5．선거권행사의 보장（「법」 §6） ..... 5
6．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법」 §6의 2） ..... 5
7．공무원의 중립의무 등（「법」§9，「법」§ 85（1） ..... 6
8．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법」§ 10） ..... 6
제2 장 선거건과 피선거권
1．선거권（「법」 § 15） ..... 7
2．피선거권（「법」§ 16） ..... 8
3．연령산정 기준（「법」 § 17） ..... 8
4．선거권이 없는 자（「법」 § 18（1）） ..... 9
5．피선거권이 없는 자（「법」 § 19） ..... 14
제 3 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1．선거기간（「법」§33） ..... 15
2．선거일（「법」 §34） ..... 15
3．보궐선거 등의 선거일（「법」 § 35，§ 197，§ 203） ..... 16

## 제4장 선거인명부 작성

1．명부 관련 용어의 운용기준 ..... 18
2．선거인명부 작성（「법」 § 37） ..... 22
3．선거인명부작성 감독 등（「법」 §39） ..... 27
4．선거인명부작성의 전산처리（「법」 §37） ..... 27
5．선거인명부의 수기 작성 ..... 29
6．전출•전입자 조치（국내체류 외국인도 이를 준용함） ..... 29
7．국외이주자 조치 ..... 30
8．선거권이 회복된 자의 처리 ..... 30
9．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자의 처리 ..... 31
10．주민등록 위장전입자 등에 대한 처리 ..... 31
11．명부의 효력 ..... 32
제 5 장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1．거소투표신고 기간•방법•내용•대상（「법」 §38，규칙 § 11） ..... 33
2．거소투표신고서 처리 및 투표절차 ..... 38
3．거소투표신고서 교부 ..... 39
4．거소투표신고서 접수 ..... 39
5．거소투표신고의 철회 ..... 42
6．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및 확정 ..... 43

## 제 6 장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누락자 구제

1．명부 열람（「법」 §40，규칙 § 13） ..... 49
2．이의신청과 결정（「법」 §41，규칙 § 13） ..... 51
3．불복신청과 결정（「법」 § 42） ..... 51
4．명부누락자의 구제（「법」 §43，규칙 § 15） ..... 52
제 7 장 선거인명부의 수정 및 확정
1．선거인명부의 수정（규칙 §14） ..... 54
2．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법」 §44，규칙 § 16） ..... 56
제 8 장 선거인명부의 재작성 및 사본교부
1．명부의 재작성（「법」§45，규칙 § 17） ..... 60
2．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 사본의 교부（「법」 §46，규칙 § 18） ..... 61
3．세대주명단 작성•교부（「법」 § 60조의3，§ 111） ..... 64
제 9 장 투 표
1．선거방법（「법」 § 146） ..... 68
2．투표소의 설치（「법」 § 147，§ 148） ..... 68
3．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법」 § 146조의2，§ 1479） ..... 69
4．투표안내문의 발송（「법」§ 153） ..... 70
5．거소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법」 § 154） ..... 70
6．투표시간（「법」§ 155） ..... 71
7．투표의 제한（「법」 § 156） ..... 71
8．투표용지 수령 및 기표절차（「법」 § 157，규칙 § 82（2）） ..... 72
9．사전투표，거소투표（「법」 § 158，§ 158의2） ..... 72
10．투표참관（「법」§ 161，§213） ..... 74
11．사전투표참관（「법」§ 162，§ 213） ..... 75
12．투표소 등의 출입제한（「법」 § 163） ..... 75
13．투표소 등의 질서유지（「법」 § 164～§ 166） ..... 76
14．투표의 비밀보장（「법」 § 167，규칙 § 92） ..... 76
15．투표록의 작성 및 투표함의 봉쇄•봉인（「법」 § 168，§ 169） ..... 77
16．투표함 등의 송부 및 인계（「법」 § 170，§ 171） ..... 77
제 10 장 개 표
1．개표관리（「법」 § 172） ..... 78
2．개표소（「법」 § 173，규칙 § 95） ..... 78
3．개표사무원（「법」 § 174） ..... 78
4．투표함의 개함（「법」 § 177） ..... 79
5．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법」 § 183） ..... 79
II．선거업무 전산처리 요령
1．선거업무 처리 절차 ..... 83
2．선거 전산업무 처리일정 ..... 84
〈시•군•구 담당자＞
3．선거정보관리（시•군•구용） ..... 85
4．선거구정보관리（시•군•구용） ..... 86
5．선거인명부 작성상황통보서 ..... 87
6．기타통보서 출력（작성상황） ..... 88

## 「CONTENTS $\rceil$

7. 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상황통보서 ..... 88
8. 거소투표신고서 접수내역 ..... 89
9. 인터넷 열람용 선거인 명부 작성 방법 ..... 89
10. 선거인명부 확정상황통보서 ..... 90
11. 기타통보서 출력(확정상황) ..... 90
12. 선거인명부 확정내역 ..... 91
13. 선관위용파일작성(시•군•구용) ..... 91
<읍•면•동 담당자>
14. 주민오류자료 조회 ..... 94
15. 기타주소정비 ..... 97
16. 외국인선거인등록 ..... 98
17. 재외국민주민등록자 등록 ..... 102
18. 선거인파일 작성 ..... 105
19. 선거인명부작성상황통보서 ..... 116
20. 선거인명부 조회 ..... 118
21. 거소투표신고서 접수 ..... 120
22. 거소투표신고서접수부 ..... 124
23. 거소 - 선상투표신고인명부 ..... 125
24. 거소투표신고인명부 ..... 126
25. 거소 - 선상투표신고인명부 확정상황통보서 ..... 128
26. 선관위용파일작성 ..... 129
27. 후보자용파일작성 ..... 129
28. 선거인명부열람 ..... 130
29. 선거인명부확정상황통보서 ..... 135
30. 우편발송물주소조회 ..... 136
31. 투표안내문 ..... 138
32. 주의사항 ..... 139

## III．사건•사고 사례 및 예방대책

1．최근 선거경향 ..... 144
2．주요 사건•사고 사례 ..... 144
3．분야별 사건•사고 사례 ..... 151
4．이번 선거에서 달라지는 점 ..... 163
IV．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
1．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일정 ..... 170
2．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등 ..... 171
3．「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규정 ..... 173
4．「정당법」｢정치자금법」의 제한•금지규정 ..... 198
5．중점추진사항 및 협조사항 ..... 200
V．결격사유조회시스템
1．결격사유조회시스템 소개 ..... 206
2．결격사유조회 담당자 업무 ..... 207
3．선거부서 담당자 업무 ..... 219
4．기타 안내사항 ..... 223
VI．주요 선거사무 일정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주요사무일정 ..... 23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세부일정 ..... 235

## 공직선거법 개요

제 1 장 총 칙
제2 장 선거건과 피선거권
제 3 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4장 선거인명부 작성
제 5 장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제6 장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누락자 구제
제7장 선거인명부의 수정 및 확정
제 8 장 선거인명부의 재작성 및 사본교부
제9장 투 표
제10장 개 표

## 제1장 총 칙

## 1．목적（「법」 § 1）

○ 「헌법」과「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 정치의 발전에 기여

## 2．선거인의 정의（「법」 §3）

○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 3．인구의 기준（「법」 § 4）

○ 선거사무관리의 기준이 되는 인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국민의 최근 인구통계에 의함
$\checkmark$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법」제 15 조제 2 항제 3 호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의 수를 포함함

○ 선거사무관리의 기준이 되는 인구의 기준일（규칙 §2（1），§118（1））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 동시선거에 있어서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빠른 선거의 인구의 기준일에 따름
$\checkmark$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의 경우 ：2017．12．31．
$\checkmark$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법」 제60조의2）
－시•도지사•교육감선거：선거일 전 120 일（2018．2．13．）
－지역구 시•도의회의원선거，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2018．3．2．）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2018．4．1．）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공직선거 업무편람]

○ 구•시•군의 장은 인구의 기준일 후 15 일까지 인구의 기준일 현재의 인구수, 세대수, 19세 이상의 주민수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구 • 시 • 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 하여야 함 (규칙 §22)

- 인구기준일 후 15 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5 일까지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 $\checkmark$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외국인의 수와 그 세대수를 포함함

[별지 제1호서식] (규칙 제2조제2항 관련) 〈개정 2015.8.13.〉

## 인 구 수 등 통 보 서

( 년 월 일 현재)

| 읍•면•동명 | 투표구명 | 인 구 수 | 세 대 수 | 19세 이상의 <br> 주 민 수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 1. 하나의 구•시•군안에 2이상의 읍•면•동으로 된 선거구가 2 이상 있는 때에는 "읍•면•동명란 앞에 "선거구명"란을 마련하고 선거구별로 "소계"란을 둔다. 이 경우 시•도의원선거와 자치구 • 시• 군의원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때에는 "읍•면•동명"란 앞에 시•도의원선거구, 자치구•시• 군의원선거구 순으로 "선거구명"란을 마련하고 선거구별로 각각 "소계"란을 둔다.
2. 하나의 읍•면•동안에 2 개의 지역구자치구 • 시•군의원선거구가 있거나 2 이상의 투표구가 있는 때에는 읍•면•동명별 또는 선거구별로 "소계"란을 둔다.
3. "인구수•세대수 • 19 세이상의 주민수"란에는 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 )안에 재외국민의 수를 따로 적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 )안에 재외국민의 수를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외국인의 수를 적어 각각 쉼표(,)로 구분한다.

## 4．선거사무 협조（「법」 §5）

○ 관공서 기타 공공기관은 선거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함

## 5．선거권행사의 보장（「법」 §6）

O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함

○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함
$\checkmark$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2 10의2호）
－「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로 함
$\checkmark 「$ 근로기준법」 $(\$ 10, \S 110)$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그밖의 공민권 행사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함（§10 공민권행사의 보장）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110 벌칙） ＊2018．5．29．시행（법률 제15108호，2017．11．28．일부개정）

O 각급 선관위（읍－면•동선관위 제외）는 선거인의 투표참여 촉진대책 수립•시행 가능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후보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함）
$\checkmark$ 교통 불편지역 거주 선거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 제공
$\checkmark$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 면제•할인 등

## 6．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법」 § 6의 2）

O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함

O 위반시 벌칙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법」 §261③）

## 7．공무원의 중립의무 등（「법」§ 9，「법」§ 85（1）

○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 포함）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 검사（군검사 포함）또는 국가경찰공무원（검찰수사관 및 군사법경찰관리 포함）은「법」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공정하게 단속•수사를 하여야 함

○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8．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법」 § 10）

O 사회단체 등은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등 공명선거추진활동이 가능함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항상 공정한 자세를 견지하여야 하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는 단체

－특별법으로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후보자의 배우자와 후보자 또는 그 배우 자의 직계손•비속과 형제자매나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설립 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단체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또는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 또는 단체

##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 1．선거권（「법」 § 15）

○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 ：19세 이상의 국민（외국인 제외）
－다만，지역구국회의원은 19세 이상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됨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주민등록법」 제6조제 1항 제3호（재외국민）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 록표에 3 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
$\checkmark$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1999．6．14．이전 출생자
－19세 이상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재외국민）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 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2018．2．23．까지 등재）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2015．5．21．이전 등재）
$\checkmark$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법 §37（1））
－대통령 ：선거일 전 28 일，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의원）：선거일 전 22 일
－동시지방선거의 경우 선거기간이 긴 선거의 예에 의함（「법」 §202（2）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2018．5．22．（화）

## 2．피선거권（「법」

O 대통령선거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
$\checkmark$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봄

○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의 국민
○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 일 이상（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전 60일후에 귀국한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 세 이상의 국민
$\checkmark$ 이 경우 60 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합병 또는 구역 변경 （법 제 28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구역변경 포함）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함
$\checkmark$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어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장의 주민등록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게 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봄

## 3．연령산정 기준（「법」 § 17）

○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함
$\checkmark$ 연령 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함（「민법」§158 연령의 기산점）

## 4．선거권이 없는 자（「법」 § 18 （1））

○ 선거일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음
－1호：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2호：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1）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2）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다만，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
－3호：선거범，「정치자금법」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및 제49조（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제 129 조（수뢰，사전수뢰）내지 제 132 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 3 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 되거나 면제된 후 10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
－4호：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O 「선거권이 없는 자」의 해석

## 〈법 제 18 조 제 1 항 제 1 호＞：금치산자

－대상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 【 용어 정리 】

$\checkmark$ 금치산（禁治産）선고를 받은 자란，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어 가정법원으로부터 자기 재산의 관리처분을 금지하는 선고를 받은 사람을 말함
－2013．7．1．개정 민법의 시행으로 부정적 인식이 강한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 도입
－개정 민법 시행 전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며，「법」 시행 이후 공직선거법에서 인용한＇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는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민법 부칙 제3조에 따라＇성년후견＇을 인용한 것으로 봄
\％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질병，장애，노령，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민법10조．）피성년후견인에게는 선거권 없음

## 개정 민법（2013．7．1．시행）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1）가정법원은 질병，장애，노령，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 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미성년후견인，미성년후견감독인，한정후견인，한정후견감독인，특 정후견인，특정후견감독인，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한다．
（2）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부칙＜법률 제10429호，2011．3．7＞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1）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2）제1항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성년후견，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금치산＂또는＂한정치산＂을 인용한 경우에는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5년의 기간에 한정하여＂성년후견＂또는＂한정후견＂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일반범죄

－대상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1）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2）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1）＇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의 의미
（가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수형자，나）가석방 중인 자가 이에 해당

## 【용어 정리 】

$\checkmark$ 수형자란，「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수형자를 말하는 것으로，공직선거법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수용 중인 자를 말함
cf）수형자가 아닌 미결 구금자는 선거권이 있음
＊미결구금자란，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구금되어 있는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을 말함
$\checkmark$ 가석방이란，교도소 등에서 수형생활을 하는 중 교도소 안의 규칙을 잘 따르고 죄를 뉘우치는 등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한 죄수들 중에 형기를 마치기 전에 석방 하는 제도를 말함．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처분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잔형기를 경과한 때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형법」 제76조 제1항）가석방 중에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로 선거권이 없음
（2）＇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의 의미
（1）（77）집행유예 중이거나，（ㄴ）형의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거나，
（ㄷ）형 집행면제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이에 해당
－이 중에서 집행유예자들은 투표 가능
［ 2015．8．13．법 제13497호에 의하여 2014．1．28．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관한 부분）된 이 조 제1힝제2호를 개정함 ］

## 【 용어 정리 】

집행유예란，일단 유죄의 형을 선고하고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기간 그 형의 집 행을 유예한 후 유예기간을 특정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읺게 하는 제도（「형법」 제62조）
cf）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유예기간이 경과 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형법」 제59조）
$\checkmark$ 형의 시효의 완성이란，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재판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고，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 그 집행이 면제되는 효과를 말함．즉，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형벌의 집행권이 소멸하는 제도（「형법」 제77조 제78조） $\checkmark$ 기타 형 집행이 면제되는 경우로，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형법ㄱ 제1조 제3항）
－형 집행을 면제하는 특별사면의 경우（「사면법」 제5조 제1항 제2호）

## 〈법 제 18 조 제 1 항 제 3 호〉：선거범 등

－대상 ：일정 선거관련 범죄의 전과자（선거범과 「정치자금법」•「형법」•「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1）＇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용어 정리 】

형이 확정되는 시기는，재판이 통상의 불복 방법에 의해 다툴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함
－대법원 판결과 같이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재판의 경우，선고와 동시에 확정됨
－불복이 허용되는 재판의 경우，（27）상소기간 등의 도과선고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상소하지 않거나），（₫4）불복신청의 포기취하，（ㄴ）불복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의 확정 등에 의해 확정됨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공직선거 업무편람
（2）＇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checkmark$ 「형법」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상실함
（3）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가）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형이 실효된 경우라도，형 집행종료 또는 집행면제일부터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checkmark$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나 형이 실효되면 실효된 형에 따른 권리를 회복할 수 있으나，선거범에 해당하는 경우는 형이 실효되더라도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10 년이 되는 날까지 선거권이 제한됨

## 【 용어 정리 】

$\%$ 형의 실효와 복권은 형의 선고를 받았다는 전과사실로 인해 여러 자격제한이나 사회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전과사실을 말소시키고 자격을 회복 시킴으로써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형법이 두고 있는 제도임
$\%$ 「형법」 제 81 조（형의 실효）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 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음

##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 실효）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은 실효됨．다만，구류•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됨
1． 3 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 년
2． 3 년 이하의 징역•금고： 5 년
3．벌금： 2 년

## 〈법 제 18 조 제 1 항 제4호＞：법원의 판결，다른 법률에 의한 제한

－대상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의 의미
「형법」제 43 조•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선거권에 관하여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을 선고받은 자
（1）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선거권 상실）
（2）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선거권 정지）
（3）자격정지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말함

## 선거권 제한 예시

－ 100 만 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
－벌금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집행유예의 선고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후 10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역형의 선고
－징역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형 법」

제43조（형의 선고와 자격상실，자격정지）
（1）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에 기재한 자격을 상실한다．
1．공무원이 되는 자격
2．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4．법인의 이사，감사，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2）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 까지 전항 제 1 호 내지 제 3 호에 기재된 자격이 정지된다．다만，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개정 2016．1．6．＞

## ［2016．1．6．법률 제13719호에 의하여 2014．1．28．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공선법의 선거권’에 관한 부분）된 이 조 제2항을 개정함．］

제44조（자격정지）
（1）전조에 기재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는 1 년 이상 15 년 이하로 한다．
（2）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 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의 의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함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치료감호의 선고와 자격정지）피치료감호자는 그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정지된다．
1．공무원이 되는 자격
2．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 업무에 관한 자격
※ 치료감호는 형벌은 아니지만 범죄와 법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대인적 보안처분으로서「형법」 제 10 조（심신장애인）제 1 항，제 2 항의 규정에 의해서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에 판사가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선고하는 보안처분을 말함

## 5．피선거권이 없는 자（「법」 § 19）

○ 선거일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음
－「법」제 18 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

가． 500 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죄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

## 제 3 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 1．선거기간（「법」 § 33）

O 선거기간
－대통령선거 ： 23 일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국회의원선거，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 선거 ： 14 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 일부터 선거일까지
$\checkmark$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2018．5．31．（목）～6．13．（수），14일

○ 선거운동기간（법 §59）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checkmark$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2018．5．31．（목）～6．12．（화），13일

## 2．선거일（「법」 § 34）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대 통 령 선 거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국회의원선거 ：임기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임기만료일 전 30 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일이나 그 다음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주의 수요일로 함
$\checkmark$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의 경우 임기만료일 전 30 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이 공휴일（6．6．현충일）이므로 그 다음 주 수요일인 6．13．임

## 3．보궐선거 등의 선거일（「법」 § 35，§ 197，§ 203）

| 선 거 별 | 선거실시기한 | 공 고 권 자 | 공 고 기 한 |
| :---: | :---: | :---: | :---: |
| 대통령의 궐위로 <br> 인한 선거•재선거 | 선거의 실시사유가 <br> 확정된 때부터 60 일 <br> 이내 |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 | 선거일전 50일까지 |
| 지역구국회의원• <br> 지방의회의원 및 <br> 지방자치단체장의 <br> 보궐선거•재선거， <br> 지방의회의원의 <br> 증원선거 | －4월중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선거일 전 30 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그 다음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에 실시 <br> ※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에 실시 <br> ※ 민속절 등의 범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 조 제 $1 \sim 10$ 호 및 한식일（규칙 제8조） |  |  |
|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기간 중에 그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일이 있는 보궐선거 등，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일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후에 해당되나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30 일전까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은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실시 |  |  |
| 선거의 일부 무효로 인한 재선거 |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 | 관할선거구 <br> 선거관리위원회 | 그 재선거일을 정하여 공고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2018．5．14．까지 실시사유 확정시 보궐선거 실시

##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 날，설날，설날 다음 날（음력 12 월 말일， 1 월 1 일， 2 일 $)$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5월 5일（어린이 날）
－6월 6일（현충일）
－추석 전 날，추석，추석 다음 날（음력 8 월 14 일， 15 일， 16 일）
－12월 25일（기독탄신일）
－「공직선거법」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법」§35（5）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지역구국회의원의 보궐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판결이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이 경우「법」 제195조（재선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에 있어서는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를 재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봄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새로 정한 선거구에 관한「법」별표2 또는 시•도 조례의 효력이 발생한 날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관한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 날
－연기된 선거는「법」제196조（선거의 연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선거의 연기를 공고한 날
－재투표는「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투표일을 공고한 날

## 제4장 선거인명부 작성

## 1．명부 관련 용어의 운용기준

O＂선거인명부＂는 선거권지를 미리 정확하게 가려 선거인의 범위를 확정시키고 선거권을 공증 또는 확인하기 위하여 구•시•군의 장이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직권으로 작성하는 공부를 말함（덥」 §37）

O＂거소투표신고인명부＂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거소투표사유에 해당하여 거소 투표신자를 등재한 공부를 말함（덥」 §38）

O＂국민＂이라 함은 「국적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를 말하며，복수국적 자도 대한민국의 국적이 있으면 국민에 해당되고，해외영주권 취득자도 대한민국의 국적이 있으면 국민에 해당됨

O＂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란 사실상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임

```
\checkmark "거주부ᄅ며ᄋ 드ᄋ로ᄀ이 되ᄂ 사라ᄆ"도 주미ᄂ드ᄋ로ᄀ이 되어 이ᄊ느ᄂ 사라ᄆ에 해다ᄋ되ᄆ
```

O＂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및 선거인명부확정일＂의＂일시＂는 해당일의 24 시를 기준으로 함
O「법」 제38조 제3항 후단에 따른＂거소투표신고에 관한 안내문과 거소투표신고서 발송대상자＂는 구•시•군의 장이 장애인복지법 32 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사람을 말함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란 영내기거를 의무로 하는 자와 영외 거주가 허용된 장병도 포함하는 사실상 영내에 거주하는 장병을 지칭함

O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는 횔체어에 의하여 거동 하는 자도 포함함

0 ＂외딴 섬＂이란 1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이 없는 섬을 지칭함

○ 지방선거의 경우＂외국인 선거권자＂란「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 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선거인 명부작성기준일 현재「출입국관리법」제 34 조（외국인등록표 등의 작성 및 관리）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를 말함

O＂거소투표신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소속기관이나 시설의 장＂이라 함은 다음의 단위기관－시설의 장을 말함
－군부대：직인을 가지고 있는 중대장 이상의 부대의 장 ※ 다만，직인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본대로부터 독립되어 설치된 부대의 장을 포함함
－경찰관서：지구대 이상의 경찰관서의 장
－병원•요양소：그 시설의 장
－신체장애로 인하여 거동할 수 없는 자：거소지 또는 주소지의 통리반의 장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통리반장의 확인없이 거소신고 가능）

O ＂관계인＂이라 함은 신청인과 선거인이 다른 경우 당해 선거인을 말함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선거인명부 등의 사본을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라 함은 당해 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와 투표참관인이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나 그 외의 제 3 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을 뜻함

○＂전산자료 복사본＂이라 함은 선거인명부작성 전산자료를 디스켓에 복사한 것을 말함
O＂위장전입자＂라 함은 거주할 의사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 （다른 목적의 위장전입지를 제외함）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 일부터 선거인 명부작성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를 말함

## 거주불명 등록제도

## 8 제도 개요

O 도입이유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각종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되어 기본권이 침해됨에 따라 거주 불명등록제도로 변경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자일지라도 선거권，아동취학，기초생활수급，의료보험，연금 등 국민으로서의 기본권보장 기반조성 필요

○ 처리요령：주민신고 또는 직권조치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
－거주불명 등록 후 1 년이 지나도 재등록하지 아니하면 재공고후（2회）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

## 관련 Q\＆A

## 1．「거주불명 등록제」란？

－실제 거주지를 가지지 못한 자임에도 선거 등 기본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공법상의 주소가 아닌 「행정상 관리주소」를 임시로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상 관리주소를 부여받았으므로 기본권 보장 및 사회복지 혜택 등 행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된 것으로 봅니다．

## 2．「거주불명 등록자의 주민등록법상 지위는？

－거주불명자는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거주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습니다．
※ 주민등록증발급，등초본발급 등 거주자와 동일함．

## 3．어느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설정하는지？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신고 또는 직권 거주불명등록자가 마지막으로 전입신고 했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등록합니다．
－신고된 최종 주소에 거주불명등록된 자가 1 년이 지나도록 재등록 하지 않은 경우， 2회 이상 공고 후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의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 （정정으로 처리）합니다．

## 4．신청에 의해 「행정상 관리주소」를 다른 읍면•동 주소로 이관할 수 있는지？

－마지막 주소지인 행정상 관리주소에서 신청에 의해 해당 읍면 사무소 또는 동주민 센터로 주소를 이전할 수는 있으나，다른 행정구역으로 주소를 이관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주소 이관은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법」 부칙 제2조의 재등록은 이전신청을 의미
5．「행정상 관리주소」를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주소로 이전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건물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 해당주소의 재산권자가 행정상 관리주소의 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존 말소자가 1 년 경과기간 내에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주소로 거주 불명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나，이는 행정상 관리주소의 이전이 아닙니다．

## 6．거주불명 등록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누릴 수 없었던 선거권，의료보험，국민연금 등의 기본권 관련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 7．거주불명 등록제 신설로 말소제도는 폐지되는지？

－무단전출말소 제도는 폐지되었으며，사망말소，국적상실말소 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8．주민등록 무단전출 말소대신 거주불명 등록하면 「주민등록법」상 공법상 주소와 충돌되는 문제는 없는지？
－거주불명 등록자에게 부여되는 행정상 관리주소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임시주소에 불과하고 공법상 주소가 아니므로 충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상 관리주소가 공법상 주소가 아니므로＇공시송달이 가능하는 등 기본권보장 이외의 분야에서는 기존 말소와 동일합니다．

9．주민등록 무단전출 말소제도가 폐지되고 거주불명 등록제가 도입되면 장기로 거주불명 등록하여 악용할 우려는 없는지？
－거주불명 등록제는 기본권보장 이외에는 기존 말소제도와 동일하므로 대상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거주불명등록’이 표시되고 거주불명등록자의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되어 악용 우려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2．선거인명부 작성（「법」 § 37）

O 작성권자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선거일 전 22일
$\checkmark$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2018．5．22．（화）

○ 작성기간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
$\checkmark$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2018．5．22．（화）～5．26．（토）

0 등재대상자
－선거일 전 22 일 현재「법」제15조에 따라 그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
$\checkmark$ 지방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경우 제 15 조 제 2 항 제 3 호에 따른 외국인을 포함
$\checkmark$ 2009．10．2부터 시행된「거주불명등록제도」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도 행정 주소를 가지고 선거권이 있으므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함

○ 작성방법（「법」 § 37，규칙 § 10）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그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 （지방선거의 경우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자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외국인을 포함）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주민등록표에 따라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5 일 이내에 작성
－선거권자의 성명•주소•성별 및 생년월일 기타 필요 사항 기재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선거권자가 거주하는 통•리의 장과 그 통•리에 거주하는 선거권자 2 인 이상의 보증으로 작성 가능
－투표구별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외국인선거권자의 순으로 각각 구분 하여 작성
$\checkmark$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 $\rightarrow$ 외국인선거권자
－누구든지 같은 선거에 있어 2 이상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될 수 없음
－하나의 투표구의 선거권자의 수가 1천인을 넘는 때에는 선거인명부를 선거 인수가 서로 엇비슷하게 분철 가능
－선거인명부의 작성은 전산조직에 의할 수 있음
O 작성단위 ：투표구별 1통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5．22．） 1 통（확인용）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마감일（5．26．）1통（보관용）
※ 거소투표신고인 정보를 반영하여 출력
○ 선거인명부에 관한 특례（「법」 §204）
－동시선거에 있어서 선거인명부와 거소투표신고인명부는 하나의 선거인명부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로 함

－구시군의 장은 작성 후 즉시 그 전산자료 복사본 1통과 선거인명부작성상황 통보서［별지 제9호서식의（가））를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송부
※ 2018．4．6．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인명부 등본 송부 폐지（거소투표신고인 명부는 등본과 전산자료복사본 둘 다 제출）

```
제7회 저ᄂ구ᄀ도ᄋ시지바ᄋ서ᄂ거의 겨ᄋ우 : 2018.5.26.(토)
```


## 区 벌 칙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 포함）에 오르게 한 자，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거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자，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 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제157조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허위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을 한 자
논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답 §247（1））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선거인명부 작성에 관계 있는 자가 선거인명부에 고의로 선거권자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하게 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247（2）
[별지 제2호서식의(나)]
(선거인명부) <개정 2015.12.24.>

| 등재번호 | 주 소 <br> (2) | 세대주 <br> (3) | 성 별 <br> (4) | 생년월일 <br> (5) | 성 명 <br> (6) | 투표용지수령인(7) |  | 비 고 <br> (8)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가) | (나) |  |
|  |  |  |  |  |  |  |  |  |
|  |  |  |  |  |  |  |  |  |

주: 1. 명부기재방법
(1) 등재번호란에는 투표구단위로 그 구역안의 주소의 건물번호순 또는 통•리•반 또는 선거인의 성명의 가.나.다순이나 생년월일순에 따라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2) 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적는다.
(3) 세대주란에는 세대주일 경우 "세"로 표시한다.
(6) 성명란은 선거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7) 투표용지수령인란 중"(가)"란은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선거인의 본인여부를 확인받은 후 본인이 서명하거나 날인 또는 무인하며(동시선거를 포함한다), "(나)"란은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등을 실시할 때에 한하여 서명하거나 날인 또는 무인한다.
(8) 비고란의 기재와 선거인명부의 수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구•시•군의 장은 이의•불복신청 또는 명부등재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비고란에 기재하고 구•시•군의 장 자신의 도장을 찍는다.
나.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만 있는 사람은 비고란에 "비례대표 선거권자"로, 동시선거에서 일부 선거의 선거권만 있는 사람은 "○○ 선거권자"로, 외국인선거권자는 "외국인" 으로 적는다.
다.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른 사람은 비고란에 "거소투표자" 또는 "선상투표자"로, 국외부 재자신고인명부에 오른 사람은 "국외부재자"로 표시하되,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만 있는 사람과 동시선거에서 일부 선거의 선거권만 있는 사람은 나.에 따라 적은 내용 아래에 괄호를 하여 그 안에 적는다.
라. 구•시•군의 장은 선거인명부 확정 전에 선거권이 없는 자•사망자.이중등재자•재외선거인명부 등재자•다른 구•시•군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등재자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두줄로 삭제하고, 오기의 발견시는 그 오기된 글자만 두줄로 삭제하되, 각각 비고란에 그 사유(선거권이 없는 자•사망자•이중등재자•재외선거인명부등재자•다른 구•시•군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등재자•오기)와 연월일을 기재하고 구•시•군의 장 자신의 도장을 찍는다.
마.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 확정 후에 선거권이 없는 자•사망자•이중등재자. 재외선거인명부등재자•다른 구•시•군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등재자•오기된 자를 구•시•군의 장으로부터 통보받거나, 선상귀국투표신고•재외귀국투표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통합선거인 명부의 비고란에 기재한다.
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에 선거권이 없는 자•사망자•이중등재자•재외 선거인명부등재자•다른 구•시•군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등재자.오기된 자를 구•시•군의 장으로

부터 통보받거나,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상귀국투표신고자-재외귀국투표신고자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비고란에 기재한다. 다만,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명부를 투표관리관에게 송부한 후에는 투표관리관이 그 사실을 비고란에 기재한다. 이하 "사."에서 같다.
사.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거소투표용지 미발송자와 반송자의 해당 비고란에 "미발송", "반송"이라 기재한다.
2. 선거인명부 작성시 윗란과 동일사항이 계속될 때에는 "상동" 또는 """ 표시로서 생략할 수 있다. 단, 쪽을 달리할 경우는 생략할 수 없다.
3. 선거인명부가 작성되면 대철하여 선거인명부의 표지와 끝쪽의 대철부분에 구•시•군의 장의 직인을 날인한다.
4.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 외국인선거권자 순으로 빈 줄 등을 두어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되,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을 먼저 적고, 그 다음에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만 있는 사람을 적는다. 다만, 동시선거에서 일부의 선거에 대해서만 선거권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해당 선거권자를 선거인명부의 맨 끝에 적는다.
[별지 제2호서식의(가)] <개정 2015.12.24.>

명부의 표지(규칙 제 10 조제 2 항•제 11 조제 4 항•제 120 조제 1 항관련)

년 월 일 실시 $\bigcirc \bigcirc$ 선거
(선거인)•(거소투표신고인)•(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 성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확 정 : 년 월 일
$\bigcirc$ ○시•도 $\bigcirc \bigcirc$ 구•시•군
$\bigcirc \bigcirc$ 읍•면•동 제 $\bigcirc$ 투표구분 $(\bigcirc$ 책중 $\bigcirc$ 권)

주 : 거소투표신고인명부 또는 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제○투표구분( $\bigcirc$ 책중 $\bigcirc$ 권)"을 " $\bigcirc \bigcirc$ 읍•면•동분( $\bigcirc$ 책중 $\bigcirc$ 권)"으로 한다.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공직선거 업무편람]
[별지 제2호서식의(라)] (규칙 제10조제2항 관련)〈개정 2014.1.17〉

## 명부의 끝부분 기재사항

(1) 이 선거인명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까지 작성하고 $\bigcirc$ 책으로 (분철)작성하였음

○○구•시•군의 장 [인]
(2) 이 선거인명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까지 $\circ \bigcirc$ 장소와 $\circ \bigcirc$ (구) • (시) • (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게 하였음

○○구•시•군의 장 [인]
(3) 이 선거인명부는 년 월 일 확정되었음
○○구•시•군의 장 [인]

주: 1.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는 (1)항 및 (3)항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2. (3)항은 명부의 이의 - 불복신청에 대한 결정과 변경사항의 수정에 따라 추가로 명부에 올린 후 명부의 확정시 끝부분에 기재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가)] <개정 2015.12.24.>

## 선거인명부작성상황통보서

| 투표구명 | $\begin{gathered} \text { 인 구 수 } \\ \text { (년 월 일 } \\ \text { 현재) } \end{gathered}$ |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 |  |  | 인구수에 대한 선거인수 비 율(\%) | 세 대 수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계 | 남 | 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인구수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의 인구수를 기재한다.
2. "인구수•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세대수'란에는 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 )안에 재외국민의 수를 따로 적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거권이 있는 외 국인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 )안에 재외국민의 수를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외국인의 수를 적어 각각 쉼표(,)로 구분한다.
3.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만 가지거나 동시선거에서 일부 선거의 선거권만 가지는 사람이 있어 선거인수가 다른 경우에는 선거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3．선거인명부작성 감독 등（「법」 § 39）

○ 선거인명부작성 공무원
－임면권자 ：구•시•군의 장
－임면통보 ：임면권자가 지체 없이 소속•직위 또는 직급•성명 및 임면 연월일 등을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통보
－해 임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에 명부작성 공무원을 해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면권자가 관할 구•시•군선관위 또는 직근 상급선관위와 협의하여 해임

O 선거인명부작성 감독
－선거인명부작성의 감독 ：관할 구•시•군선관위 및 읍•면•동선관위
－선거인명부작성 공무원 교체 요구 ：관할 구•시•군선관위 및 직근 상급선관위
－명부작성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인명부작성에 관하여 구•시•군 선관위 및 읍•면•동 선관위의 지시•명령•시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그 직무를 태만히 한 때 또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때
○ 명부작성 방해 금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작성사무를 방해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인 명부작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

## 4．선거인명부작성의 전산처리（「법」 § 37）

○ 선거인명부 전산작성 사전준비
－단말기 및 프린터 일제점검 실시
－주민전산 입력자료 중 행정구역 및 명칭 변경시 사전 정비 입력
－투표구별 명부작성시 선거인 파일은 통／반을 선택 입력하여 작성
－예비선거인명부 출력 및 확인
$\checkmark$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2018．5．15．（화） $18: 30$ 이후 예정
－예비선거인명부는 선거인명부 작성 이전에 1부를 출력하여 전산처리 상태 등을 사전 확인
－예비선거인명부는 법정서식이 아니므로 외부에 절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 하여야 하고 자치단체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폐기할 것

## ○ 선거인명부 출력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까지 전•출입자 등 모든 변동사항을 수정•입력
－변동사항 수정•입력 후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일과 후 선거인명부 전산파일을 작성（익일 작성 불가）
－선거인명부 전산파일 작성이 완료되면 선거인명부를 기간 내 출력 완료

## $\checkmark$ 선거인명부 파일 작성

－작성대상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5．22．）현재「법」제15조에 따라 그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지방의회의원 및 단체장선거는 외국인＊ 포함）
＊영주권 취득 후 3 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등재자： 19 세 이상 거주자，전입（거소이전）신고자，재등록자，거주불명등록자， 해당 외국인
－제외자： 19 세 미만자，말소자，해외이주자，국적상실자，「법」 제 18 조 해당자
－작성시기 ：선거일 전 22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2018．5．22．（화） $18: 30$ 이후
$\checkmark$ 주민등록자，해당 외국인（지방선거）순으로 작성

## + 유의사항

$\checkmark$ 출력된 선거인명부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에는 행정기관의 착오 등으로 누락된 선거권자，선거권이 회복된 자에 한하여 추가등재 가능
※ 행정기관의 착오 등으로 누락된 군인 등이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거소투표 신고를 할 경우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미등재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선거인명부 전산작성 시 유의사항
－세대주가 선거권이 없어 당해 세대원 또는 동거인이 타 세대원으로 혼돈되는 것을 방지
$\checkmark$ 세대원 중 가장 먼저 등재된 선거권자의 세대주란에＂세＂자 명기

## －명부 출력 중에 프린터의 장애로 작업이 중단될 경우

$\checkmark$ 중단된 페이지의 등재번호부터 출력 가능

## 5. 선거인명부의 수기 작성

O 수기 작성 판단 및 사전 준비

- 선거인명부의 정확한 전산 출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구•시•군은 수기로 작성
- 투표구 단위로 명부작성 담당자의 지정 등 사전준비 철저

O 수기 작성시 유의사항

- 선거인명부의 등재누락 방지
-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표에 기재된 선거권자의 누락여부 확인 철저
- 관내 특수시설(기숙사, 병원, 합숙소, 사회복지시설 등)의 선거권자에 대한 선거인명부 등재여부 확인 철저
- 주민등록표 등과 작성된 명부의 대조•확인 철저
- 성명, 주소, 생년월일을 정확히 파악 기재
-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선거권자가 거주하는 통•리의 장과 그 통•리에 거주하는 선거권자 2 인 이상의 보증으로 작성
- 외국인선거권자에 대한 선거인명부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 외국 인기록표에 의하여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출장소장의 확인으로 작성


## 6. 전출•전입자 조치(국내체류 외국인도 이를 준용함)

○ 전입자에 대한 조치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에 신거주지에서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아 선거인명부도 신거주지에서 등재되어야 함
- 선거인이 명부작성기준일 다음 날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면 신거주지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될 수 없음

○ 전출자에 대한 조치

- 선거인이 명부작성기준일에 타 읍•면•동에 전입신고를 하면 선거인명부에 등재될 수 없음
- 전출지 읍•면•동에서는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지 않아야 하며, 이미 등재된 자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기간 중 절차 등에 따라 수정하여야 함
> $\checkmark$ 선거인명부 작성과 관련, 전입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까지 관리하고 전출자에 대해서는 선거기간 중에도 계속적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이중 등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7. 국외이주자 조치

○ 이민을 위한 국외이주 신고자가 국외로 출국한 후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통보(행정안전부 경유)한 이민출국자 통보서가 읍•면•동에 접수되면 그 접수일을 기준으로 재외국민출국자로 처리하며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까지 이민출국자 통보서가 접수되지 아니한 자는 국외이주신고자로 거주자 선거인명부에 등재됨

○ 현지이주자는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현지에서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 등을 취득하고 외교부(재외공관장 등)로부터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하며, 외교부(재외공관장 등)에서 통보(행정안전부 경유)한 현지이주자 통보서가 읍•면•동에 접수되면 그 접수일을 기준으로 재외국민출국자로 처리하므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까지 현지이주자 통보서가 접수되지 아니한 자는 거주자 선거인명부에 등재됨

## 8. 선거권이 회복된 자의 처리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로서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 이후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선거권의 결격사유가 해소되어 선거권이 회복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선거인명부에 등재함

-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에는 이를 즉시 선거인명부에 등재함
-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에는「법」 제41조(이의신청과 결정)•제42조(불복신청과 결정)•제43조(명부누락자의 구제) 규정의 처리 절차에 준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함


## 9．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자의 처리

○ 주민등록말소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또는 그 이전에 재등록을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되어야 선거인명부에 등재 가능하고，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이 지난 후 재등록자 또는 거주불명 등록자는 선거인명부에 등재할 수 없음
$\checkmark$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5．22．）후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선거인명부에 등재가 되어 당연히 선거권이 부여되나，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5．22．）에 말소된 자는 선거인명부에 등재 할 수 없음

○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구•시•군의 장의 착오 등 명백한 잘못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자가 그 말소행위가 원인 무효되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로 주민등록이 회복된 때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에 발견된 때에는 당해 구•시•군의 장이 직권으로 선거인 명부에 등재함
－이의신청기간 중에 발견된 때에는「법」제41조（이의신청과 결정），「법」제42조 （불복신청과 결정）규정의 처리절차에 준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함
－이의신청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발견된 때에는「법」제43조（명부누락자의 구제）의 처리절차에 준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함

## 10．주민등록 위장전입자 등에 대한 처리

○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 포함）에 오르게 한 자，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 또는 국외부재자신고를 하거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또는 변경등록신청을 한 자，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 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등 소위 위장전입자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법」 § 247）

○ 선거인명부작성 후에도 신규전입자의 거주사실 확인을 철저히 하는 등 위장전 입자에 등에 대해서는 당해 선거구에서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사전 조치 필요

## + 참고사항

$\checkmark$ 사위등재，위장전입
$\Rightarrow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법」 §247（1））
$\checkmark$ 「법」제 39 조（명부작성의 감독 등）제8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인명부작성사무를 방해하거나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Rightarrow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법」 §25632호가목）

## 11．명부의 효력

O 선거인명부는 형식적으로 선거권을 가진 지를 확인•공증하고 선거인의 범위를 학정히는 공부（公簿）임

0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작성하도록 하여 수시명부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O 선거권을 가진 자는 반드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야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이는 선거권을 창설하는 효력（형성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아님
$\checkmark$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라 하더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으며，실질적으로 선거권이 있는 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 하면 투표를 할 수 없음（「법」 $\$ 156)$
（다만，$\Gamma$ 법 $\lrcorner ~ \S 41 \cdot \S 42 \cdot \S 43$ 의 이유 있다는 결정통지서를 지참하면 투표 가능）
$\checkmark$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이후라도 국적을 상실하면 투표를 할 수 없음

## 제 5 장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 1．거소투표신고 기간•방법•내용•대상（「법」 § 38，규칙 § 11）

0 신고기간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중（선거일 전 22 일부터 5 일간）

```
\checkmark 제7회 저ᄂ구ᄀ도ᄋ시지바ᄋ서ᄂ거의 겨ᄋ우 : 2018.5.22.(화) ~ 5.26.(토) 18:00까지
```

○ 신고방법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 구•시•군청 및 읍•면•동에 신고 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거소투표신고
$\checkmark$ 등기우편（국가 또는 해당 지자체 부담）또는 인편신고 가능，구두신고는 불가
○ 신고내용：거소투표사유，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거소
○ 신고대상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 거주자（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 제외）로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checkmark$ 「법」제 15 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법」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1）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rightarrow$ 부대장 또는 경찰관서장의 확인 필요
（2）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rightarrow$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의 장 확인 필요
（3）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rightarrow$ 주소지나 머무는 곳의 통•리•반장의 확인 필요
다만，통•리장 또는 반장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거소투표신고를 한 경우 그 사람이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자로 확인된 때에는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거소투표자로 등재할 수 있음（규칙 $\$ 11$（4）단서）
（3）－2「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rightarrow$ 통•리•반장의 확인절차 없이 거소투표신고 가능

## 등록장애인 중 거동불능자 거소투표신고 관련

- 구•시•군의 장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에게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0 일까지 거소투표 신고 안내문과 거소투표신고서 발송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 2018.5.12.(토)까지
※ 안내문은 거소투표신고서의 빈자리에 안내사항을 적는 방법으로 갈음
- 등록장애인 중 거동불능자 판정기준(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위 "기준표" 외의 장애유형 및 등급에 대하여도 거소투표 대상으로 판단될 경우 거소투표신고 안내를 할 수 있음
(4)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 $\rightarrow$ 확인을 요하지 않음
$\checkmark$ 인천 팔미도•굴업도•지도•선미도•부도, 경기 풍도•육도•국화도, 충남 유부도, 전북 상왕등도•하왕등도, 전남 소두라도•소횡간도•황제도•장도•원도•서화도• 허우도•덕우도•충도•신도•백일도•흑일도•동화도•여서도•당사도•횡간도•다랑도• 우도•섭도•어룡도•슬도•탄항도•혈도•독거도•맹골도•죽도•곽도•진목도•갈목도• 눌옥도•내병도•성남도•소성남도•소각씨도•대각이도•석만도•횡도•기도•고사도• 평사도•율도, 경북 독도, 경남 국도•갈도•가왕도, 제주 횡간도•추포도
(5)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자 $\rightarrow$ 확인을 요하지 않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0 일까지 지정 • 공고
$\checkmark$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 2018.512.(토)까지
(6)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 선거구(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 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을 말함) 밖에 거소를 둔 사람 $\rightarrow$ 확인을 요하지 않음

○ 등기우편요금

-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는 국가가 부담,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별지 제3호서식의（가）］＜개정 2015．8．13．＞


## 거 소 투 표 신 고 서

이 신고서는 년 월 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인 구•시•군의 장에게 도착되어야 거소 투표신고인명부에 올릴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 간만료일 전일（ 년 월 일）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begin{array}{cc} \hline \text { 중 } & \text { 소 } \\ \text { (주민등록지) } \end{array}$ | 우편번호 （구•시•군） | (읍ㅁㅁㄴ) | （대로•로길） | $\begin{aligned} & \text { 세 대 주 } \\ & \text { 성 명 } \end{aligned}$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거 서 } \\ & \text { (우편물을 바압볼 } \\ & \text { 수 있는 장소) } \end{aligned}$ | 우편번호 (구•시•군) | （읍ㅁㅁㄴ） | （대로•로•길） | 전화번호 （휴대젼화변호） |  |
| 성 명 |  | 생년월일 |  | 성별 | 남•여 |


| 신고사유란의 해당 사유에 $\bigcirc$ 표를 하고， $1 \cdot 2 \cdot 3$ 에 해당하는 사람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  |
| :---: | :---: | :---: |
| 거소투표 신고사유 | 확 인 자 | 확 인 란 |
| 1．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 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부대장． <br> 경찰관서장 | －장의 직명（성명） $\qquad$ （ㄴ） |
| 2．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 소•구치소의 장 | －장의 직명（성명） $\qquad$ <br> （l） |
| 3．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주소지나 머무는 곳의 통리•빈의 장 | －장의 직명（성명） $\qquad$ （ㄴ） |
| 4．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5．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  |  |

본인은 「공직선거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거소투표를 하고자 신고합니다．
신고인
년 월
월
일 구•시•군의 장 귀하 $\qquad$
주：1．＂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적습니다．
2．＂거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곳으로서（1）군인은 부대소재지의 행정구역명칭과 고유사서함번호 및 소속 중대명을，（2）승선자는 함정 또는 배에서 내리는 때의 머무는 곳을，（3）병원•요양소에 머무는 사람과 수용소•교도소•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은 그 기관•시설명을，（4）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과 거소투표대상이 되는 외딴 섬 등에 사는 사람은 그 거주하는 곳의 상세주소와 참고항목까지（세입 자는＂○○○댁＂까지）자세히 적어야 하며，＂전화번호＂란에는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3．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림에 대한 확인은 그 소속ㄱㄱ관시설의 명칭과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적고 직인（沎師）을 찍거나， 주소지나 머무는 곳의 통•리•반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적고 그 사람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4．성명은 한글로 적고 신고서에는 반드시 본인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야 합니다．
5．허위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 및 자신의 뜻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소투표신고인에 게는 거소투표용지를 보내지 아니합니다．
6．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허위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따라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습니다．
7．삭제＜2015．8．13．＞
［별지 제3호서식의（라）］＜개정 2015．8．13．＞

## 거 소 투 표 신 고 서

귀하께서는 통•리•반의 장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고，거소투표 신고를 한 후에는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만일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이 신고서는 년 월 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인 구•시•군의 장에게 도착되어야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릴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 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 년 월 일）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eft.\begin{array}{|c|ccc|c|c|}\hline \begin{array}{c}\text { 주 } \\ \text {（소 } \\ \text {（주민등록지）}\end{array} & \begin{array}{c}\text { 우편번호 } \\ \text {（구•시•군）}\end{array} & \text {（읍•면）} & \text {（대로•로•길）}\end{array}\right)$

본인은 「공직선거법」 제38조제4항제 3 호에 따라 거소투표를 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신고인 $\qquad$ 구•시•군의 장 귀하

주：1．이 서식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위한 것입니다．
2．＂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적습니다．
3．＂거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곳으로서 병원•요양소에 머무는 사람은 그 기관•시설 명을，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은 그 머무는 곳의 상세주소와 참고항목 까지（세입자는＂$O \bigcirc \bigcirc$ 댁＂까지）자세히 적어야 하며，＂전화번호＂란에는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 호를 적습니다．

4．성명은 한글로 적고 신고서에는 반드시 본인이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야 합니다．
5．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과 자신의 뜻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소 투표신고인에게는 거소투표용지를 보내지 아니합니다．
6．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허위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 247 조에 따라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습니다．

## 거소투표신고 안내문

2018.6.13.(수)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거소투표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ㅁ 신고기간 : 2018.5.22. ~ 5.26. (5일간)

- 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초기화면 또는 분야별 정보(선거 정보) 메뉴의 자료실에서 거소투표신고서식 출력하여 사용가능

| 구 분 | 신 고 대 상 자 |
| :---: | :---: |
| 거소(자택- <br> 요양소 등 머무는 <br> 곳)에서 <br> 투표할 자 | (1)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 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  | (2)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  | (3)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  |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
|  |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

ㅁ 신고서 작성 및 발송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하여 2018년 5월 26일(토)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 구•시•군청 또는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또는 직접제출)하여야 합니다.

O 신고대상 (1)•(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시설의 장의, (3)의 경우(「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에는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18년 5월 25일)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거소투표신고서 처리 및 투표절차



* 소속기관•시설의 장, 통•리•반장의 확인 : 등록장애인 중 거동불능장애인은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지 않으며, 사전에 거동불능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은 장애인도 거동 불능사유가 생긴 때에는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아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거소투표를 할 수 있음



## 3. 거소투표신고서 교부

○ 거소투표신고서 교부시 안내 철저

- 거소투표신고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할 때에는 주소•거소•성명의 기재요령과 거소란에는 반드시 우편번호와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안내
※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인 도로명주소를 기재
- 거소투표신고서는 2018.5.26.(토) 18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 소신고지에 도착되도록 작성하여 인편 또는 우편으로 보낼 수 있도록 안내

○ 거소투표신고서 대량 수요처 사전점검

- 거소투표신고서는 일률적으로 균등 배분하지 말고 거소투표신고대상자가 많은 지역 또는 시설(병원, 요양소 등)을 사전에 파악, 과부족이 없도록 차등 배부

O 거소투표신고서의 민원창구 비치

- 시•도, 구•시•군, 읍•면•동 민원창구에는 반드시 변경된 거소투표신고서를 신고 개시일 7 일 전까지 사전에 비치하여 거소투표신고대상자의 편의 도모


## 4. 거소투표신고서 접수

○ 접수기간 : 신고기간과 동일
$\checkmark$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 2018.5.22.(화) ~ 5.26.(토) 18 시까지
○ 접수방법

- 우체국 또는 구•시•군의 장은 다른 구•시•군의 장에게 송달되어야 할 거소투 표신고서를 배달 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거소투표 신고기간 만료일의 마감 시각까지 해당 구•시•군의 장에게 도달시킬 수 없는 경우
- 우선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송부하고, 그 원본을 지체 없이 송부
- 이 경우 당해 구•시•군의 장은 모사전송으로 도달된 거소투표신고서를 접수 하여 거소투표신고서 접수부에 기재하고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 하되, 거소투표신고서 원본을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함
- 모사전송된 거소투표 신고서와 그 원본을 함께 거소투표신고서철에 편철 하여야 함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공직선거 업무편람］


## + 유의사항

$\checkmark$ 거소투표신고서를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송부한 후에 접수되는 거소투표신고서도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함
$\checkmark$ 모사 전송시 거소투표신고서 여백에＂원본과 틀림없음＂을 기재한 후 전송자의 사인을 날인하여 송부하고，그 원본은 즉시 우편（등기）으로 송부하며，모사 전송한 사본은 발송한 기관에서 당해 선거의 임기만료일까지 별도 보관
－신고서 접수시 신고요건 미비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접수부에 기재
－접수부의 「거소투표신고사유（비고）」란에는 거소투표신고서의 거소투표신고 사유란에 표시된 해당번호를 기재（요건 미비자는 사유 기재）
－신고기간 중 신고서를 모아 두었다가 접수부에 일괄 기재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요건 미비자는 그 사유를 거소투표신고서 접수부의「거소투표신고 사유（비고）」란에 기재한 후 본인에게 지체없이 그 뜻을 통지하고 투표소에 직접 나와서 투표하도록 안내
－신고기간이 지난 후 도착되는 신고서라도 수취를 거절해서는 안되며，일단 거소 투표신고서 접수부에 모두 기재한 후 신고기간 경과 후 접수되었음을「거소투표 신고사유（비고）」 란에 명기하고，신고인 본인에게는 신고요건 불비로 거소투표를 할 수 없으므로 선거일에 직접 투표소에 와서 투표하도록 통보．안내함
$\checkmark$ 거소투표신고기간이 5 일간으로 한정되어 있고 거소투표신고대상자가 기재사항 누락 및 요건 미비자로 처리되어 통보되었을 경우 재작성 신고할 기간이 없으므로 거소투표신고인에게 작성방법을 사전 주지시키기 바람
－거소투표신고서 작성자가 본인인지 의사，필체 등을 통해 허위•대리 거소투표 신고 여부 철저 확인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가 통리 또는 반의 장의 확인을 받지 않고 작성한 거소투표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구•시•군의 장이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거소투표 신고인명부에 등재할 수 있음（규칙 §1144 단서）

[^0]- 법령에 따라 사전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 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소속부대장의 확인인이 날인되어 있으나 확인자의 직위가 중대장, 대대장 등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소속부대장이 아닌 것이 명백하지 아니한 이상 신고요건이 구비된 것으로 봄
- 거소투표신고서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 하여 거소투표신고인 본인임을 구•시•군의 장이 확인한 때에는 보완등재 할 수 있음
- 거소투표신고 요건이 구비된 신고라면 신고서에 반드시 본인의 자필이나 우편에 의한 신고를 요하는 것은 아니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이 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당한 신고서로 보지 아니함
- 거소투표신고를 한 자가 신고기간이 마감된 후 신고서의 반환을 요구하더라도 일단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자는 반환이 불가하여 거소투표를 실시 하여야 하나
- 허위로 신고한 자 및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거소투표신고인에게는 당해 구•시•군선관위의 의결로 거소투표 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 이 경우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가 되었을지라도 지체없이 당해 선거인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주민등록지 (국내거소신고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는 뜻을 통보
-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통지 받은 거소 투표용지 미발송•반송자 명단을 지체없이 투표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받은 거소투표 투표용지 미발송자와 반송자의 선거인명부 해당 「비고, 란에 "미발송", "반송"이라 기재하고 당해인이 선거일 투표시 인정 처리


## 5．거소투표신고의 철회

○ 거소투표신고기간 내에 철회 요구 시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된 경우에는 그 명부와 거소투표신고서접수부에서 삭선하여 삭제하고 각＂비고＂란에 그 사유와 연월일을 기재한 후 구•시•군의 장의 사인을 날인함
－선거인명부의＂비고＂란에＂거소투표신고자＂라 명기된 사항을 삭제하고 그 여백에＂철회＂라고 기재한 후 연월일과 구•시•군의 장의 사인을 날인함

O 거소투표신고기간이 만료된 후에 철회 요구 시
－거소투표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는 철회할 수 없으나，거소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는 때에는 투표할 수 있음을 통지•안내함
［별지 제3호서식의（나）］（규칙 제11조제3항 관련）〈개정 2014．1．17〉

## 거소•선상투표신고서 접수부

| 접수번호 | 성 명 | 주 소 | 거소•선상투표신고 |
| :---: | :---: | :---: | :---: |
| 접수일자 | 생년월일•성별 | $\begin{gathered} \text { 거 소 } \\ \text { (우편번호)•(전화번호) } \end{gathered}$ | $\begin{array}{ll} \text { 사 } & \text { 유 } \\ \text { (비 } & \text { 고) } \end{array}$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1．이 접수부에는 거소－선상투표신고서의 해당 신고사항을 기재한다．
2．신고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 또는 신고를 한 사람 중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하여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올릴 수 없는 사람은 그 사유를 비고란에 적는다．
3．＂거소•선상투표신고사유＂란에는 해당 신고서의 신고사유란에 표시된 해당 번호 또는 내용을 적되，「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별지 제 3 호서식의（라）에 따라 거소투표 신고를 한 사람은 그 거소가 병원 • 요양소인 경우에는＂ 2 ＂로，그 밖의 경우에는＂3＂으로 적는다．

## 6．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및 확정

○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작성기간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5 일 이내
$\checkmark$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2018．5．22．（화）～5．26．（토）
－작성권자 ：구•시•군의 장
－작성부수 ：투표구별로 2통（구•시•군용，관할 구•시•군위원회 송부용 각 1통）
－기재방법
－＂거소＂란에는 거소투표신고서의 거소란에 적혀 있는 내용을 기재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되는 대상자는 즉시 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거소투표자＂로 기재

○ 명부작성시 유의사항
－거소투표신고서접수부는 거소투표신고서 접수순에 따라 작성함
－거소투표신고서의 하단 중앙여백에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기재하고 거소투표 신고인명부 등재순에 의하여 투표구별로 편철함
－거소투표신고인명부가 작성되면 이중등재 여부，결격자등재 여부，정당한 신고자의 누락 여부，거소성명우편번호 오기 여부 등을 거소투표신고서와 철저히 대조하여 오류가 없도록 함
－확정된 거소투표신고인명부는 수정할 수 없음
－확정된 거소투표신고인이 사망자，결격자로 확인된 때라도 확정된 거소 투표신고인 수를 변경 처리하지 아니함

○ 거소투표신고인명부의 확정 및 송부（「법」 §44，규칙 §16）
－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일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checkmark$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2018．5．27．（일）
－확정된 거소투표신고인명부 등 송부
－구•시•군의 장은 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 후 그 확정상황을 지체없이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공직선거 업무편람 ]

- 구•시•군의 장은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자의 거소투표신고서를 거소투표신고인명부 등재번호순으로 정리•편철하여 그 명부 확정 후 즉시 그 명부와 함께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함
- 구•시•군의 장은 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후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른 자가 거소투표신고자인 때와 사망자, 결격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함
[뼐지 제2호서식의(다)] (거소투표신고인명부)•(선상투표신고인명부) <개정 2015.12.24.>

| 등재 <br> 번호 | 선거인명부등재번호 | 성 명 | 주 소 | $\begin{aligned} & \text { 비 } \\ & \text { 고 } \end{aligned}$ |
| :---: | :---: | :---: | :---: | :---: |
|  | (거소투표)•(선상투표) 접수일시 | 생년월일, 성별 | 거소(우편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적는다.
2. "거소"란에는 거소투표신고서의 거소란에 적혀 있는 내용을, 선상투표신고서는 선박의 명칭란 및 팩시밀리 번호란에 적혀 있는 내용을 적는다.
3.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만 있는 사람은 "비고"란에 "비례 대표 선거권자"로, 동시선거에서 일부 선거의 선거권만 있는 사람은 "○○ 선거권자"로 적는다.
4.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구•시•군의 장으로부터 선거권이 없는 사람, 사망한 사람, 잘못 적힌 사람에 대한 통보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비고"란에 적는다.
5. 명부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거소투표자 또는 선상투표자 순서는 선거인명부등재번호 순에 따른다.
6. 그 밖에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방법은 선거인명부 작성방법에 준한다.

## 거소투표신고서 접수•처리 등의 잘못된 시례에 대한 예방대처방안

| 항 목 | 사 례 | 예방•대처방안 |
| :---: | :---: | :---: |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공직선거 업무편람 ]

| 항 목 | 사 례 | 예방•대처방안 |
| :---: | :---: | :---: |

## 사전투표 관련 안내사항

## ㅁ 도입 배경

○ 선거일 전에 투표하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전 신고 없이도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도모하고 선거권행사를 최대한 보장 하고자 도입한 것으로
$\bigcirc$ 투표용지 발급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 어디에서나 선거인에게 해당 선거구의 투표용지를 발급•교부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사실상 세계 적으로 처음 실시하는 제도라 할 수 있음
※ 통합명부는 명부작성권자(구•시•군의장)로부터 선거인명부를 송부 받아 중앙위원회가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하나의 명부를 작성한 후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사용

미용어 변경

| 변 경 전 | 변 경 후 | 비 고 |
| :---: | :---: | :---: |
| 부재자신고 | 거소투표신고 |  |
| 부재자신고서 | 거소투표신고서 |  |
| 부재자신고인명부 | 거소투표신고인명부 |  |
| 투표관리관 | 사전투표관리관 |  |
| 부재자투표소 | 사전투표소 |  |
| 부재자투표참관인 | 사전투표참관인 |  |

## ㅁ 사전투표소 대상 및 범위

$\bigcirc$ 대상선거 : 모든 공직선거
$\bigcirc$ 대 상 자 : 선거일 전에 투표하려는 선거인
$\bigcirc$ 설치단위 : 관할구역 안의 읍•면•동마다 1 개소
※ 읍.면•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설치 가능
$\bigcirc$ 기 간: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06:00~18:00
※ 2018.6.13.(수) 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기간 : 6.8.(금), 6.9.(토)

ㅁ 사전투표 절차 및 방법
$\bigcirc$ 본인여부 확인(신분증 사진과 얼굴 대조)
$\bigcirc$ 본인확인기 신분증명서 스캔 $\rightarrow$ 선거인 조회(명부단말기)
$\bigcirc$ 명부등재 확인되면 본인확인기에 "손도장" 또는 "서명"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공직선거 업무편람 $]$
$\bigcirc$ 투표용지 발급기 이용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을 출력하고, 회송용 봉투에 주소라벨을 부착 하여 투표용지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
관내선거인 : 투표용지(7종) 발급하여 교부 ※ 제주5종, 세종4종
관외선거인 : 출력된 주소라벨을 회송용봉투에 부착하여 투표용지(7종)와 회송용 봉투(1매)를 교부함
$\bigcirc$ 관내선거인은 기표한 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하고, 관외선거인은 기표한 투표지를 회송용봉투에 넣은 후 봉함하여 투표함에 투입

## <사전투표와 종전 부재자투표 방법 비교>

## 종전 부재자투표

| 투표용지, 회송용봉투 지참 | $\Rightarrow$ | 확인인 날인 | $\Rightarrow$ | $\begin{gathered} \text { 투표 } \\ \text { (기표소) } \end{gathered}$ | $\Rightarrow$ | 투표함 투입 | $\Rightarrow$ | $\begin{gathered} \text { 우체국 } \\ \text { 인계 } \end{gathered}$ |
| :---: | :---: | :---: | :---: | :---: | :---: | :---: | :---: | :---: |

## 통합명부사용 사전투표

|  |  | * 관내선거인: 표푱지 |  | 기표후 |  | 관외투표함 개함 후 회송용봉투 발송 |
| :---: | :---: | :---: | :---: | :---: | :---: | :---: |
| 본인확인 <br> (통합명부) | $\check{ }$ | ᄎ 관외선거인: <br> 투표용지, 회송용 봉티(ㅜ소라벨 부착) 교부 | $\Rightarrow$ | 관내선거인은 투표지를 <br> 관외선거인은 투표지를 회송용봉투에 넣은후 투표함에 투입 | $\triangle$ | 관내투표함 구•시•군 위원회에 인계 <br> (첫날은 사전투표소 <br> 보관) |

## ㅁ 사전투표 장비 및 보안

○ 통합선거인명부의 운영은 통합선거인명부 서버, 운용프로그램, 통합명부통신망, 통합 명부운용장비로 구성
※ 통합명부운용장비는 명부단말기(노트북PC), 투표용지 발급기, 본인확인기(손도장 또는 서명입력기), 유•무선통신장비, 무정전전원장치가 있음
$\bigcirc$ 통합명부통신망은 보안성이 강화된 국가정보통신망 또는 전용망으로 구축, 전기 통신 장애 등 대비 '통신사 무선통신망'을 보조망으로 구축
※ 주통신망과 보조통신망으로 이원화하여 안전성 확보
$\bigcirc$ 국가정보통신망이 설치되지 못하는 경우 전용회선을 설치하고 선거정보 통신망을 이용 하여 주통신망 구성
$\bigcirc$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선거인의 투표용지 발급 기록을 실시간 통합선거인명부에 기록• 유지하여 해당 선거인이 다른 사전투표소에서는 물론, 선거일에 일반투표소에서 투표 할 수 없음(이중투표 방지)

## 제6장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누락자 구제

## 1. 명부 열람(「법」 § 40, 규칙 § 13)

O 열람기간 :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3 일간
$\checkmark$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 2018.5.27.(일) ~ 5.29.(화)
O 열람시간 : 공휴일에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 시까지로 함. 다만, 인터넷 열람은 상시 열람 가능

O 열람장소 : 구•시•군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통상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 열람장소•기간•인터넷 홈페이지 주소•열람방법 공고 : 열람개시일 전 3일까지
$\checkmark$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 2018.5.24.(목)

- 공고를 요하는 사항을 공고하지 않으면 선거의 무효사유가 될 수도 있음
- 공고 후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열람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장소를 변경하여 다시 공고할 수 있음

○ 인터넷 열람과 관련 구•시•군이 조치하여야 할 사항

-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열람 및 이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술적 조치
-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에 선거인명부의 열람 방법을 안내

○ 선거인명부 열람 안내

- 열람의 일시•장소 등을 적극 홍보하여 많은 유권자가 열람하도록 안내

O 명부 열람시 관계공무원 등 참여

- 구•시•군의 장은 명부 열람 시 반드시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 선거인 명부 오류 등 방지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공직선거 업무편람]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1.7.28>


## 선거인명부 열람 및 등재여부 확인기간 등 공고

「공직선거법」 제 40 조제 3 항과 제 44 조제 3 항에 따라 년 월 일 실시하는 $\bigcirc \bigcirc$ 선거의 선거인명부 열람과 확정 후 등재여부 확인 기간 및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구•시•군의 장 인

1. 선거인명부 열람

가. 열람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공휴일에 불구함)

나. 열람시간 :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터넷 열람은 열람시간 제한없음)
다. 열람장소

| 장 소 명 | 소 재 지 | 비 고 |
| :---: | :---: | :---: |
|  |  |  |

라. 인터넷 열람 홈페이지 주소
마. 인터넷 열람방법
2. 선거인명부 확정 후 등재여부 등 인터넷 확인

가. 확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확인시간 제한없음)

나. 확인대상 : 선거인명부 등재여부, 등재번호, 투표소의 위치
다. 인터넷 확인 홈페이지 주소
라. 인터넷 확인방법
주 : "인터넷 열람(확인)방법"은 선거인명부의 인터넷 열람(확인)시 접속방법 등을 기재합니다.

## 2．이의신청과 결정（「법」 §41，규칙 § 13）

○ 신청기간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3일간）
$\checkmark$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2018．5．27．（일）～5．29．（화）

O 신청권자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의신청 가능

○ 신청방법 ：해당 구•시•군의 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인터넷홈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음

○ 심사결정
－심사•결정기한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심사•결정권자 ：구•시•군의 장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신청인•관계인과 관할 구•시• 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 ：그 뜻을 신청인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
○ 이의신청의 친절•신속한 처리
－구술•서면 신청에 불구하고 접수 즉시 확인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석에서 심사•결정하여 본인에게 통보
－심사•결정의 잘못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불복신청 요구사례가 없도록 신중 처리

## 3．불복신청과 결정（「법」 § 42）

○ 신청기간 ：이의신청 심사•결정 결과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 신청권자 ：이의신청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이의신청인이나 관계인
O 신청방법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
○ 심사•결정
－기 간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 결정권자 :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 : 즉시 관계 구•시•군의 장에게 통지하여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게 하고 신청인과 관계인에게 통지
-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 : 그 뜻을 신청인과 관계 구•시•군의 장에게 통지


## 4. 명부누락자의 구제(「법」 § 43, 규칙 § 15)

○ 누락자의 명부등재 신청기간 : 이의신청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checkmark$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 2018.5.30.(수) ~ 5.31.(목)
○ 신청권자 및 신청방법

- 누락된 선거권자 또는 구•시•군의 장은 주민등록표등본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

○ 신청사유 : 구•시•군의 장의 착오 등으로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경우

○ 심사•결정

- 기 간 :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 결정권자 :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 : 즉시 관계 구•시•군의 장에게 통지하여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게 하고 신청인에게 통지
-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 : 그 뜻을 신청인과 관계 구•시•군의 장에게 통지


## + 유의사항

$\checkmark$ 선거인명부 작성 후 발생된 누락자에 대해서는 구•시•군의 장이 임의로 선거인 명부에 등재시킬 수 없으며, 이의신청 및 명부누락자 구제신청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함
［별지 제8호서식］（규칙 제15조 관련）〈개정 2015．8．13．〉

## 선거인명부등재신청서

| 선거인명부등재대상자 |  |  | 투표구명 | 등재신청사유 | 비 고 |
| :---: | :---: | :---: | :---: | :---: | :---: |
| 성 명 | 생년월일•성별 | 주 소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실시하는 $\circ \bigcirc$ 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제43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선거인명부의 등재를 신청합니다．

덧붙임 ：소명자료 $\bigcirc$ 부．

$$
\begin{aligned}
& \text { 년 } \quad \text { 월 } \quad \text { 일 } \\
& \\
& \\
& \text { 신청인 }\left[\begin{array}{llll}
\text { 선거권자 } & \circ & \circ & \circ \\
\text { (이 })
\end{array}\right]
\end{aligned}
$$

주：1．＂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를 적는다．
2．주소•연령에 관한 소명자료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을，금치산 또는 수형사실에 관한 소명 자료는 해당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류 등을 말한다．

3．선거인명부등재대상자가 많을 때에는 그 명단을 별지로 작성할 수 있다．

## 제7장 선거인명부의 수정 및 확정

## 1．선거인명부의 수정（규칙 § 14）

○ 선거인명부를 수정하는 경우
－명부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 시 구•시•군의 장이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시 관할 구•시•군선관위가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하고 그 사실이 관계 구•시•군의 장에게 통지된 때
－명부 누락자 구제신청 시 관할 구•시•군선관위에서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하고 그 사실이 관계 구•시•군의 장에게 통지된 때
－선거인명부의 열람기간이 지난 후 선거인명부 확정 전까지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 중 오기 또는 선거권이 없는 자나 사망자가 있는 것을 발견할 때

○ 선거인명부 수정방법

##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수정할 사항이 있더라도 명부작성 만료일까지는 여하한 형태의 수정（삭선처리， 글자의 수정，「비고」란에 사유기재 및 작성권자의 사인날인 등）처리는 없어야 함 －다만，행정기관의 착오에 의하여 누락된 자가 거소투표신고를 하였을 경우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이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고 거소투표신고인 명부 에도 함께 등재
$\checkmark$ 선거인명부의 수정처리는「공직선거관리규칙」제 14 조의 규정에 의거 명부의 열람 개시일부터 가능함

## 〈 선거인명부 확정 전＞

－「법」 제41조（이의신청과 결정），「법」 제42조（불복신청과 결정），또는 「법」 제43조（명부누락자의 구제）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명부를 수정할 때에는 그 사유와 연월일을 비고란에 기재하고，구•시•군의 장의 사인 날인
－선거인명부의 열람기간이 지난 후 선거인명부학정 전까지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 중 오기 또는 선거권이 없는 자나 사망자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하되，비고란에 그 사유와 연월일을 기재하고 구•시•군의 장의 사인 날인
－선거인명부 확정 전에 발생된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선거인명부 확정 후 「선거인 명부 수정상황통보서，를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통보

나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자는 선거인명부확정과 별개로 수정상황이 발생 되면 그때마다 구•시•군선관위로 통보

## 〈 선거인명부 확정 후＞

－선거권이 없는 자，사망자，이중등재자，오기된 자를 발견한 때에는
$\checkmark$ 거소투표신고인명부의 경우 그때마다 지체없이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별지 제7호 서식의（나）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당해 구•시•군선관위는 거소투표신고인명부 「비고」란에 사유 기재
$\checkmark$ 선거인명부의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나）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보
（1）선거인명부 확정 후부터 사전투표기간 만료일（6．9．）까지 ：그때마다 구•시•군선관 위에 통보하고，구•시•군선관위는 통합 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재
（2）사전투표기간 만료 익일（6．10）．）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구•시•군 및 읍•면•동선 관위에 통보하고，읍•면•동선관위는 사전투표기간 중 투표한 사람의 정보가 반영된 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구•시•군의 장으로부터 송부받은 거소투표신고인 명부（전산자료 복사본 포함）의 기재사항에 오기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시•군의 장에게 거소투표신고서와 거소투표신고인명부의 대조•확인을 요구할 수 있음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하거나 반송된 거소투표 신고인의 명단을 통지받은 때에는 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재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투표관리관에게 송부한 후에 구• 시•군의 장 또는 구•시•군선관위로부터 오기 등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투표관리관에게 통보하고，이를 통보받은 투표관리관은 선거인명부의『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재

## 2．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법」 §44，규칙 § 16）

○ 명부확정 시기
－선거인명부 ：선거일 전 12일
$\checkmark$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2018．6．1．（금）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 다음 날
$\checkmark$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2018．5．27．（일）

○ 명부의 효력 ：당해 선거에 한함
$\checkmark$ 동시선거에 있어서 선거인명부와 거소투표신고인명부는 하나의 선거인명부와 거 소투표신고인 명부에 의함（「법」 §204（1））

○ 명부 확정상황 통보
－선거인명부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가 확정된 후 지체없이 그 확정상황을 별지 제9호 서식의（나）．（다）에 의하여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
$\checkmark$ 확정된 선거인명부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도 함께 송부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구•시•군의 장에게서 제출받은 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으로 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하므로 지체없이 송부
－구•시•군의 장은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자의 거소투표신고서를 그 명부등재번호순으로 정리편철하여 명부 확정 후 즉시 그 명부와 함께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

○ 구•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확정된 선거인명부 등재여부，등재번호 및 투표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6．2．～6．13．）
［별지 제7호서식의（나）］（규칙 제14조제4항 관련）〈개정 2015．8．13．〉

## 확정된（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오기사항등의 통보서

| 투 표 구 명 | 등 재 번 호 | 성 명 | 오 기 사 항 등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오기사항등＂란에는 오기•선거권이 없는 자•사망자등에 대한 사실을 기재한다（예 ：성명중＂○○＂은 ＂$\times \times$＂의 오기임，$\bigcirc$ 년 $\bigcirc$ 월 $\bigcirc$ 일 $○ ○$ 법 위반으로 $\bigcirc \bigcirc$ 형을 받음，$\bigcirc$ 년 ○ 월 ○일 사망함등）．
2．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과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각각＂주민등록 재외국민＂ 또는＂외국인＂이라 적는다．
［별지 제9호서식의（나）］〈개정 2015．12．24．〉

## 선거인명부확정상황통보서



주：1．이 서식은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1）란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의 인구수를 기재한다．
（2）란은 선거인명부작성상황통보서상의 선거인수（거소•선상투표신고인수를 포함한다）를 기재한다．
（3）란은 선거인명부확정 전까지 사망자•선거권이 없는 자 및 이중등재자 등의 발견으로 직권수정하여 감소된 선거인수를 기재한다．
（4）란은 선거인명부열람에 의한 이의•불복신청에 대한 결정 및 선거인명부열람기간이 지난 후부터 선거인명부 확정 전까지 누락자에 대한 명부등재결정으로 인하여 증감된 선거인수를 기재한다．
（5）란은（2）란의 선거인수에（3）－（4）란의 수를 증감한 수를 기재한다．
2．（1）부터（8）까지의 란에는 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안에 재외국민의 수를 따로 적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작성（6）（7）란 제외）하되，（ ）안에 재외국민의 수를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외국인의 수를 적어 각각 섬표（，）로 구분한다．
3．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만 가지거나 동시선거에서 일부 선거의 선거권만 가지는 사람이 있어 선거인수가 다른 경우에는 선거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4．이 통보서에는 별지 제 1 호 〈선거인명부수정상황〉과 별지 제 2 호 〈선거인명부확정내역〉을 작성•첨부한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공직선거 업무편람 ］

## ＜별지 제1호＞

## 선거인명부수정상황

| 투표구명 | 선거인명부 <br> 등재번호 | 성 명 | 수정내용 |  | 수정사유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수정전 | 수정후 |  |  |
|  |  |  |  |  |  |  |

주 ：1．수정사유란은 이의신청•불복신청등에 대한 결정，오기，누락，이중등재，사망，선거권이 없는 자 등으로 기재한다．
2．선거인명부에 누락되었던 자가＂세대주＂인 때에는 비고란에＂세＂라고 기재한다．
3．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과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각각＂주민등록 재외국민＂또는＂외국인＂ 이라 적는다．

## ＜별지 제2호＞

선거인명부확정내역

| $\begin{aligned} & \text { 투표 } \\ & \text { 구명 } \end{aligned}$ | 확정된 <br> 선거인수 <br> （1）＋（2）＋ <br> （3） | （1）주민등록이 된 거주자•거주불명자 선거인수 |  |  |  |  |  | （2）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 선거인수 |  |  |  |  |  | （3） <br> 외국인 <br> 선거인 <br> 수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사전 <br> 투표소 또는 <br> 투표소 <br> 에서 투표 <br> 할 선거인 | 거소투표 신고를 한 선거인 | 선상투표 <br> 신고를 한 선거인 | 재외 <br> 투표소 <br> 에서 투표 <br> 할 선거인 |  | 계 | 사전 <br> 투표소 뜬 <br> 투표소에 <br> 서 투표할 <br> 선거인 | 거소투표 신고를 한 선거인 | 선상투표 <br> 신고를 한 선거인 | 재외 <br> 투표소 <br> 에서 <br> 투표할 <br> 선거인 |  |  |
|  |  | 계 |  |  |  |  |  | 계 |  |  |  |  |  |  |  |
|  |  | 남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여 |  |  |  |  |  |  |  |

주 ：이 서식은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1）란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선거인수를 기재하되，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거소•선상투표신고를 한 선거인，국외부재자신고를 하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란은 「주민등록법」 제 6 조제 1 항제 3 호에 해당하는 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 선거인수를 기재하되，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거소•선상투표신고를 한 선거인，국외부재자신고를 하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 할 선거인（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며，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거소•선상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은 동시선거에서 일부선거의 선거권만 가지는 사람이 있는 경우（법 제 15 조제 1 항제 2 호 및 제 15 조제 2 항제 2 호에 해당 하는 자）에는 선거별로 구분하여 그 수를 기재한다． （3）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외국인선거인수를 기재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다)] <개정 2015.12.24.>
(거소투표신고인명부)•(선상투표신고인명부)확정상황통보서

| $\begin{aligned} & \text { 투표 } \\ & \text { 구명 } \end{aligned}$ | 인 구 수 <br> ( 년 월 일 현재) | 선 거 인 수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 현재) |  |  | 확정된 (거소투표)- <br> (선상투표) 신고인 수 |  |  | 인구수에 대한 (거소투표)•(선상투표) 신고인수 비율(\%) | 선거인수에 대한 (거소투표)•(선상투표) 신고인수 비율(\%)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남 | 여 | 계 | 남 | 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인구수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의 인구수를 적습니다.
2. "인구수•선거인수•확정된 (거소투표)•(선상투표)신고인수"란에는 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 )안에 재외국민의 수를 따로 적습니다.
3.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만 가지거나 동시선거에서 일부 선거의 선거권만 가지는 사람이 있어 선거 인수가 다른 경우에는 선거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4. 거소투표신고인명부와 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구분하여 각각 작성한다.

## 제 8 장 선거인명부의 재작성 및 사본교부

## 1．명부의 재작성（「법」 § 45，규칙 § 17）

0 재작성 사유
－천재•지변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 포함）가 멸실•훼손된 경우 선거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때
－다만，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송부한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 포함） 등본이 있는 때에는 선거인명부를 재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음

O 재작성권자：구•시•군의 장
O 재작성 방법
－일반적인 경우
－「법」제 37 조（명부작성）내지 제 45 조（명부의 재작성）의 규정에 따라 재작성 하되，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송부한 선거인명부등본（전산자료 복사본 포함）이 있는 때에는 선거인명부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 구•시•군위원회의 의결로 선거인명부의 작성기준일•작성기간•열람 기간•열람장소•이의신청 및 심사결정•유효기간과 확정 기타 선거인명부의 재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음（규칙 §17（1）
－구•시•군선관위가 선거인명부 재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당해 구•시•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직근 상급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규칙 § 17（2））

## 2．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 사본의 교부（「법」 §46，규칙 §18）

○ 교부권자 ：구•시•군의 장
○ 신청권자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 비례대표 후보자 및 선거사무장은 제외
O 신청방법 ：구•시•군의 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다）에 의하되 1종에 한함
O 신청기간：선거기간 개시일까지
$\checkmark$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2018．5．31．（목）까지

O 교부수량 ：후보자별 1통（사본 또는 전산자료 복사본）
○ 작성비용 ：교부신청자가 교부신청과 함께 납부하며，구•시•군의 장이 선거인 명부 작성마감일까지 공시
$\checkmark$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2018．5．26．（토）까지

○ 서식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 포함）의 사본 또는 전산자료 복사본의 앞표지는「별지 제 10 호서식의（가）」에 의하고，그 끝에는「별지 제10호 서식의（나）」에 의한 기재를 하여 원본과 틀림없음을 증명하여야 함
$\checkmark$ 선거인명부사본은 전산자료에 의하여 출력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사본의 양도•대여금지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checkmark$ 교부받은 선거인명부 또는 거소투표신고인명부의 사본（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함）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 또는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하게 한 자 $\Rightarrow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법」 §25632호다목）
－구•시•군의 장은 선거인명부의 동일성이 유지되도록 전산자료 복사본에 변조방지 장치를 할 수 있음
［별지 제10호서식의（가）］（표지）〈개정 2014．7．29〉

## （선거인）•（거소투표신고인）•（선상투표신고인）명부 사본

1．이 사본은 「공직선거법」 제 44 조에 따른 확정된 선거인명부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정당한 선거권자가 누락•이중등재 또는 잘못 기재되어 있거나 선거권이 없는 자가 올라 있을 수 있습니다．

2．누구든지 이 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시•군
○○읍•면•동 제○ 투표구분

주：전산자료 복사본에는＂인＂을 생략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나）］（끝부분）〈개정 2014．1．17〉

이 사본은 $\bigcirc \bigcirc$ 읍•면•동 제○투표구의 작성된（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 인명부）•（선상투표신고인명부）와 틀림이 없습니다．

년
월
일

○○구•시•군의 장 인

주 ：1．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 및 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사본 교부시에 사본 끝부분에 기재하여야 한다．
2．전산자료 복사본에는＂인＂을 생략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다）］〈개정 2014．1．17〉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선상투표신고인명부）사본교부신청서

| 투표구명 | 명부의 종류 | 사본의 종류 | 비고 |
| :--- | :--- | :--- | :--- |
|  |  |  |  |

년 월 일 실시하는 $\bigcirc \bigcirc$ 선거에서「공직선거법」제46조제2항에 따라 명부의 사본교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덧붙임 ：사본작성비용 원

| 신청인 | 년 | 월 | 일 |
| :---: | :---: | :---: | :---: |
|  | －후보자 | $\bigcirc \bigcirc \bigcirc$ | （1）- |
|  | －선거사무장 | $\bigcirc \bigcirc \bigcirc$ | （1）－ |
|  | 선거연락소장 | $\bigcirc \bigcirc \bigcirc$ | （1） |

## ○○구•시•군의 장 귀하

주 ：1．신청인은 신청대상투표구명과 명부의 종류（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 또는 선상 투표신고인명부）및 사본의 종류（일반 사본 또는 전산자료 복사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일반 사본과 전산자료 복사본 중 1 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0호서식의（라）］〈개정 2014．1．17〉
공시 제 호

##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 및 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사본 작성비용공시

년 월 일 실시하는 $\circ \circ$ 선거에서「공직선거법」제 46 조제 3 항에 따른 선거 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 및 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사본의 작성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년 월 일
○○구•시•군의 장 인

| 사본의 종류 | 일반사본 매당 작성비용 | 전산자료 복사본 비용 | 비고 |
| :---: | :---: | :---: | :---: |
| 선거인명부 |  |  |  |
| 거소투표신고인명부 |  |  |  |
| 선상투표신고인명부 |  |  |  |

## 3．세대주명단 작성 • 교부（「법」 § 60조의3，§ 111）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관련（「법」§60조의3）
－교부목적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인쇄물 발송
－교부신청범위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 이내
－신청주체 ：예비후보자등록을 한 예비후보자
$\checkmark$ 예비후보자 등록시기（「법」 §60조의2）
－시•도지사•교육감 ：선거일 전 120일부터（2018．2．13．）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2018．3．2．）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2018．4．1．）
$\checkmark$ 선거기간（「법」§33）
－대통령선거 ： 23 일／국회의원•지방의원•자치단체장선거 ： 14 일
－교부신청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 전 5일까지 서면으로 신청
$\checkmark$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2018．5．19．（토）까지
$\checkmark$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법」 §49（1））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선거，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일 전 20일

O 의정활동보고 관련（「법」 §111）
－교부목적 ：의정활동 보고를 위한 보고서 발송
$\checkmark$ 다만，선거일 전 90 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발송할 수 없음（인터넷 게재만 가능）
－신청주체 ：국회의원，지방의원
－교부신청 ：연 1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신청
－교 부：신청 시 지체없이

○ 세대주명단 작성•교부(규칙 § 26조의2, §49 등)

- 신청서식 : 별지 제15호의 4서식의 (가)
$\checkmark$ 신청대상은 지역별•연령별•성별 등을 특정하여 기재
- 교부의무자 : 구•시•군의 장
- 작성•교부
- 신청한 발송대상 범위 안에서 행정구역순, 지번순으로 세대주를 선정하여 교부
-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고, 전산자료복사본 교부로 갈음 할 수 있음
- 세대주명단의 동일성이 유지되도록 전산자료복사본에 변조방지 장치를 할 수 있음
- 작성비용 공시
- 구•시•군의 장이 매년 1월말까지 「별지 제32호의2서식」에 의해 공시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공직선거 업무편람］
［별지 제15호의4서식의（가）］（규칙 제26조의2제11항•제49조제2항 관련）〈개정 2009．2．19〉


## 세대주명단 교부 신청서

○○선거 $○$ ○선거구

| 명단의 종류 | 신청대상 | 신청세대수 | 비고 |
| :--- | :--- | :--- | :--- |
|  |  |  |  |
|  |  |  |  |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3항）•（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대주명단의 교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덧붙임 ：작성비용
원

년 월 일 국 회 의 원 $\bigcirc \bigcirc \bigcirc$ 인
신청인 $\bigcirc \bigcirc$ 의회의원 $\bigcirc \bigcirc \bigcirc$ 인 예 비 후 보 자 $\bigcirc \bigcirc \bigcirc$ 인

○○구•시•군의 장 귀하

주 ：1．명단의 종류에는＂일반명단＂또는＂전산자료 복사본＂을 기재합니다．
2．＂신청대상＂은 지역별•연령별•성별 등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3．예비후보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 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수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2호의2서식］＜신설 2005．8．4＞
공시 제 호

##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3항）•（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대주 명단의 작성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일반명단 매당 작성비용 | 전산자료 복사본 비용 | 비 고 |
| :--- | :---: | :---: |
|  |  |  |

## ［규칙 제31조제4항 규정 관련］

## 시각장애선거인 세대주 명단 교부신청서

1．선거명 ：$\bigcirc \bigcirc$ 선거 $\bigcirc \bigcirc$ 선거구
2．후보자 성명 ：
3．명단의 종류 ：
「공직선거법」제66조에 따른 점자형 선거공약서의 우편 발송을 위하여 「공직선거관리규칙」제31조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시각장애인선거인과 그 세대주 성명•주소의 교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후보자
（ㄴ）

○○구•시•군의 장 귀하
주 ：명단의 종류에는＂일반명단＂또는＂전산자료 복사본＂을 기재합니다．

## 제9장 투 표

## 1．선거방법（「법」 § 146）

O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함
O 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1인 1표로 함
－다만，국회의원선거，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지역구 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의원선거마다 1인 1표로 함

○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

## 2．투표소의 설치（「법」 § 147，§ 148）

O 투표소의 설치 및 공고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전일까지 관할 구역안의 투표구마다 투표소를 설치하고，선거일 전 10 일까지 그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
$\checkmark$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2018．6．3．（일）까지
$\checkmark$ 학교•관공서 및 공공기관•단체의 장은 투•개표 장소 협조요구에 우선적으로 응해야 함．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는 500 만 원 이하 과태료（법，$\$ 2614$ ）
－병영 안과 종교시설 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함，다만 종교시설의 경우 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허용

O 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공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때에는 선거일 전 9일까지 그 명칭•소재지 및 설치•운영기간을 공고
$\checkmark$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2018．6．4．（월）까지

## 3．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법」 § 146조의2，§ 1479）

○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법」 § 146의2，규칙 § 67）
－대 상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투표구마다 1인씩 위촉
－역 할 ：해당 투표구의 투표사무관리
－해촉 사유
－법규에 위반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구•시•군위원회 또는 읍•면•동위원회의 지시•명령에 불응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
－건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투표사무원（「법」 § 1479）
－위촉／공고 ：읍•면•동위원회가 위촉하고 선거일 전 3 일까지 성명을 공고

```
\checkmark 투표사무워ᄂ 고ᄋ고 : 2018.6.10.(이ᄅ)까지
```

－대 상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제2조）및 지방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
$\checkmark$ 다만，일반직공무원 중 공안직군의 공무원과 교육공무원외의 특정직 및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함
－각급학교의 교직원

- 「은행법」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의 직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 조 제 1 항 제 3 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 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직원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 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직원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공단의 직원
－투표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
\checkmark 투·개표사무워ᄂ으로 위초ᄀ되ᄂ 자가 저ᄋ다ᄋ하ᄂ 사유 어ᄡ이 지ᄀ무수해ᄋ으ᄅ 거부·유기·해태하ᄂ
        겨ᄋ우 => 100마ᄂ워ᄂ 이하 과태료(버ᄇ $26182호바모ᄀ)
```


## 4．투표안내문의 발송（「법」 § 153）

○ 주 체：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O 대상（방법）：관할구역 안의 매세대（우편발송）
○ 기 재 내 용 ：세대별 선거인의 성명，선거인명부등재번호，투표소의 위차투표할 수 있는 시간，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기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선거공보 동봉）

O 기 한：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checkmark$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2018．6．3．（일）까지
O 우편요금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제65조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세대（시각장애선거인）는 점자형 투표안내문 동봉

## 5．거소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법」

O 주 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O 발송대상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선거인
O 시 기：선거일 전 10 일까지
$\checkmark$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2018．6．3．（일）까지
O 발송．참관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발송하되，정당추천위원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봄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절취한 후 거소투표용지를 바코드가 표시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다시 발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함
－책자형 선거공보를 동봉하여 발송
－투표방법 기타 선거에 관한 안내문을 거소투표용지와 동봉하여 발송
－발송•회송은 등기우편으로 하되，우편요금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부담
－우체국장은 다른 우편물보다 우선하여 취급하여야 함

## 6．투표시간（「법」 § 155）

○ 투표시간 ：선거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다만，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함
$\checkmark$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2018．6．13．（수）오전 6시～오후 6시
O 거소투표자의 경우 선거일 오후 6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용지가 도착되어야 함

## 7．투표의 제한（「법」 § 156）

○ 투표할 수 없는 자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자．다만，「법」 제41조（이의신청과 결정） 제2항•제42조（불복신청과 결정）제2항•제43조（명부누락자의 구제）제2항의 이유 있다는 결정통지서를 가지고 온 자는 투표할 수 있음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음

○ 거소투표자의 투표
－거소투표자는 거소투표를 하여야 함
－다만，허위신고자 및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거소투표용지를 송부받지 못한 자와 거소투표용지가 반송되어 거소투표용지를 송부받지 못한 자，거소투표용지를 송부받았으나 거소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한 사람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음
－이 경우 투표관리관은 선거인명부 또는 제154조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거소 투표자의 명단과 대조확인하고 선거인명부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함

## 8．투표용지 수령 및 기표절차（「법」 § 157，규칙 § 82②）

○ 투표관리관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됨
$\checkmark$ 신분증명서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공무원증•국가유공자증•장애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 자격증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이들 기관이 기록•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비례대 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함）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참관인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함

○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 또는 오손된 때에는 다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함

○ 선거인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초등학생인 어린이의 경우에는 기표소 제외）안에 출입 할 수 있으며，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음
－같은 기표소 안에 2 인 이상이 동시에 들어 갈 수 없음

## 9．사전투표，거소투표（「법」 § 158，§ 158의2）

## 〈사전투표〉

○ 대 상 ：선거일 전에 투표하려는 선거인 누구나（거소투표자 제외）
O 투표기간：2018．6．8．～6．9．（2일간）
○ 투표시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 까지
○ 제 시 물 ：신분증명서

-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은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야 함

○ 사전투표의 우편발송

- 발송자 : 사전투표관리관 등
- 시 기 : 사전투표 기간 중 매일의 사전투표마감 후 또는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 방 법 :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다음에 따라 처리
(1)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교부하여 투표하게 한 경우에는 사전투표 함을 개함하고 사전투표자수를 계산한 후 관할 우체국장에 인계하여 등기 우편으로 발송
(2)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않고 투표하게 한 경우에는 첫째날은 사전투표소에 보관하고 해당 사전투표함을 사전투표 종료 후 직접 관할 구•시•군선거 관리위원회에 인계


## 〈 거소투표 >

○ 기관•시설의 장은 거소투표용지 도착 즉시 거소투표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

## + 유의사항

$\checkmark$ 해당 기관•시설에 안내

- 기표소 설치대상 기관•시설 신고 및 기표소 운영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해당 기관•시설에 관련내용 안내
$\checkmark$ 공정성•중립성 견지
- 거소투표 제도는 선거인의 거소•건강상태 등을 감안하여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 신고인 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의식불능자 또는 의사표시 불능자를 대신하여 허위 신고 또는 대리투표하거나, 의식불능자 또는 의사표시 불능자의 가족의사를 물어 허위신고 또는 대리투표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 필요

O 투표장소 : 자택, 군부대,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 등 거소 ※ 거소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 후 투표 가능

## ○ 투표절차

（1）관할 구•시•군선관위로부터 송부 받은 거소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를 선택 하여 투표용지의 해당칸에 기표
（2）기표한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등기우편（무료）으로 발송 ※ 회송용 봉투에는 도장날인，거소•성명 등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도록 안내 ※ 선거일 오후 6 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도착되도록 발송

## 10．투표참관（「법」 § 161，§ 213）

○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함

○ 투표참관인 선정•신고
－신 고 자：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
－신고인수 ：후보자마다 투표소별로 2인
－신고시기•방법 ：선거일 전 2일까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
○ 투표참관인의 지정 ：투표소마다 8인
○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자
－후보자 및 후보자의 배우자，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자，미성년자
－「법」제 18 조（선거권이 없는 자）제 1 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
※ 법 제 18 조 제 1 항 제 2 호 후단 위헌판결로 집행유예자는 가능
－「법」제 53 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 1 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

## O 투표참관

－투표참관인은 투표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투표관리관은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투표 참관인을 교대로 참관하게 할 수 있고，이 경우 정당•후보자별로 참관인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함
－투표참관인은 투표참관 도중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투표관리관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투표참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음

## 11．사전투표참관（「법」 § 162，§ 213）

O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사전투표 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함
O 사전투표참관인 선정•신고
－신 고 자：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
－신고인수 ：후보자마다 투표소별로 2인
－신고시기•방법 ：선거일 전 7일까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
O 기타 투표참관에 관한 사항은 「법」 § 161 준용

## 12．투표소 등의 출입제한（「법」 § 163）

O 투표소에 출입할 수 있는 자（그 외에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음）
투표하려는 선거인，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 위원회의 위원과 직원，투표사무원

O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이 투표소에 출입 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달거나 붙여야 하며， 이 규정에 의한 표지외에는 선거와 관련한 어떠한 표시물도 달거나 붙일 수 없음 ※ 표지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양여 불가

O 사전투표소의 출입제한에 대해서「법」 §163 준용

## 13．투표소 등의 질서유지（「법」 § 164 ～§ 166）

O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 요구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투표소 안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 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원조요구를 받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함
※ 투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안에서 무기•흉기• 폭발물을 지닐 수 앖음

## 14．투표의 비밀보장（「법」 § 167，규칙 § 92）

○ 질문 및 진술요구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인이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질문하거나 진술을 요구할 수 없음

○ 텔레비전방송국 등의 예외적인 질문허용
－대상 ：텔레비전방송국•라디오방송국•「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사
－목적 ：선거의 결과 예상
－방법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 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 으로 질문할 수 있음（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경위와 결괴를 공표할 수 없음）

O 공개된 투표지의 처리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함
－투표관리관은 선거인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투표소에서 공개한 투표지는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투표지를 회수하여 공개된 투표지라는 표시를 한 후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다음 투표함에 투입

## 15．투표록의 작성 및 투표함의 봉쇄•봉인（「법」 § 168，§ 169）

O 투표관리관은 투표소를 닫는 시각이 된 때에는 투표소의 입구를 닫아야 하며， 투표소 안에 있는 선거인의 투표가 끝나면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봉쇄•봉인하여야 함
－다만，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투표참관인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함

O 투표함의 열쇠와 잔여투표용지 및 번호지는 위의 규정과 같이 각각 봉인
O 투표관리관은 투표록을 작성하여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함

## 16．투표함 등의 송부 및 인계（「법」 § 170，§ 171）

○ 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투표함 및 그 열쇠와 투표록 및 잔여 투표용지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
＊후보자별로 투표참관인 1 인과 호송에 필요한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2 인에 한하여 동반 가능
O 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난 후 선거인명부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인계

## 제 10 장 개 표

## 1．개표관리（「법」 § 172）

O 주 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 2．개표소（「법」 § 173，규칙 § 95）

O 공고기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까지
－다만，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시 공고
$\checkmark$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2018．6．8．（금）까지
○ 설치기한 ：선거일 전일까지

## 3．개표사무원（「법」 § 174）

O 위촉•공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
$\checkmark$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2018．6．10．（일）까지
0 대 상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제2조），지방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교직원，「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의 직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 조 제 1 항 제 3 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 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직원，농업•수산업협동조합 등의 직원， 지방공사•공단의 직원，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다만，일반직공무원의 행정직군 중 교정•보호•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공안 직렬의 공무원과 교육공무원 외의 특정직공무원 및 정무직공무원은 제외

## 4．투표함의 개함（「법」 § 177）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개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개함

○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

5．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법」 § 183）

O 개표소에 출입할 수 있는 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개표사무원，개표사무협조요원，개표참관인
○ 일반관람인석에 들어갈 수 있는 자
－관람증을 배부받은 자，방송•신문•통신의 취재•보도요원

## 선거업무 전산처리 요령

1. 선거업무 처리 절차
2. 선거 전산업무 처리일정

- 시•군•구 담당자
- 읍•면•동 담당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공직선거 업무편람"


|  |  |  |  |  |
| :---: | :---: | :---: | :---: | :---: |
| 고호청ㅇ애표 순고안몽투직성 |  | ग18.919 | WEa MP | 재쑈13 |
|  | $5 / 26$ |  <br>  |  <br>  <br>  | 8몬튳 |
|  |  |  | 9313. 선거인명부출릭 |  |
|  |  | RIUS | 360.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상 황푱보서 | 시군구(선거담담) |
| 열람용 파일직성 및 선관위파일제 공 | $\begin{gathered} 5 / 26 \text { - } \\ \text { 거소투표신교인명부 } \\ \text { 확정 이우 } \end{gathered}$ | 서버작임 | 지자체 훙폐이지 인티낫 열람융 선거인명부 파일작성 | 시군구(전산담당) |
|  |  | 주민둥륙 시군구 정보시스빔 | 9331.선관위용파일작성 9332. 후보자 용파일 작성 | 읍면동 시군구(선거담당) 구시픈(선환웍) |
| $\begin{aligned} & \text { 열람 및 } \\ & \text { 이의신정 } \end{aligned}$ | $5 / 27 \sim 5 / 29$ | 주민등륵 시군구 정보시스탬 | 9341. 선거인명부열람 | 읍면동 |
| 선거인몀부 홨정 | 6/1 | 주민듕룩 시군구 정보시스탬 | 9351. 선 거인명부확정상 훵롱보서 | 읍면동 |
|  |  | 주민등록 시군구 정보시스팀 | 9333.선 관 위용 파 일 작 성 (시군구용) 빠선거인(왁정)명早 선관위 총부 | 시군구(선거담당) 구시쿤(선푠위) |
|  |  | RIUS | 350. 선거인명부혁정상항통보서_외국인포함 370, 선거인명부기타몽보서 외국인포함 | 시군구(선거담당) |
|  |  | 서버자법 | 지자제 훔폐이지 인티낫 열람용 선거인명부 파일작섬 | 시군구(전산담당) |
| 투표안내문 송부 | 6/1-6/3 | 주민동록 시군구 정보시스뱀 | 9352. 푸표안내문 파일추술(선관위시스템 등룩용) | 읍면동 |
|  |  | 선관유시스탬 |  | 읍면동 |
| 투표일전 준비 | 6/9~6/12 | 선퓬워시스탬 | 사전투표가 반영된 핑천선거인명부 딪 떡인부 출력 | 읍면동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공직선거 업무편람]


언거구분은 "0009-전국동시지방선거" 틀 선택한다.
1.선거정보에서 시행되는 선거를 서택 후 (1)조회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서거의 2.선거구 정보를 각각 확인한다.

언거구별로 3.선거구관한행정동 정보를 확인한 추 (2) '확인' 버든을 클릭한다







## 1．시군구 담망자

5．RIUS－등녀－선거괌련보고 -340 ．선거인명부 적성상항몽버서
v종련현배

 선거구분코드는 실시하는 선거명을＊선택해야 한다．
＊시•도 의 장 선거인 경우＇광역자치단체장선거＇，시•도 의회의원선거의 경우＇광역의회의원선거＇
，구•시•군의 장 선거인 경우＇기초자치단체장선거＇，구•시•군 의회의원선거의 경우＇기초의회의원선거＇등 9 종 ○ 선거구코드는 해당 시군구에 해당되는 선거구를 선택한다．

## 1．시군구 담당자

5．RIUS－등계－선거관련보교 -340 ．선거인명부 작성상항망보서

（1）처거구포，형거구쿄드，셔거
 렬휴다．기줄밀자는 ㄹ⼸ㄱ성삼형방 보서 장성알제를 령형한마．



定材新 증개율ㅁ．
（4）व2


 형할디．
（5）시룬구띄세 보고서힌게 우

 였므앵，씬드시 도그서 질게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공직선거 업무편람



## 1.시군구 담망자

## 




1. irais 계정으로 공통기반 1 AP 서버 로그인
2. 실행파일 디렉토리 이동 : cd /irais/a_rsr/bin
3. 전산파일생성 작업 : RSRCC119000Z $\vee /$ irais/a_rsr/data1/ $\vee$ 선거일자8자리

- 프로그램명과 선거인파일 생성 디렉토리, 선거일자8자리는 각각 한 칸 $(\vee)$ 띄워야 함.
- 생성되는 파일명 : VOTEMAN_선거일자_작성일자.dat

예) [irais@jumin:/irais/a_rsr/bin] RSRCC119000Z /irais/a_rsr/data1/ 20180613
=> /irais/a_rsr/data1/VOTEMAN_20180613_20180526.dat 파일이 생성됨
※ 작업일을 2018년 5월 26일로 가정했을 경우임
4. 로그 위치: /irais/a_rsr/log/RSRCC119000Z.log
※ 선거인명부 인터넷열람용 저사파일작성 지침서 및 인터넷열람용 저ㅅㅏㅏ파일(샘플)

* 주민등록.인감.서명 공동학습방(http://10.51.21.13) ->선거업무->자료실 게시번호 32714 에 게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공직선거 업무편람 ]

1.시군구 담망자
12. RIUS -등녜 -선거관련보고 - 3 A0.선거인명부 학정내역

구웅문련뮤




## 1.시군구 담당자




बलurar $\square$







## -



선거구분에 대표선거('0009-전국동시지방선거')를 선택하면 선거일자는 자동으로 조회된다.
요청일자는 기본으로 현재일자가 지정되며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가능하다.
파일작성 버튼을 를릭하여 시.군.구 서버의 서버 작업디렉토리(/irais/a_rsr/log) 폴더에 선거인명부 파일을 생성한다.
菒 시.군.구 업무담당자가 선거인명부 확정일( $6 / 1$ )부터 작업이 가능하다. ( $\star$ 읍.면.동 업무담당자 작업 불가)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공직선거 업무편람]



## 1.시군구 담당자

## 참고, 외룩연뼝부 공둥이용 시스듬

O 외국인선거켠자 파일 셩성

- 외국인정보공둥이영시스댄 > 정보조회 > 등륙외국인렴리 > 옹록외국인영주견자영단조회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공직선거 업무편람 $]$







## II.읍면동 담망자

## 14. 주민오류자료 조연-본번부번/롱반/변지홍ㅇㄹㅠ




## II.읍면동 담망자

## 14. 주민오류자료 조혀 - 직권임렴중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공직선거 업무편람]

## II.읍면동 담망자

14. 주민오뮤자료 조현 - 개인(거주1/세매[밈서]



## II.읍면동 담당자

## 14. 주민오류자료 조혁 - 개이|말쇠/세매|거주]




## 11．읍면동 담당자

## 14．주민오류자료 조회－기타요휴자료



0． 2 事界事





## II．읍면동 담당자

14．기타줏ㅅ정비－자료관라－명부관리－5210．세매별명부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공직선거 업무편람]

## II.읍면동 담망자

## 14. 기타주스정비-5312.제대쌘주스정리





## II.읍면동 담망자

## 15. 9307 .외국인선거인둥묵 - 외국인조혁



[^1]
## II.읍면동 담망자

## 15. 외국인선거인둥독 - 외국인후가





## II.읍면동 담망자

## 15. 외국인선거인둥독 - 외국인수정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공직선거 업무편람]
II.읍면동 담당자
15. 외국인선거인둥둑 - 외국인삭지





## II.읍면동 담망자

## 15. 외국인선거인둥독-외국연임푤동독2






## II.읍면동 담망자

## 15. 외국인선거인둥독-외국연얌먈몽독3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공직선거 업무편람]

## II. 읍면동 담당자

## 






## II.읍면동 담당자

## 



O. 선거켠착졍여푸



## II．읍면동 담망자

## 16．재외국민주민동돈자 등흘－제와국민주인몽훌자 후가




自部制

## II．읍면동 담망자

## 16．재외국민주민둥혹자 등흑－제와국민주인뭉훌자 수정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공직선거 업무편람 ]

## II. 읍면동 담당자

## 16. 재외국민주민둥혼자 등흔 - 제와국민주민몽훙자 삭제



[^2]

## II. 읍면동 담당자

## 16. 재외국민주민뭉운자 동득 - 찹교자료

애외국민주민둥록자란?

ㅇ재외국민주만등 력지에 대한 3개열 이상인 매상자

1. 현재 주민등록자료에 등록구분이 재외국인 거주자, 재외국인 출국신고자, 재외국인 거주불명자인 경우
1) 재외국민거주자로 재등록을 2018년 2월 23일까지 등록한 경우
$: 3$ 개월 이상 대상자.
2. 현재 주민등록자료에 등록구분이 재외국인 출국자인 경우
1) 거주자 $\rightarrow$ 국외이주통보, 현지이주통보 $\rightarrow$ 재외국민 출국자
: 3 개월 이상 대상자.
2) 재외국인거주자 $\rightarrow$ 재외국인출국신고, 재외국인현지통보 $\rightarrow$ 재외국인 촐국자

- 재외국민거주 자로 재등록을 2018년 2월 23일까지 등록한 경우
: 3 개월 이상 대상자.
재외국민주민등록자의 선거인명부 등재 방법

1. 명부등재 순서는 투표구별로

주민등록자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제외 $) \rightarrow$ 재외국민 $($ 재외국인주민등록자 $) \rightarrow$ 외국인 순이여, 재외국민주민등록자는 1 인 1 세대로 등록됨
2. 재외국민거주자가 세대주인 경우, 명부의 주민등록자란에는 차순위 세대원이 세대주로 표기됨

## II.읍면동 담당자

## 17. 9311. 선거인파알 작넝 - 기크사항조여






## II. 읍면동 담당자

## 17. 선거인파일 직성 - 기토ㅅㅏㅏ항 있력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공직선거 업무편람]

## II.읍면동 담당자

## 17. 선거인파열 직성- 투표구사항 인젹







## II.읍면동 담망자

## 17. 선거인파윰 직성-두표구간 입릭1







## II. 읍면동 담당자

## 17. 선거인파열 직성-두표구간 임력2







## II.읍면동 담당자

## 17. 선거인파일 직성 - 두표구사항 수정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공직선거 업무편람]

## II.읍면동 담당자

## 17. 선거인파열 직성-적성기준임 수졍 방법



|  |  |  |  |
| :---: | :---: | :---: | :---: |
|  |  |  | वरकी ti |
|  | क) |  | 2e\|TH37 |



|  |  |  |  |
| :---: | :---: | :---: | :---: |
|  |  |  |  |
|  |  |  | ミ2 |





## everfosixamenal

(?) ExTENEA (g) $\approx \mathrm{g}$ ningaum
WTy OM, 048 40

## II.읍면동 담당자

## 17. 선거인파임 작성 - 선거권여는자 선거인 선탐





## II.읍면동 담당자

## 17. 선거인파알 직성 - 주만둥동자 선거권연는자 동득





II.읍면동 담망자
17. 선거인파일 직성 - 주만둥명자 선거권연는자 술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공직선거 업무편람]

## II.읍면동 담망자

## 17. 선거인파일 직성-선거건여는자 명부 술력

## 선거견 없는자 명부 (주면등혹지)

| a) |  | 4 m | \% |  |
| :---: | :---: | :---: | :---: | :---: |
| $\alpha$ 立 | * | Hixamivit |  |  |
| 1484 |  | 7) | 3ข4\% |  |
|  | $1 \cdots$ |  |  |  |

선거권 앖는 자 명부 촐력의 미리보기 화면

## II.읍면동 담망자

## 17. 선거연파열 적성 - 선거권연는자 암팔퐁뮹 1





## II.읍면동 담당자

## 17. 선거인파일 직성 - 선거건연는자 알퓰뭉댈 2



" "파일열기" 버든을 클릭하여 제공된 선거권없는자 대상 엑셀파일을 읽는다.
입력하고자 하는 엑셀파일은 변경사유란이 "삭제"인 대상자를 제외(대상자 줄 삭제)하여야 하며, 엑셀 칼럼을 아래 나열된 칼럼순서대로 조정한 파일이어야 한다.
결격사유조회시스텡 담당자로부터 제공된 엑셀파일을 선택한다.
(읍면동에서 결격사유조회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읍면동 담당자가 엑셀파일을 내려받음)
엑셀 칼럼순서 : 연번, 성영, 주인번호, 거주지, 거주지행정동코드, 거주지행정관서. 선거권없는기간, 공직선거법제 18 조 위반 조항. 변경사유

## II.읍면동 담망자

## 17. 선거인파율 직성 - 선거건연는자 알퓰퐁휵3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공직선거 업무편람]

## II.읍면동 담망자

## 17. 선거인파일 직성-선거건여는자 일퓰퐁대․ 4


 이느 정상 추리올 갖이다.



## II.읍면동 담당자

## 17. 선거인파열 적성 - 선거안셩성1









## II.읍면동 담당자

## 17. 선거인파열 직성 - 선거안셩성2

Vㅏ온ㅁㄴ련퓨




## II.읍면동 담당자

## 17. 선거인파임 작성 - 선거안셩성이 몀훙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공직선거 업무편람]

## II.읍면동 담당자

## 17. 선거인파일 작성 - 누락자 조최







## II.읍면동 담당자

## 17. 선거인파임 작성 - 선거인 누롹자 조혀


 우선 누락된 투표구간이 있는지 학인하여 투표구간 입력을 완료한다.
주민등록자(재외국민주민등록자 제외)인 경우에는 동/반이 미입력된 세대의 자료를 확인하여 "자료관리->직권정리->[5312]세대현주소정리" 업무에서 통/반을 수정한다.
재외국민주민등록자인 경우는 [9308]재외국민주민등록자등록 업무에서 통/반을 수정한다.

## II.읍면동 담당자

## 17. 선거인파일 직성 - 선거인성성의 안료1







## II.읍면동 담당자

## 17. 선거인파일 작성 - 선거인싱성의 안료2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공직선거 업무편람]

## II.읍면동 담망자

## 18, 9312 . 선거인명부직성상병훙브서 - 조화






## II.읍면동 담당자

## 18, 선거인명부작성상형풍부서 - 작성



 누락자 조치 추 선거인생성을 다시 한다

- 인구수동일여부가 "불일치"일 경우: (1) 또는 (2)로 조치
(1) [5410] 관내현황작성 업무에서 "작성"버튼을 눌러 관내현황을 재작성 한 후 선거인생성을 다시 한다.
(2) [9308]재외국민주인등록자등륵 업무에 누락자 또는 전출자가 있는 지 개인별명부와 비교확인하여 수정조치한 후 선거인생성을 다시 한다.
시.군.구 담당자는 "전체읍면동선거인명부작성상황조회"버튼으로 관할 읍.면.동의 명부작성상황을 일괄 점검한다. 또한 RIUS ->동계->300 선거관련보고->340 선거인명부작성상황동보서_외국인포함 작성상황집계가 가능하다.


## II.읍면동 담당자

## 18. 선거인명부작성상황통보서 - 반드시 숙지 필요


(1) 선거인명부생성 완료 후 작성상황 통보서가 정상적으로 작성완료(아래와 같은 결과) 이후

9311.선거인명부작성 메뉴에서 영부재작성을 시도할 경우 왼쪽과 같은 메시지가 출력
(2) 시군구 담당자는 9303. 선거인명 부작성현황관리(시군구용) 메뉴에서 재작성을 해야 하는 읍면동을 체크 후 명부 작성 승인 버튼을 클릭한다.

반드시 시군구 당당자의 승인이 있어 야 재작성을 할 수 있다!!!!


## II.읍면동 담당자

## 18. 선거인명부작성상황통보서 - 출력

## 선거인명부 작성상황통보서

션 거 명 : 괗역자치단체장선거

| 행정 기관 : | $\begin{aligned} & \text { 융삼휼포 } \\ & \hline \end{aligned}$ |  |  |  |  | 페 이지 | : 1 |
| :---: | :---: | :---: | :---: | :---: | :---: | :---: | :---: |
| 두표구명 |  | 선거인명부의 등죠뮬 선거인수 |  |  | 인구수예미한 선거인수비욜 <br> (\%) | 세마수 | 비고 |
|  |  | 계 | 4 | 여 |  |  |  |
| 机 1 토푸 | ${ }_{(885 j}^{6.594}$ | $\begin{aligned} & 6.157 \\ & (736 / \quad 1) \end{aligned}$ | ${ }_{(365)^{3.141}}$ | $\begin{array}{r} 3.018 \\ (371 / 1 \end{array}$ | $\begin{gathered} 93.37 \\ (83.16 / \quad 100) \end{gathered}$ | $\begin{aligned} & 3.703 \\ & (736 / \end{aligned}$ |  |
| 水 2 투ㅍㅛㅜ | ${ }_{\left(246 / /^{3.512}\right.}$ | $\left.{ }_{(237 /}^{3.399} 0\right)$ | $\left.{ }_{(121 / 7}^{1.770} 0\right)$ | $\begin{array}{r} 1.629 \\ (116 \% \end{array}$ | $\begin{array}{cc} 96.78 \\ (96.34 / & 0) \end{array}$ | $\left.{ }_{(237 /}^{1.962} 0\right)$ |  |
| ㄷ 계 | $\begin{gathered} 10.106 \\ (1.131 / 8) \end{gathered}$ | $\begin{array}{ll} 9.556 \\ (973 / & 1) \end{array}$ | ${ }_{(486 /}^{4.911}$ | $\begin{array}{r} 4.845 \\ (487 / 0) \end{array}$ | $\begin{gathered} 94.56 \\ (86.03 / 100) \end{gathered}$ | $\begin{gathered} 5.685 \\ (973 / \quad 1) \end{gathered}$ |  |

울력버튼을 클릭하여 선거인명부 작성상황동보서를 출력한다.
출력물 왼쪽 상단에 선거영이 표기된다.
웟 줄의 선거인수는 전체 선거인수이고 ()안의 숫자는 다음과 같이 표기된다.

- 전국동시지방선거인 경우: (재외국민주민등록자수 / 외국인수)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공직선거 업무편람


## II. 읍면동 담당자

## 19. 선거인명부 술력-선거인명부 조회





## II.읍면동 담당자

## 19. 선거인명부 술렴-A4융지 셜력

|  | $\uparrow \quad 4$ | ${ }_{9}^{4}$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x ) | (14) |  |
| 4 |  | $*$ | $v$ | 14.14 | $*$ |  |  |  |
| 2 |  <br>  | $*$ | 4 | " ix | $\pi$ |  |  |  |
| 1 | *VM | $*$ | v | 7 ${ }^{4}$ | $*$ |  |  |  |
| 4 | $\operatorname{pin}_{\sin }^{102}$ | $\pm$ | $v$ | * in | * |  |  |  |
| 4 |  | * | $\checkmark$ | " a | $*$ |  |  |  |
| 1 |  |  | $v$ | i ${ }^{\text {a }}$ | * |  |  |  |
| $\rangle$ |  | $*$ | v | " $\quad$ \% | * |  |  |  |
| 4 |  | * | $\pm$ | " ${ }^{\text {H }}$ | $\cdots$ |  |  |  |
| 1 | (6ロ) | $*$ | v | $\cdots$ | * |  |  |  |
| 4 |  |  | v | 40 | * |  |  |  |

앙단의 프린터(촉력) 아이론을 이용하여 출력한다. (한 페이지에 10명씩 인쇄)
ㅇ하단의 \%와 Page 1 of 478 는 쳥력할 폐이지를 의미한다. 화면 맨 하단 좌축의 $\%$ 가 $100 \%$ 까지 진행 욈 때까지 기다린 후 촐력 작업을 한다.
주린등록자(재외국민제외), 재외국민(재외국민주민등륵자), 외국인 순으로 출력된다.


## II．읍면동 담당자

## 19．선거인명부 술력－기타도벗（연령별 등제인구）술력

선거인 연렴협 영 황

| 7 F | 13／67 | \＃17 | \＃$\quad$ \％ | 134 | 20－28．4 | $20-33 N$ | $40-43.4$ | 90 +354 | 60－－354 | 7090 0618 | ili al |
| :---: | :---: | :---: | :---: | :---: | :---: | :---: | :---: | :---: | :---: | :---: | :---: |
| E＊ | － | ＋ | 7，550 | 12 | 734 | 145 | 1，106 | 1，2112 | 1,442 | 7，564 |  |
|  | いでき | bits | 3．853 | 50 | 458 | 499 | 651 | 927 | 681 | 567 |  |
|  | ப1ㄱㅜㅢ | 여지 | 3，661 | 33 | 320 | 261 | 447 | 392 | 760 | 953 |  |
|  | ए¢श习 | 남ㄱ | 14 | 0 | 4 | 2 | 5 | 1 | 1 | 1 |  |
|  | 주ㅇㅚㅚ구민 | 역 | 18 | 0 | 148 | 2 | 3 | 2 | 0 | ${ }^{\circ}$ |  |
| 人 3 |  | 난ㄱ | 19 | 0 | 1 | 1 | 0 | 0 | 0 | 17 |  |
| 人 3 | 钟》21 | （1）${ }^{\text {a }}$ | 5 | 0 | 0 | 1 | 0 | 0 | 0 | 4 |  |
| 1 푸표구 | （1）${ }^{\text {a }}$ | 㪾乐 | 2，424 | 38 | 307 | 329 | 381 | 601 | 432 | 336 |  |
| 1早鳥구 | पマイ | 여지 | 2，343 | 27 | 221 | 170 | 286 | 589 | 491 | 559 |  |
| 1 투표구 | ㅈㅗㅚㅚㄹㅂㅣ | 낭ㅈ | 4 | 0 | 1 | 2 | 1 | 0 | 0 | $\bigcirc$ |  |
| 1 早표구 | 푸와ํㅁㅣㅣ | 역 | 2 | 0 | 0 | 0 | 2 | 0 | 0 | 0 |  |
| 1 早豆구 |  | 낭ㄱ | 2 | 0 | 1 | 0 | 0 | 0 | 0 | 1 |  |
| 1 果표구 |  | Of及 | 3 | 0 | 0 | 1 | 0 | 0 | 0 | 2 |  |
| 2 年両구 | 내구의 | 난ㄱ | 388 | 3 | 26 | 43 | 72 | 79 | 68 | 77 |  |
| 2 早표구 | प429 | 애고 | 390 | 1 | 22 | 18 | 35 | 72 | 89 | 153 |  |

쳐오고영조

매이이제 ： 1
○＂기타훙보서촐력＂버튼에서 기타롱보서 $\rightarrow>$ 혈력 $(Y)$ 을 섯택하면 선거인 연령별 현황이 워와 갑이 출력된다．
（1）＂기타통보서촉혁＂버튼에서 기타종보서 $\rightarrow>$ 옉셀 $(Z)$ 을 선택하면 엑셀파일 형식으로 만들어 진다．
$\bigcirc$ ㅅ⒈곡구 담당자는 RIUS $\rightarrow$ 뽕계 $\rightarrow 300$ 서거판렬보고 $\rightarrow 370$ 서거인영부기타통보서＿외국인포항에서 기타통보서 집 계가 가능하다．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공직선거 업무편람]

## II.읍면동 담망자

## 20. 9321 거소후표신고서 접수-인렴1






## II.읍면동 담망자

## 20. 거소푸표신교서 접수 - 입력2



[^3]
## II.읍면동 담당자

## 20. 거ㅅㅓㅜㅜ표신교서 접수 - 인릭2(도료명주소)





## II.읍면동 담망자

## 20. 거ㅅㅗㅜㅜ표신교서 접수 - 인락2(도려명주소)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공직선거 업무편람]

## II.읍면동 담당자

## 20. 거소푸표신교서 접수 - 거소주소 입력







## II.읍면동 담당자

## 20. 거소푸표신교서 접수-동몽






## II.읍면동 담당자

## 20. 거소푸표신고서 질수-주의사항1

거소투표신고서 접수 시 "비거주돔재자" 메시지발생 시 조치방ㅂㅂㅂ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5월 22일) 명부생성 시 명부에서 등재되지 않은 경우이며, 아래 3 가지 사항 중 하나이므로 다음을 참조한다.

1) 만19세 미만인 자
2) 선거권없는자
3) 본 명부 작성일 (5월 22일) 이후 전입자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자라도 거소투표접수 신고서가 접수된 경우(우편물을 반송한 경우 제외), [9321.거소투표신고서접수]에서 신고서 내용 그대로 둥록해야 한다.
(유효한 거소투표신고서로 처리되지 않으며,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도 등재되지 않음)

## II.읍면동 담당자

## 20. 거소투표신고서 접수 - 주이사항 2

*r 거소투표신고서 접수 시 선거연명부에 미 픙재된 자 입릭하는 방법
선거인파일 작성기준일 이전예 벌소횐 댜삼지가 선거연명부에 둥챙기 안된 상태애서 거소투표 신교접수 를 하였을 경우 (단,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말소자인 경우로 가정하여)

1) 작성기준일자의 주소지에 재등록한다.
2) [9341. 선거인명부 열람] 업무에서 "직권정정" 작업을 선택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 시킨다. 이때, 거소투표신고서를 이미 접수했으면 선거인명부 등재 전 입력한 거소투표신고서 내역을 먼저 삭제한다.
3) 본 명부 작성시 출력한 선거인 명부에 수기로 등재 시킨다.
4) [9321.거소투표 신고서 접수] 업무에서 거소투표 신고내역을 입력한다.
5) 거소투표신고서 입력 마감 후 [9312.선거인명부작성통보서] 업무에서 "작성" 버튼을 이용하여 통보서를 재 작성한다. 이때, 선거인명부작성기간( '18.5.22.~5.26.)에만 작성한다.
재 작성하지 않으면 각종 통보서(거소투표신고인명부확정상황통보서, 선거인명부확정상황통보서)에 선거인 수가 증가하지 않는다.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공직선거 업무편람 ]






## II.읍면동 담당자

## 21. 거소후표신고서쩝수부-여력



0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으로 도로명주소만 표기된다.(단 도로명 주소가 없을 시 지번주소 표기)
울력버튼을 누르면 위와 같이 미리보기 화면이 나타난다.
A4 용지 촐력만 가능하고 한 페이지에 8 명씩 출력된다.

## II.읍면동 담망자

## 21. 거소투표신고서쩝수부-창도사항

ve 부등재 거소투표 듁정대상자 접수내역 혁인방법

부둥재거소투표자란?
우리 읍면동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거소투표신고서가 접수되어 단순 접수 입력만 한 대상자

거소투표신고서 접수 입력 후, 위의 대상자를 찾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성명만 알고 입력한 주민등록번호(주로 생년월일+성별+000000)를 모르는 경우

1) [9322.거소투표신고서접수부] 업무에서 조회 후 조회결과 표의 "투표구" 타이틀을 클릭 하여 투표구별로 정렬한다.
2) 상단에 조회되는 대상자들로 투표구와 등재번호가 공란으로 조회되는 대상자들이 "부등재 거소투표자"이므로, 특정대상자 성명이 해당자들 중에 존재하는지 확인하여 성명 옆 주민 등록번호를 확인해둔다.
3) [9321.거소투표신고서접수] 업무에서 2번에서 확인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조회조건에 입력 후 조회한다.

## II.읍면동 담망자

## 22. 9325 거소 - 선상후표신고인밍부-조회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공직선거 업무편람 ]

## 11.읍면동 담망자

22. 거소투표신고인명부 - 수ㄹㅕㅕ


출력버튼을 누르면 위와 같이 미리보기 화면이 출력이 된다.
거소투표 신고인명부는 A 4 용지 출력만 가능하고 한 페이지에 9 명씩 출력된다.

## II.읍면동 담당자

22. 거ㅅㅗㅜㅜ표신고인명부-접수내역조혀1



## II.읍면동 담당자

## 22. 거ㅅㅗㅜㅜ표신교인명부-집수내역조여2

## 거소투표신고서 접수내역



○ 출력버튼을 누르면 위와 같이 미리보기 화면이 출력이 된다.

## II.읍면동 담항자

## 22. 거소푸표신교인명부 - 집수네역건수 오륭 왁인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공직선거 업무편람 ]

## II. 읍면동 담당자

## 23. 9326. 거소 • 선상두표신교일명부 확정샹징둥보서-거소푸표







## II.읍면동 담당자

## 23. 거소 - 선상무표신교인명부 확정상앙동보서 - 술혁

거소투표신고인명노확징상영동보서
हाषया क्षत्र



"출력" 버튼을 누르면 위와 같이 미리 보기 화면이 표시되고 프린터 아이콘을 누르면 출력된다.
ㅇ윗 줄의 선거인수는 전체 선거인수이고 ()안의 숫자는

-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인 경우 : (재외국민/외국인수)
-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인 경우 : (재외국민수) 로 표기됨 $\%$ 재외국민수 $=$ 재외국민주민등록자수
II.읍면동 담당자

24. 9331.선관위옹파임작성 - 조화 및 파임직성

0 Vㅜㅇ연련표






## II. 읍면동 담당자

## 25. 9332 . 후보자웅파일직성 - 조회 밎 파임직성



[^4]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공직선거 업무편람

| II.읍면동 담당자 |  |  |
| :---: | :---: | :---: |
| 참고. 선거인 앙부의 수정 |  |  |
| 선거인영후 작성기간 (5/22-5/26) | 선거인명부 녁정 이전 ( $5 / 27 \sim 6 / 1$ ) | 선거인명부 촥정 이추 (6/2~) |
| - 명루 수정 불가 <br>  에 의거) <br> - 단, 행정기관의 착오에 의하여 누 락된 자가 거소투표신고를 하였을 경 우 등재 위해 명부 수정 가능 vo [9341.선거인명부열람] 업무에서 '직권정정' 으로 추가 등재 <br> - 명부 등재 즉시 혹은 $5 / 26$ 일 까지 vas [9312. 선거인명부작성상황통보서] 재작성 | - 이의산칭, 룰록선청에 믜한 수정 ~ 59341 . 선거인명부얼림] 업무에서 '이의신청' 혹은 '불복신청' 으로 수정 <br> - 명부누락자의 구제에 의한 수정 us [9341.선거인명부열람] 업무에서 '직권정정' 으로 결정사항을 등재로 하여 수정 <br> - 오기, 선거권없는자, 사망자가 있는 경우 수정 <br> 40341. 선거인명부열람] 업무에서 <br> '직권정정' 으로 결정사항을 삭제로 하여 수정 <br> - 명부 확정(6/1) 후 <br> 저 [9351. 선거인명부확정상황통보서] 작성 <br> 자「선거인명부수정상황통보서」수기 통보 | - 중앙선거뤌리뮈욜회에시 충ㅎㄹㄹ 선거언명부를 착성하브로 천산처 리는 하지 않음 <br> - 사망자, 선거권없는자, 오기된 자 등은 제7호 서식 (나)에 의하여 통보 <br> 사전투표소 투표 종료 후 선관 위시스템에서 사전투표정보를 반 영한 선거인명부 출력 후의 소정 사함은 명부 비고란에 기재 |

## II. 읍면동 담당자

### 26.9341.선거인명뿌열람-얼무선턱


 ल듁 t



## 11.읍면동 답망자

## 26. 선거인명부열람 - 추개




II.읍면동 담당자

## 26. 선거인명부열람 - 추기2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공직선거 업무편람 ]

## II.읍면동 답망자

## 26. 선거인명부열람 - 수졍







## II.읍면동 담당자

## 26. 선거인명부염람- 두표구변견1



[^5]
## II.읍면동 담망자

## 26. 선거인명부염람- 루표구변경2







## II.읍면동 담망자

## 26. 선거인명부열람-쵝형상벼빔 선거인조혀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공직선거 업무편람]
II.읍면동 담당자

## 26. 선거인명부멸람-성명/주민등목번ㅊ/주소 정졍1









## II.읍면동 담망자

## 26. 선거인명부암람-성명/주민등닥변호/주소 정졍2






## II.읍면동 담망자

## 26. 선거인명부암람-선거인수변둥1

Yyenmexvernmon





## II.읍면동 담당자

## 27. 9351 . 선거인명부학정상할동버서-조회/직성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공직선거 업무편람］

## II．읍면동 담망자

## 27．선거인명부확정상황풍토서－불렴

|  |  |  |  |  |  |  |  |  |  |  | Canty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亲数县等 H？Nス <br>  |  |  |  |  |  |  |  |  |  | 018 ${ }^{\text {a }}$ |
|  |  |  |  |  |  <br>  |  |  |  |  |  | $46+$ | if 2 |
|  |  |  | \％ | n | a |  |  |  |  |  |  |
| 01587 | $*$ | Amily |  | 青激， | $1 x_{1}$ | $\cos ^{2} 8$ | $1 x^{8} 31$ | $\begin{aligned} & \text { ㅌ.1ㅁ․ } \\ & \hline \end{aligned}$ | $1 x^{\prime} 18$ | $\left(\begin{array}{c} E \\ (x) \end{array}\right.$ |  | $1 \stackrel{2 \times 00}{120}$ |  |
|  | ir | 20x＋1 | 210 |  | nis | $11^{181}$ | $\begin{aligned} & 2.141 \\ & \hline 18 \end{aligned}$ | $1+1$ | $\frac{181}{181}$ |  |  |  |
|  | 5 |  | 3 chi | $\square_{5}$ | $5^{4} 8$ | 1835 |  | $15^{4}$ | $\sqrt{11^{9}}$ |  |  |  |
| 18589 | 0 | $3+5 \pi$ | $430$ | $x_{1}^{2}$ | $2^{4}=$ | $4 x^{3}+1$ | $\begin{aligned} & 3301 \\ & +3 \times 15 \\ & \hline \end{aligned}$ | $188$ | $4 x_{2}^{2}$ | $\begin{aligned} & \text { Is } 5 \\ & i n+3 y \\ & \hline \end{aligned}$ |  |  |
|  | 17 | 4109 | LTM | Lis） | 4831 | $\operatorname{cas}^{3} 8$ | $3179$ | $14^{6} 8$ | $\operatorname{csicil}^{\text {a }}$ | andes |  |  |
|  | 5 | $\begin{array}{r} \hline 5 \pi 3 \\ \hline \end{array}$ | ！ |  | $3$ | $+3$ | $159$ | $i \%_{1}$ | $3$ | $\begin{aligned} & x_{0}^{5} \\ & i 0^{2} \end{aligned}$ |  |  |
| \％＊ | ＊ | ＋15．108／ | $48$ | $3^{3}+1$ | $10^{2}$ | $98$ |  | $121$ | $\frac{8}{2}=$ | $34.56$ | $\begin{array}{\|l\|} \hline \text { Nis } \\ \text { ingin } \\ \hline \end{array}$ |  |
|  | 4 | fint |  | （18） | （4）3 | $\operatorname{la}_{181}$ |  | 14it | $418$ | $=\begin{aligned} & 21.51 \\ & \hline 10 \end{aligned}$ |  |  |
|  | B |  | $\begin{aligned} & 2.845 \\ & 10 n \\ & \hline 10 \end{aligned}$ | $11^{3} 12$ | 1818 | $18^{3}+1$ |  | $23811$ | $6 x_{18}^{4}$ |  |  |  |

＂촐력＂버든을 클릭하여 선거인명부 확정상황동보서를 촐력한다．
윗 줄의 선거인수는 전체 선거인수이고（）안의 숫자는（재외국민주민등록자수／외국인수）로 표기됨
주민등록자의 세대수는 작성상황통보서의 세대수와 동일함
재외국민주민등록자 및 외국인의 세대수는 학정된 선거인수의 1 인 1 세대로 변경되어 집계됨

## II．읍면동 담당자

## 28． 9342 ．우팬밤송물주소조회－우핀번호견리







## II.읍면동 담당자

## 28. 우편빌송둘주소조혀 -세매주구한정합성셉








## II.읍면동 담당자

## 28, 우편밤성두주소조회 - 세때주구만정합성체브 오류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공직선거 업무편람]

## II. 읍면동 담당자

## 28. 우편발송달주소조현 - 세대수현항







## [II]선거업무 전산처리 요령

## II.읍면동 담당자

30. 주의사할


애바선거인명부 직성일애는 반드서 모든 옵,은 중예서 선거인명부률 완벽하개 적섬해야 하며,


주택명칭.층.호수(기타주소)가 투표안내문 주소에 포함되어 출력되므로 선거인명부작성( $5 / 22$ )전까지
기타주소 내에 오류자료(주소정보가 아닌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는 자료)는 미리 정비해야 한다. (교재내 기타주소정비 참고)
$\bigcirc$ 예비선거인명부 작성일과 선거인본명부 작성일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작업을 한다.

1. [9300.주민오류자조회] 업무에서 오류 자료 조회 및 자료 보정
2. [5410.관내현황작성] 업무에서 작업일자의 관내현황을 작성하여 총 인구수 확인
3. [9307.외국인선거인등록],[9308.재외국민주민등록자등록]에서 등록여부 확인.

예비선거인명부 작성 시 등록했을 경우, 선거인 본 명부 작성시에는 변동된 자료만 보정
4. [9311.선거인파일작성] 업무에서 선거인명부 작성
5. [9312. 선거인명부작성상황통보서] 업무에서 선거인명부작성상황통보서 작성
6. 관내현황 총 인구수와 선거인명부작성상황통보서의 총 인구수가 같고 누락자가 없는지 확인
7. [9313.선거인명부출력] 업무에서 기타통보서와 선거인명부 출력
※ 예비선거인명부 작성 시 출력한 선거인명부는 대사완료 후 파기하여 본 명부 작성 후의 선거인명부와 섞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 재외국민주민등록자에 대한 3 개월 미만(주민등록표 등재) 학인이 중요함

1. 등록구분이 거주자,국외이주신고자가 재외국민 출국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3 개월 이상으로 체크함.
2. 재등록 및 신규등록으로 등록구분이 재외국민 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재등록 및 신규등록 된 날짜부터 선거인 명부 작성일까지 3 개월 미만 여부를 확인 후 체크해야 함.

## 감사합니다

주민둥록.인감.서명 공둥 학습방
(http://10.51.21.13)
r선거업무 $\rightarrow$ Q\&A, 자료실」
FAX : 02)2100-3728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공직선거 업무편람 $]$

## 질의응답

# III <br> <br> 사건•사고 사례 및 <br> <br> 사건•사고 사례 및 <br> <br> 예방대책 

 <br> <br> 예방대책}


1. 최근 선거경향
2. 주요 사건-사고 사례
3. 분야별 사건•사고 사례
4. 이번 선거에서 달라지는 점


## 사건 - 사고 사례 밌 예방대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공직선거 업무편람]

죄른 선거명양
> 유권자, 정당 - 후보자 등의 기대치 상승
$>$ 절차적 공정성 - 투명성 요구
$>$ 일부 지역의 사안을 쟁점화, 전국적 - 파급
> SNS는 문제를 확대 재생산하는 최고의 무기
$\rightarrow$ 다수의 관심유도, 사실관계 확인 없이 우선 전파

## 주요 사건-Nㅏㄱㅗ 사례


(4) 민주주의 꽃은 썬규입니다 응,

선거공브 누릭발 응 살⼰ [2010년]

vatinetmin


## 션거공보 누릭발영 사례 [2010년]

 (언른 보도내영)


 -










I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공직선거 업무편람]


## 투표소 변경의옥 폐기 [2011년] 

> "투표소 변켱 "보이지 않는 손' 있다"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겨(투표소 찾기 서비스 장에)
- 투표소 변경 의혹 제기 및 논란 확산
- 경찰, 겸찰 수사, 특겸 도입
- 선관위 직원, 동 위원, 관사, 서기, 투표꽌리관 조사
* 푸표소 선정 서류(사용숭낙서, 변경사유, 뫼의를 퓸) 작성 보관 부실



## 투표악 미동인 논란 [2012년] 

> 투표함 이숭 훙 바펴 치기 흈나?

- 강남을 투표함 봉함 - 봉인 누락
- 개표중단 항의 농성, SNS 의혹확산
- 증거보전 신청, 선거무효소송
- 관련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징게
* 매뉴얼에 의한 절차 미 준수(방심)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공직선거 업무편람]

기 표 부벵 는랄 [2012년]
$>$ 투표륵 잔오오루
$\checkmark$ 투표응지교부수 게산작오
$\rightarrow$ 투표융지교부수 < 투표자수(유령표)
$\checkmark$ 참관인 근무시간 기재착오 $\rightarrow$ 투표함 투표소에 있는 시각, 개표시직



## N선투표 의옥쎠기［2014년］ 

＜작ㄹㄹㄹ＞＞사전算語 하지마세욮
사전笪표재는 천구곽지 어다서나


이혈의 줄븐 전록어디서튼 표 만흘수있고 조작표도 만헵어녀부 았는 거죠．
 만훌어녕수있다늘거죠．

계다가 미리투패탄 표가 우뼝줄 홍해서 개프녕 이탕한다층뎨
 헤도 알아녈수가 gㅕㄹ을니다．．

이거 주변에 꽉 홉 알려주생요
폄） 6.4 사전루표 하지 마세요
 YeJeqOCpri

Nㅏ썬투표 의 욱폑］［2014년］


## SNS 기담（사전투표 하지 마세요）

－사전투표 조작 가능 의혹 제기
－선거일투표소에서 사전투표 미실시 주장，이중투표 의혹 졔기
－신분확인（동명이인 포함）및 투표용지 교부 착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공직선거 업무편람]


## 사선 투표 용 끼 의 욱패기 [2017년] 

## 여백없는 사전투표용지 SNS 괴담

## 선관위 "여백없는 투표용지는 가짜 뉴스"



인터넷에 '투표용지 두 종류' 괴답… 허위사실 유포 혈의 등 11 명 고발





```
    > 의효ᄀ제기(이ᄂ터녀ᄉ, 모바이ᄅ 휴ᄋ)
    \SNS류ᄋ요ᄋ 듀ᄋ하ᄂ 그ᄇ소ᄀ하ᄂ 화ᄀ사ᄂ
    > 저ᄋ치궈ᄂ 개이ᄇ
> 소소ᄋ제기
```

    신뢰저하
    
## 분야별 사건 - Nㅏㄱㅗ Nㅏㄹㅖ

8 민주주의 꽃은 썬귝입니다 응

## 선거인명부

Ces
twheamun
$>$ 선거권이 있는 자 누락

- 선거당일 투표수에서 자신이 선거견이 있음에도 명부에 누락, 참정권 침해 항의
> 선거인명부 편철 부실
- 투표소에서 본인확인 중 명부의 내지 1 매가 누락도어 있는 것을 발견, 선거인과 참관인이 부정선거라 항의

선거인형부
> 선거인명부, 투표안내문 투표구 구룬 오류

- 선거인명부에 투표구 관할구역 착오 작성
- 투표안내문에 관할구역(1푱)을 바꿔(1투 $\rightarrow 2$ 투) 작성 - 발송
* (원인) 선거경험 없는 명부작성궁무원의 착오.



## 선거인명부

$>$ 2013. 10. 20. 민주당은 국회에서
"투표권 없는 서청원후보, 후보 나설 자격 없다" 선거인명부 누락에 대해 현안 브리팡
[화겅시갑 국회의원보깁선거(2013. 10. 30.)]
처 리 : 명부 작성과정의 행정착오에 의해 발생 명부누락자 구제절차에 따라 둥재

선기인명부
> 부재자신고서 보관 •관리 부주의

- 동 주민센더에서 부제자신고서(현, 거소투표신고서)를 전산입력 도중 입력담망자가 임시직원에게
"신고서를 갈라라" $\rightarrow$ "신고서를 갈아배려라" 로 이헤
- 파쇄기로 신고서 66 매를 파쇄
* 둥기우편 접수 신고서를 우체국에 확인하여 둥재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공직선거 업무편람]
선거벽보
> 선거벽보 첩부 오류
- 특정 후보자 선거벽보 첩부 누락, 기호순 투입 착오
- 특정 후보자 선거벽보를 몰수 없도록 가로수 뒤편 게시
- 차도 쪽에서만 몸 수 있도록 부착
> 선거벽보 분실
- 후보자가 제츨한 벽보를 책상 위에 두었다가 자리를 비윤 사이 분실

선거벽보



## 선거벽보




선거벽보
> 선거벽보 첩부로 인한 건둘벽면 웨손

- 아파트 백면에 풀칠로 벽보 첨부, 관리인이 철거요구
- 비닐 벽보판을 건물담벽에 게시하기 위혜 못을 박아 담벽 훼손, 톄이프 부작 흔적 $\rightarrow$ 원상목구 요구
* 원상복구 소요비용 600 만원 지급 후 합의


## 선거공보

> 선거굥보 수량 미확인 접수

- 선거공보 발송작업 중 甲후보의 공보 500 매 부족 발견
- 추가졔출 요구하자 "동위원회가 분실하였다." 항의
* 타 동 잔량 조사 후 해당 동 숭부, 발숭안료
$>$ 화재로 보관중인 선거강보 소실
- 셰 후보자 공보(전부 또는 일부)
* 추가 인쇄 제출


## 선너공보

$>$ 투표안내문 발송작업 소흘로 다량 반송

- 발송 작업시 창뭉투 주소 기재면 거꾸로 투입
* 관할 우체국장 협조로 신속이 재발숭
> 직전선거의 투표안내문 출력•발숭
- 착오로 직전선거 투표안내문 출력프로그롐 사용
- 츨력 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발송
* 위원장 사과문 둥봉, 투표안내문 재발숭




## 투퓨관리

> 투표사무원이 잔여투표융지 투표함에 임의 투입

- 선거별 투표용지 교부매수를 맞주기 위헤 기표뫼ㅈㅣㅣ 않은 일부 선거 잔여투표용지(9매) 투표함 투입
$\rightarrow$ 타 투표사무원 신고, 기소, 1 - 2심 집행유예(ช고피갲ళㅇ),

* (원인) 투표사무원의 안이한 업무처리, 교욕 소흘 둥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공직선거 업무편람］


## 투표관리

Cl


## ＞투표함 붕쇄 • 봉인 누락

－국회의원선거 개표시 000 후보 개표참관인 측이 개함과정에서 봉함－봉인 누락 투표함 발견，이의제기
$\rightarrow$ 개표중단 요구，농성 항의집회，국회 진상규명， 선거무효 소송 제기（기각）
－유명인 투표장면 언론보도 시 투표함 미봉인 영상 방숭
＊（원인）교요 소⿱⿱亠䒑日日十，투표관리관의 업무처리 미숙 둥

투표관리

## 투표관리


> 투표관리관 지각으로 인한 투표개시 지연

- 투표지가 들어있는 투표함 열쇠 휴매한 투표관리관 지각
* 자물쇠를 부순 후 투표 개시
> 투표지 보관금고 열쇠 분실로 투표개시 지연
- 면위원회에서 투표관리관 인게 시 문제발생
- 06:20 군위원회에서 무번호투표용지로 투표게시
* 06:45경 포크레인 둥원 금고 ㄱㅐㅏㅏㅇ 후 투표융지 배부

투표관리
> 투표개시 직전 정전

- 지하1증 투표소에서 개시직전 전기고장 정전
* 양초 등을 이용 투표진행 후 신속히 복구
> 투표관리관의 부주의로 투표융지 오손
- 커피잔을 잎질러 투표용지 150 매 정도 오손
* 오손된 투표융지는 잔여투표웅지로 처리


## 투표관리


> 기표소에 남겨진 투표지를 투표간리관이 임의투입

- 투표관리관이 기표소 안에 남겨진 투표지 1 매 발견
- 투표소 안이 소란스러운 틈을 이용, 투표함 투입
- 이를 목격한 투표잠관인이 이의졔기
$\rightarrow$ (처리절차) 공개된 투표지로 처리, 투표록예 기재
* 선거 후 귱무원의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기소


## 투표관리

> 선거인이 투표개시 및 마감 시 간여

- 투표짐관인이 정상적으로 출석하였음에도
- 선거인이 붑밀요하께 투표함 및 기표소 겸사 둥
> 투표마감 시각전의 투표종료
- 선거인수가 적은 투표소, 17 시경 투표마감
- 투표함 회숭준비 중 참관인 이의제기


## 투표관리

> 투표융지 교부수 취합 보고 시 1 개 투표소 누락

- 투표용지 교부수 2,720 매 누락
- SNS 둥에서 부정선거 의혹 졔기
> 잠정투표자수 착오 보고
- 잠정투표잣 $1,657,753$, 투표수 $1,657,821$ ( 68 표 증가)
> 후보자 사퇴 안내문 첩부 누락
- 일부 투표소 미 첩부(상대후보자 이의졔기 후 첩부)


## 투표관리

> 투표소 건물 숭강기 고장

- 여성 선거인 2 명 30 분 갇힘
> 점자형 투표보조영구 비치 착오
- 도의원 $\rightarrow$ 시의원
> 선거법위반 벌금형 투표관리관 깅정성 문제 제기
- 헤당 지병자치단체장을 위한 선거운동 전력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공직선거 업무편람]


> 사런. 사고 예방을 어아여
> 선거관리에 참여하는 공무원의 책임과 의지
$>$ 매뉴얼(사무편람)에 의한 사전 점검-확인
> 지방자치단체와 선관위와의 긴밀한 협조

상호 신뢰 바탕 $\rightarrow$ 원활한 소통!!!

## 이번 선거에서 달라피는 셩

$>$ 투표용지 일련번호 위치 변경(죄측 아단 $\rightarrow$ 우측아단)


〈변경 후〉




## 이번 선거에 $M$ 달라푀늘 성

> 선거인명부 색인부에 둥명이인 표시

- 선거인명부 색인부에 "둥명이인" 란 추가



## 이번 언거에 $M$ 달라피는 셩

$>$ 투표소 내 반려둥룰 출입 제한
-투표소내 반려둥물 동반은 원칙적으로 금지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출입 허융)

- 다만, 질서유지 및 선거인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투표관리관이 예외적으로 허융 가눙
※ 동반이 허용된 경우에도 다른 선거인이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품에 안도록 함(품에 안을 수 없을 정도로 큰 반려동물은 동반불가)




## 안 니 NY 앙

## > 기표대 중류



소형기표대


대형>ㅣ표대

## 안니Nㅘ앙

> 투표함 봉쇄 • 붕인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공직선거 업무편람 ]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공직선거 업무편람 <br> <br> IV <br> <br> IV <br> <br> 공무원의 <br> <br> 공무원의 <br> <br> 선거관여 행위 금지 

 <br> <br> 선거관여 행위 금지}

1．제 7 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일정
2．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등
3．「공직선거법 의 제한•금지규정
4．「정당법•｢정치자금법」의 제한•금지규정
5．중점추진사항 및 협조사항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공직선거 업무편람]

## 4 「정당법」 •정치자금법, 의 제한•금지규정

## 5 중점추진사항 및 협조사항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일정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일정

2018년
2.13.(화)부터 (시 도지사, 교육감선거)
3. 2.(금)부터 (시 도의원, 구 시의원 및 장의 선거)
4. 1.(일)부터 (군의원 및 장의 선거)
5.24. (목) 25. (금) 5.31 . (목)부터 6.8.(금) ~9. (토) 6.13. (수) 오전6시~오우6시



##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등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공직선거 업무편람 $]$

## 공무원 선서

$$
\begin{gathered}
\text {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 \\
\text { 헌 법과 법령 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 \\
\text {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 무를 } \\
\text { 성실히 수행 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
\end{gathered}
$$

##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헌법제7조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무원의 지위
회볍 제41조, 제67조 자유선거의 원칙
헌법 제116조
정당간 군등한 기회보장

##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제한 강화



## $r$ 공직선거법, 규정 신설(2014, 2, 13.)

$>$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률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고,
3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공무원의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묘를 10년으로 연장함.

## 「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규정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공직선거 업무편람]

## r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규정

## 선거중립 의무(제9조)

주 체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 포함)

금 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행 위 미치는 행위

## r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규정

## 선거중립 의무(제9조)

## 입법휘지

- 각급 정부기관이나 공무원이 자신을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세력과 동일시 하거나 일체강을 가지고 톡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편에 서거나 선거에서 유리 또는 룰리하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의 의미
- 공무원어 공직자의 지위에서 행동하면서 공직이 부여하는 영향력을 이용하였다면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형사를 인정할 수 있음.

(헌법재판소 2004. 5. 14. 2004헌나1 결정)

AA

## r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규정

## 선거중립 의무(제9조)

```
하ᄅ 수 이ᄊ느ᄂ 사례
```

- 정당의 대표자 또는 공직선거 후보자 방문시 관례에 따라 수행하거나 현황을 설명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선거와 무관하게 정부의 직무활동에 해당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행사, 도로 개통식,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개관식, 회의 등을 개최하는 행위


## r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규정

## 선거중립 의무(제9조)

현직 장관의 정당 대표자와의 동행 및 특정 정당 지지발언

현직 장관이 소속 정당의 대표자와 함께 자신의 연고지역을 방문하여 기자간담회에서 "OO를 위해 진정으로 일할 수 있는 인재둘을 찾으러 왔다", "OO, $\Delta \triangle$ 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발언을 하고, 당직자 등과 함께 "지방권력 교체하자"는 구오를 제창함
(2006, 2. 22,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쳥)

## r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규정

## 선거중립 의무(제9조)

각 정당의 복지공약 재정소요 검토결과 발표
정부부처가 선거기간 중에 선거에 참여하는 각 정당의 복지공약에 대하 여 재정소요 및 재원조달방안 등을 검토하여 보도자료 및 간부공무원의 인터뷰를 통하여 재원조달방안이 그대로 실현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 가 있으며, 제기된 북지공약을 모두 이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소요률 감 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복지공약 전면이행을 위해서는 추가증세 또는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므로 이는 조세 및 미래세대 부담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고 공표함 (2012, 4. 5.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축구)

## r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규정

## 선거중립 의무(제9조)

기타 할 수 없는 사례

- 공무원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당의 정책 개발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또는 그 정당 소속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정책이나 공약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는 헙약을 체결하는 행위


## r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규정

## 선거운동 금지(제60조)

## 입법 취지

- 공무원이 그 직을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할 경우 자신들의 지위와 권한을 특정 개인을 위한 선거운동에 남용할 소지가 많게 되고, 자신의 선거운동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파적으로 직무를 집행하거나 관련 법규룰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 등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선거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바,
-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이나 이에 준하는 공공단체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선거운동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려는 규정임
(헌법재판소 2008, 4, 24, 2004헌바47 졀정)


## r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규정

## 선거운동 금지(제60조)

## 선기운동을 함 수 엾는 자



3 (1)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공직선거 업무편람]

## 최근 r헌법재판소」 위헌결정

## | 결정주문

- 공직선거법제 60 조제 1 항제 5 호 중 제 53 조제 1 항제 4 호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 부분 및 같은 법 제 255 조제 1 항제 2 호 중 해당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2018. 2. 22. 2015헌바124 결정)
한국침도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은동 허용
= 현법재깐소는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순 워헌 결정 $\Rightarrow$ 선거운동 허용
- 다만, 공직선거법 제 53 조 제 1 항 제 4 호에 해당하는 다른 기관의 상근직원은 여전히 선거운동 제한


## r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규정

## 선거운동 금지(제60조)

## 주체

법 제 60 조제 1 항제 4 호에 규정된 공무원 등

## 선거운동율 할 수 있는 공무원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장•차관, 지방자치단체장 등 다른 정무직 공무원 제외)

-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 국회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 r 고등교육법, 제 14 조제 1 항제 2 항에 따른 교원(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등 r정당법, 제22조제 1 항제 1 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


## r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규정

## 선거운동 금지(제60조)

## 금지행위 $\sim$ 선거운동

## 선거운동

-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올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률 말하며.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선거인의 관점에서 그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함.
" 선거운동의 목적의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정선거예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만한 객관적 사정에 기초하여야 하며.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홥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되, 톡히 선거일이 가까 우면 가까울수톡 특정 선거률 목표로 하는 선거운동임을 쉴게 인정할 수 있음
(대법원 2016, 8, 26, 2015도11812 판결).


## r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규정

## 선거운동 금지(제60조)



[^6]
## r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규정

## 선거운동 금지(제60조)

## 선거구민의 인적사항을 후보자 측에게 제공

동사무소 직원이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00 을 당선되게 핱 목적으로 선거기간 중에 평소 친분이 있는 $\Delta \Delta$ 등 8 명에게 전화하여 ㅁㅁ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부탁하여 58 영의 인적사항을 통보받아 이률 0 O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근무자에게 제공한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됨
(서울지방법원 1999, 10, 28, 99도합851 판결)

## r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규정

## 선거운동 금지(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단체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의 지원 하에 OOO당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전국대의원대회와 소속 단체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000 당을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함
(대법웡 2004, 12, 23, 2004도7101 판결)

## r공직선거법 $\lrcorner$ 의 제한•금지규정

## 선거운동 금지(제60조)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정무직 공무원이 출마 예정인 제자들과 선거홍보용 사진을 찰영하는 행위
- 지방의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선거대책기구에 참여하는 것은 무방하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대책기구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됨.


## r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규정

## 선거운동 금지 (공무원의 SNS 활동시 유의사항)

매신져 프조편로 지지춥보 알리기

## SNS로 퍄정 후보 지지슬 게시

## SNS조 숫처언는 여튼조사 편다 퐁우하기



## 선거 간련 게시쿨에 옹원 4 댓를 뷴농 게시

## r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규정

## 선거관여 금지（법 제85조제1항）

주체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
금 지 $\sim$ 그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행 위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r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규정

## 선거관여 금지（법 제85조제1항）

## ＇직무와 관련하여，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직무와 관련하여＇는 직무룰 집행함에 즈음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는 물론 외견상 그 직무에 관련한 행위에 핀승하여 선거에 영 향을 미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선거구민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함．
（대법원 1969．7．22，69도195판졀）
－＇지위률 이용하여＇라 함은 행위자의 지위로 인하여 특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冂一⿱一一口八과적으로 행할 수 있는 영향력 또는 편익을 이용하는 것이고，구쳬적으로 그 지위에 수반되는 신분상의 지퀴감독권，직무권한，담당사무 등과 관련해서 행위자가 직무를 행하는 사무소 내부 또는 외부의 사람에게 작용하는 것올 포함함．
（헌법재판소 2008，5，29，2006헌마1096 결정）

## r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규정

## 선거관여 금지（법 제85조제2항）

주체 공무원
금지행위 $\sim$ 그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지워를 이용한 것으로 블 수 있는 사례

－공무원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직무상의 지후•명령권，인사권，예산권 등에 근거한 영향 력을 이용하여 공무원이 부하 또는 직무상 관계있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선거에 즈음 하여 특정한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는 경우

## r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규정

## 선거관여 금지（제85조）

## 지방자치단체의 대선공약자료 개발－건의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공약자료 개발－건의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대뽕령선거 공약자료를 개발 하여 각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전달하고 채택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직무 수행을 위한 활동으로 블 수 있으므로 가능
－건의한 공약자료가 톡정 정당•후보자에게 채택된 사실을 알리는 행위
지방자치단제가 건의한 공약자료에 대한 ⿹ㅗㄱ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채택사실을 해당 지자체 훔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보도자료 제공 등 외부에 말리는 경우 공약을 채택한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 정당이나 후보자에계 블리한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불가능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공직선거 업무편람］

## r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규정

## 당내경선운동 금지（제57조의6）

주 체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漛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당의 당내경선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의6 제1항에 불구하고 경선운동을 핱 수 있음．

금지행위 당내경선에서의 경선운동



## r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규정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제86조）

## 정당－후보자의 업적홍보 등 행위（법 제86조제1항）

주 체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원은 제외）， 통，리．반장，주민자치위원，바르게살기운동헙의회•새마을 운동헙의회•한국자유충연맹 상근 임•직원 등

금지행위－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참여，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발표 하는 행위

## r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규정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제86조）

## 入＇엋적＇

＊선거에서 긍정적인 펑가자료가 될 수 있는 일체의 사회적 행위률 말하고， 미담사례를 밭굴 소개하려는 취지였다고 하여 홍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놀 수 없음

> (대법원 1997, 4, 25, 97도320판결)

## ＇선거운동의 기쵝에 참여하거나 그 기쵝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선거운동의 툐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행위 또는 그 계획을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에 관하여 지시，지도하는 행워임
（대법연 2011，2，24，2010도16650판결）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공직선거 업무편람］

## r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규정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제86조）

지방선거에 있어 동장이 선거일 직전에 자신이 관할하는 동［洞］부녀회장 등 10 여 명이 모인 식당에서＂동을 위하여 시장님이 사업비들 많이 지원 하여 주셨다．＂라고 발언하는 등 시장의 업적을 옹보
（대전고법 2002노 785 판결）

## r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규정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제86조）

지방공무원이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인쇄물 배부 등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역지부의 수석부지부장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선거기간 중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를 지원하고 투표를 권유하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내용의 인쇄물 충 50 매를 배부
（대법원 2004도 7100 판결）

## r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규정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제86조)



선거운동의 기획에 잠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지방공무원이 선거에 출마한 현직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후보자의 연설문, 인터뷰자료, 선거공약, 토론회 자료, 보도자료 작성에 관여하거나 선거용 프로필을 작성한 행위는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에 해당
(대볍원 2007, 10. 25. 선고 2007도4069 판결)

## r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규정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제86조)

정당•후보자의 업적홍보 등 행위(법 제86조제1항)
금지행위 = 선거기간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 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공직선거 업무편람]


## r공직선거법 $\lrcorner$ 의 제한•금지규정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제86조)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정상적인 업무 외의 출장으로 법 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명목상 형식상 이나마 당해 공무원 등의 업무와 관련한 출장행위의 외관을 지니고 있음을 전제로, 그 실질에 있어서 통상적인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여야 함
(대법웡 2005, 8. 19. 2005도2690판결)

## r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규정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제86조)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공무윈의 정상적 업무 외의 모든 출장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기간 중'에 그리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고 있음
(헌법재판소 2005, 10, 27, 2004헌바41 결정)

## r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규정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제86조)

정당의 정강•정핵 홍보 등 행위(법 제86조제2항)
주체 지방자치단체장
금지기간 $\sim$ 선거일전 60 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행위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옹보•선전하는 행위 *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예비후보자.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 다만 천재 - 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r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규정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제86조)

정당의 정강-정책 홍보 등 행위(법 제86조제2항)

| 주체 | 지방자치단체장 |
| :---: | :---: |
| 금지기간 $\sim$ | 선거일전 60 일부터 선거일까지 |
| 금지행위 | -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 선출대회를 제외 하고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잭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예비후보자. 후보자가 된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 r공직선거법 $\lrcorner$ 의 제한•금지규정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제86조)

각종 행사 개최•후원(법 제86조제2항)
주 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소속 공무원
금지기간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행위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친원상담 기타 각대홍 행사들 개최하거나 후원
하는 행위

## r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규정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제86조)

## 개최-후원이 가능한 행사

- 법령에 의해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득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 r공직선거법 $\lrcorner$ 의 제한•금지규정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제86조）

## 개최•후원이 가능한 행사

－주민자치샌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제외
－국가유공자위령제，국경일의 기념식，${ }^{r}$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시행 되는 기념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읍－면－동 이상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고유축제률 개최 • 후원하는 행위

## r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규정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제86조）

## ＇법령에 의한 행위＇의 운용

－어버이날（5．8．），노인의 날（10．2．），경로의 달（매년 10월）
3 「노인녹지법，제6조（노인의 날 등）및 동밥시행령 제 11 조（노연의 놀 등의 영사）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개최
8 중앙정부가 수랍시달한 지침 범워 안에서 칙사기념품 제곰 가늠
2 중앙정부가 수립시달한 「어버이날 행사 및 포상계회」범위 안에서 소외계등 노인에게 위문풓 제공 가능
3 지방자치단체 개최 및 민간단체 개최 모두 가능
－어린이날（5．5．），어린이주간（5．1．～5．7．）
3 「아동복지법，제6조（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및 「각종 기道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상적인 기넘행사 밋 부수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가능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공직선거 업무편람 ］

## r공직선거법 $\lrcorner$ 의 제한•금지규정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제86조）

## ＇법령에 의한 행위＇의 운용

－산림청장이 r산림기본법，제4조 및 제 11 조에 근거하여 수립•시행하는＂기본시책＂
3 지역득성을 고려한 지역산림계여 수딥（지방자치단제）
8 식목일（4，5．）의＂내 나무 갓기 챔페엉＂행사
＊문화체육관광부가 시달한 r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 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무료 영화 상영 또는 무료 음악회
－국가보훈처가 수립－시달한 「지방자치단체 보훈예우시책 추진지침」의 범위에서 창전유공자 및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전적지 순례사업

## r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규정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제86조）

## 특정일•특정시기의 개최 관련 행사의 운용

3 구시군（읍 면 동）민의 날 행사의 경우，오래 전부터 그시기에 개최하여 온 행사
3 항교의 석전행사는 전국 230 여 개 향교가 5 열에 동시에 개최
홍산물의 개화 파종 생귝조절 동에 시기적 제한이 많은 화초류 농산물 박감회

## 각종 기념일 행사의 개최－후원

예비군의 날（4욜 젓째 금요일），식목일（4．5），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녕일 （4．13．），4．19힘명기녕일（4，19．），장애인의 날（4，20），근로자의 날（5，1．）， 어련이녈 $(5,5)$ ），어버이닐 $(5,8$.

## r공직선거법 $\_$의 제한•금지규정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제86조)

## 사회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보조금 지급

-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Rightarrow r$ 공직선거법, 제 86 조 적용대상

제한기간 중이 아닌 때에 개최하는 행사를 위한 보조금율 제한 기간 중에
지급하는 것은 해당 제한기간 종 후윈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관할구역 밖에서 선거구민이 아닌 자률 대상으로 개최하는 행사

- 제한기간 중에 상품 수출확대 및 관광객유치, 투자촉진 등을 위한 행사를 관할구역 밖에서 시-도와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은 무방함


## r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규정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제86조)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 발행행위 제한(법 제86조제5항)
주 체 $\sim$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속 공무원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공직선거 업무편람]

## r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규정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제86조)

## '1종 1 회'의 개념

## - 1 종의 개념

'1종'이란 충보매체 또는 제작형태, 규격 . 배열방법 등이 모두 동일한 것을 맏함

## - 1 회의 개념

2 인쇄롤을 이용하는 경우 그 발행 , 배부계횡에 따라 당해 분기내에서 주민별로 1 회 이내에서 배부하는 것
3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하나의 시설물을 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
3 전광판을 이용하는 경우 돔일한 시간대에 1 회 방영하는 것
2 IPTV의 경우 픅정 채널에 1 종의 영상홍보룰응 게시하여 두는 것을 말함

## r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규정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제86조)

## ' 1 종 1 회'의 개념

## - 1회의 개념

신문 방송에 광고하는 경무 뱁 제69조(신문광고)제1항 후단 및


- 일간신문에의 광고회수의 계산에 였어서는 하나의 일간신문에 1 회 광고하는 것을 1 회로 봄
- 반송광고의 관고회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재방송을 포함하되, 하나의 댈례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시설을 선정하여 당혜 방송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1회로 봄


## r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규정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제86조)

## 발행 - 배부 - 방송 가능한 홍보물

- 법령에 의하여 홍보물을 발행 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 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 r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규정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제86조)

## 발행 - 배부 - 방송 가능한 홍보물

- 그 밖에 공직선거관리규칙(§47(4))이 정하는 행위
- 소속직원의 직무교육이나 업무추진을 위한 홍보물
- 각종 통계 정보 등을 알리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백서 - 연감 또는 총람 -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사업설명회 -교양강좌 공청회 - 체육대회 기념일 고유축제 등 각종 행사를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 (자치단제장의 성명, 사진. 활동상황. 공약실컨사항 기타 업적이 게재된 홍보물 제외)


## r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규정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제86조)

## 발행 - 배부 - 방송 가능한 홍보물

- 그 밖에 공직선거관리규칙 (§47(4))이 정하는 행위
- 환경 의료 교통 조세 건축 등에 대한 민원안내서 또는 반상회보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홍보물 (자치단세장의 성명, 사진. 활동상활. 공약실천사항 기타 언적이 게재된 홍보물 제외)
- 역사 지리 문화 특산물 관광명소 등을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 (자치단체장의 성명, 사진. 활동상활, 공약실천사항 기타 업적이 게재된 홍보물 제외)


## r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규정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제86조)

## 발행 - 배부 - 방송 가능한 홍보물

- 그 밖에 공직선거관리규칙 (§47(4))이 정하는 행위
- 재난관리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홍보물 (자치단체장의 성명, 사진, 함동상황, 공 약실런사항 기타 업적이 게재된 홍보물 제외)
-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입구, 외벽면 또는 담장에 게시하는 홍보물 (자치 단체장의 직명, 성명, 사진, 활동상홯, 공약실천사항 기타 언적이 게재된 홍보물 게외)


## r공직선거법 $\lrcorner$ 의 제한•금지규정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제86조)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석 등 제한(법 제86조제7항)

금지형위 $\sim$ 지방자치단체장의 광고 출연 금지
명목여하 불문 방송•신문•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음


## r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규정

##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제266조)

제한내용

* 법 제266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 형의 집행유예 또는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법 제 266 조제 1 항에서 정한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 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 그 직에서 퇴직됨.

제한기간

-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 년간
-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 년간
-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공직선거 업무편람]


## r공직선거법 $\lrcorner$ 의 제한•금지규정

## 공무원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연장(제268조제3항)

## 대상범죄

- 공무원(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공무원 제외)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선거범죄

제한기간 $\sim$ 해당 선거일 후 10 년

- 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



## r정당법」, $\cdot$ 정치자금법」 의 제한•금지규정

## r정당법」•정치자금법」 의 제한•금지규정

## 정당 가입 금지（정당법 제22조）


－정당의 발기인•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등
－r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제 2 조에 규정된 공무원
－사립학교의 교원（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 제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 ＊＇신분，업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다＇라는 등으로 명문으로 규정된 경우를 말하며，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사，국제헙력의사 등이 있음．

## 후원회 가입 금지（정치자금법 제8조）

내 용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음．

## 공무원의 후원금 기부 관련 법제서 유권해석

－질 의
공무원이 r정치자금법，제6조에 따른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는지？
－회 답
r국가공무원법 ，제 3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제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경우 $r$ 국가공무원법，제 65 조 및 $r$ 국가공무원 녹무규정」 제27조에 따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r정치자금법，제6조에 따른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금지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공직선거 업무편람]

## 중점 추진사항 및 협조사항

## 중점 추진사항 및 협조사항


[IV] 공무원의 선개민영황이믐지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공직선거 업무편람

## V

## 결격사유조회시스템

1. 결격사유조회시스템 소개
2. 결격사유조회 담당자 업무
3. 선거부서 담당자 업무
4. 기타 안내사항



목차

I 결격사유조회시스템 소개

1. 결격사유조회 업무 흐름도

II 결격사유조회 담당자 업무

1. 판시형 정보 관리 방법
2. 선거관련법위반자 관리 방법
3. 선거권없는자 비교명부 추출 방법

4 . 중요사항

III 선거부서 담당자 업무

1. 선거권없는자 추술 업무 흐름도
2. 선거권없는자 관리 개넘도
3. 선거권없는자 비교명부 해석 요령
4. 주의사항

N 기타 안내사항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공직선거 업무편람 $]$

## I. 결격사유조회시스템 소개

1. 결격사유조회 업무 흐름도


## 1. 결격사유조회업무 흐름도

수형인명표의 전자적 전송과 시 • 구 • 읍 - 면에서 법원 선고문을 등록 관리하여 결격사유조회시스템을 통해 결격사유기록 정보를 전자적 통합 조회를 할수 있음


## II. 결격사유조회 담당자 업무

1. 판시형 정보 관리 방법
2. 선거관련법위반자 관리 방법
3. 선거권없는자 비교명부 추출 방법
4. 중요사항


## 판시개요







| 구늘 | स마의 | 837 |  |
| :---: | :---: | :---: | :---: |
|  |  |  |  |
|  | 4긱(파세) | 9갠ㅊㄹ | 힜흘(슨기 가능) |
|  | 죽*ㅐ(8판시) | 97개웡 | 핫흥(선기 가흥) |





## 판시관리 호름도







## 공문에시



将푼시형의 헝기종료애정얀은판사정보인에표기되어있음
-판시1 : 징역 6율종료입: 2017.02.19
-판시2: 징멱4훌종료일: 2017.06.19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공직선거 업무편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공직선거 업무편람]


## 2. 선거관련법위반자 관리 방법

## 업무개요





선가넌하반여부겁졍

## 2. 선거관련법위반자 관리 방법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공직선거 업무편람］

## 2．선거관련법위반자 관리 방법

※ 신규 전수 시 선거관련볍위반 여부 학인（봉할형）


려렴사유조제 웁무챠리룸폄자 바연

## ［메뉴 구조】

홈흄혐（마빈수리수）

药都






（89）



暗

## 2.

 선거관련법위반자 관리 방법＊신규 점수 시 선거관련밥위반 여부 혁인（판시훵）

## 감혀사유조회 둠무치리롬바자 바영



[^7]

## 2. 선거관련법위반자 관리 방법



[^8][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공직선거 업무편람]


## 2. 선거관련법위반자 관리 방법




## 3. 선거권없는자 비교명부 추출 방법

## 선거권언는자비죠명부

 (1) 자오검도 $\rightarrow$ (2)액셜 암호화후묘ㅎㅜㅜ전답

## 선거건연는자 몌뉴 구조 섬명

| 선거결없는자관리 |
| :---: |
| ■ 선거좐련볌위반자관리 |
| - 선거권없는자조회 (동력기준지) |
| - 선거권없는자조회 |
| - ㅅㅓㅓ거권없는자비개영부 |

## 



-5 -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공직선거 업무편람 $]$

## 3．선거권없는자 비교명부 추출 방법

## ※ 선거권언는자 비교명루 추웅



## 펴렿사유조회


［베뉴 구조］
번가졍인는자퓬리

 3가지 항․․․홀하 하인 －석거률자：2018－06－13 －버거률자：2018－06－13









苴放


## 3．선거권없는자 비교명부 추출 방법

## 펴몀사유조회 

자졍텬 비로여ㅇㅜㅜ 아이푼욜




 아이존여 자를히 모방이



〈상익

2003，2007，2010，20139

 솔요

## 4. 중요사항

## 중요 사항

선거켠없는자비교명부추술 시해당문서을 '열가로 열지앙고 PC로 '저장하여 명부툴 관리


비교명부 추슬시 3 가지입력사향 확인(선거열자, 선거자연령,비료알자)


- 선거자연령은만 19쎄로입락


선거갠없는자비교명부 투룰 이전에'선거간련법우반자 겁중 힟 정리 절차(1,2)를 빈드시숙지햐고 이병히여 정힉한선거줜연는자명단이 작성되어질수 잎도륵 조치


## III. 선거부서 담당자 업무

1. 선거권없는자 추출 업무 흐름도
2. 선거권없는자 관리 개념도
3. 선거권없는자 비교명부 해석 요령
4. 주의사항

## 1. 선거권없는자 추출 업무 흐름도

각 등록기준지에서 관리되고 있는 결격사유기록 및 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에서 관리하는 벌금형자료에 대하여 결격사유조회시스템에등록 후시•구•읍•면 결격사유조회담당자가 선거권 없는 자 명단 추출(Excel)로 선거담당에게 제공


## 2. 선거권없는자 관리 개념도

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 벌금형 입력, 등록기준지시•구•읍•면 에서 결격사유조회시스템의 수형/선고 자료를 접수•입력 하고 거주지시•구•읍•면 에서는 선거권 없는 자를 추출


## 3. 선거권없는자 비교명부 해석요령

## - Excel에 표현되는 변경사유 중 추가/삭제 원인 설명

- 신규:등록기준지에서신규수형/선고 자료를 접수
- 전입/전출 : 신규수형/선고 자료의 경우 거주지가 최초로 현행화, 대상자의 거주지가 실제로 변경
- 종료예정일변경 : 집행종료예정일 등의 변경
- 선거관련법위반여부변경: 담당자가 선거관련법위반여부의 체크를 선택/해지한 경우
- 선거권없는기간변경 : 담당자가 선거관련법위반자의 선거권 없는 기간을 변경하였을 경우 [예] 선거권이부여될수 있는 복권이 발생하여 선거권 없는 기간에 복권일자를 입력한 경우
- 다운받은 Excel 자료의 변경상세내역에는 위와 같은 사유와 자료의 변동 일자가 조회
[예1] 전입/전출 : $\rightarrow$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철동[변경일자:2011-12-20][2015-10-06]
[예2] 전입/전출 : 서울특별시성북구 종암동 $\rightarrow$ 서울특별시종로구 관철동 [변경일자:2015-10-05][2015-10-06]


## 4. 선거권없는자 비교명부 해석 요령

## 일자에 대한 정의 (선거권없는기간 / 폐기예정일자)

- 2999-12-12 : 검찰청에서 결격사유조회시스템으로 폐기예정일자를 주지 않았을 경우
$\rightarrow$ 해당 검찰청에 문의하여 검찰청 시스템의 실효일자를 수정 요청
- 8888-12-31 :검찰청에서사형/무기징역/도망 등으로 인해형 집행을 하지 못하였거나 집행기간이무기한인 경우
- 2099-12-31 : 97년 이전수형등록에서 형명을 사형/무기징역으로 입력하였을 경우
- 7777-12-31 : 상소권회복으로 인해 선거권이복권되었을 경우
- 1900-01-01 : 검찰청에서 무죄판결로 복권되었을 경우
- 1111-11-11: 검찰청에서 수형인명표를 삭제하였을 경우 (즉, 검찰청에 존재하지 않는 명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공직선거 업무편람

## 5．선거권없는자 비교명부 해석 요령



2．비교명부Excel파일은 거주지행정관서별로정렬되므로 거주지행정관서－가회동에서는대상자정길동의변경사유가삭제로나타나고 ［거주지행정관서－교남동］에서는 대상자정길동의변경사유가 추가로보여진다．
3．변경상세내역은변경사유에대한내역으로＂전입／전출－구거주지행정관서－＞신거주지행정관세변경일자：（주민센터에등록된전입일자）］ ［결격사유조회시스템에거주지가적용된날짜（즉 거주지현행화일）］${ }^{ㄹ ㅡ ㄹ ~ ㄴ ㅏ ㅌ ㅏ ㄴ ㅐ ㄱ ㅔ ㄷ ㅚ ㄴ ㄷ ㅏ . ~}$
4．대상자공깁동은＂저입／전춥＂의사유에의핵（성분구－＞중로구）로＂추가＂뒴


## 5．선거권없는자 비교명부 해석 요령

| 等 | 敕良 |  | み〒ึ |  | 개푸ㅈㅐㅜㅕㅕㅜㄹㄹㅅㅐ |  |  |  |
| :---: | :---: | :---: | :---: | :---: | :---: | :---: | :---: | :---: |
|  |  |  |  ㅍ․․ | ！111－ |  | ${ }^{0}$ | 制 | （47）－12018－05－3 |
| $\begin{aligned} & 4 \\ & 2 \\ & 3 \end{aligned}$ | $\begin{aligned} & = \\ & \cdots \\ & \hline \end{aligned}$ |  |  | $\stackrel{111 \%}{ }$ |  |  |  |  |
| $\begin{aligned} & \text { F } \\ & 8 \\ & \hline 1 \end{aligned}$ |  |  |  | ！ $9^{11}$ |  | 4．4 ${ }^{\circ}$ | ＊） |  |
| $2$ |  |  |  | ！ $111 \times$ |  <br> 2 k |  | 444. |  |





2．변동없음：대상자나라면은 $2018-05-29$ 일과 $2018-05-31$ 일사이에 변경된사항이존재하지않음．
 ［예ㄷㅐㅐㅏㅇ자나길동에대해ㅈㅓㅓ수시에는선거사범으록ㄴㄴ리하지영았다가후에 선거관련볍위반자ㅈㅏㅗㅍㅍㄴ명되어등록기준징ㅇㅔㅓ 선걱ㄱㄴ련볍바위반여부를체크하여수정하였을경우］






## 5. 주의사항

1. 각시.구.읍.면선거담당자는 엑셀 컬럼이 [공직선거법 제 18 조 위반 조항으로 끝나는 자료는 잘못 제공된자료이므로 [변경상세내역]또는 [변경유무]로 끝나는 엑셀 자료를 결격사유조회 담당자에게 다시요청하여야함.
2. 선거인명부 작성프로그램에 선거권 없는 자 입력할 때 [사유]는 제공받은 엑셀 컬럼의 [공직선거법 제 18 조 위반조행]의 내용을 입력한다.
3. [거주지행정관세] 내용이 비어있는 경우는 [거주지] 컬럼을 참고
4. 엑셀문서에액세스할수 없는 경우에는 문서를 제공한 결격사유조회 담당자에게 암호화 해제 후 제공될수 있도록 안내(문서보안솔루션 적용에 따른 문서암호화)
5. 벌금형의 경우가 아닌 '공직선거법 제 18 조제 1 항제 3 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죄명 검증이 필요함.
6. 개인정보 오남용 및 유출 시 처벌 등의 강화로 인한 엑셀자료 보관 및 활용시주의
-엑셀자료 유통은 암호화 후 보안 USB를 활용하여 제공

- 담당자 PC에있는 자료는 전산 처리 후 삭제조치




## N. 기타 안내사항

1. 결격사유조회 회보 관련 기능개선 (예정)
2. 엑셀을 활용한 명부 확인 방법


## 1. 결격사유유 유무 조조회 업무흐름도

## 헌행 결격사유 유무 조최 절차

- 엄루치리 시 필요한 매상자의 결격사유 유무를 정보 조회 기뇽을 할용하여 간편하게 업무 처리


$$
\begin{aligned}
& \text { - ロ\#ग }
\end{aligned}
$$

##  결격사유 유무 조회 업무흐름도

## 개선 될 겸견사유 유무 조회 절차(예정)



## 1. 1. 켤겨가유조회 요보 견련 가농개선 (요정) 개선 될 결격사유조회시스템 회보처리

* 


## 



펴렿사유조죄시소바 둘무치리룸커아 하면
 건수푷ㅋㅂ린



 (or?

## 1.

 1. 결거사유조회 효보 견련 가농개선(예정) 개선 될 결격사유조회시스템 회보처리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공직선거 업무편람 ]


## 1.

 1. 겸거사유조외 요보 격련 가호ㄱㅐㅐㅓㄴ(애징)개선 될 결격사유조회시스템 회보처리
\% 보보요쳥 졍보 상셔 봑면 (가칭)


[^9]
## 2. Excel 2003 이하 버전



## * 참로

 도삼지 이므로 가주지 홍징련서아 선기춴 话는 자어


## * 항함






## 2. Excel 2003 이하 버전






1. 자홍필터가 선훈디만 화삼표가 셩기기 틴다.
2. "변켱유무"라고 표번뎐 형목을 큘릭하면

3. 밴경뎐 마상자만 표허되게 하기 위채서는 [유ㄱㅛㅛ 변경되지

4. 듀율 선뚝하였다면 변경사류가 [\$후개또르 [삭페인 뎌셩자안 형정관서뷸로 보여지계 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공직선거 업무편람]

## 2. Excel 2007 버전



## ** 방법

1. 선거권없는자비교명부 Excel을 받는다.
2. "변경유무"라고 표현된 항목을 클릭한다. 3. 메뉴에서 [데이터-필티]를 선택한다.
3. 필터가 선택되면 화살표가 생기게 된다.
4. 변경유무 확인은 2003 버젼과 동일함.


## VI <br> 주요 선거사무 일정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주요사무일정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세부일정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공직선거 업무편람]

# 제 7 회 전 국 동 시 지 방 선 거 <br>  <br> 2018.6.13(수) 실시 

주요사무일정
세부일정

2018．6．13（수）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사홍일정 | 살시사형 | 기준열 | 관계밥즈 |
| :---: | :---: | :---: | :---: |
| 1． 15 （리ㅁㅛㅏㅈㅣ | 인무수 등의 둥보 | 연구의 기준율 <br> （여비무보자등륙선종개시일이 A사아는 덜의 전전달말일）후 15 일께지 | 법14，160익ㅎㅇ 균20（2）， 1118 （1） |
| 2．31폴까지 | 선거비통제한액 공고，봉지 애비ㅎㅜㅜ보자홍보룰 발송수량 륭교 | 예비후보저동록개시일진 10알파지 |  |
|  | 예비후보자등록 선정 <br> ［시－도지사및 교육감선거］ | 선거일 전120일부터 | 법 560 의 2 11 |
| 3．2（금）부티 | 예비후보자동록 신청 <br> ［시－도이원，구 시의원 및 장의 선거］ | 선거기간게서얼 전 90일부터 | 법 660 읙⑴ |
| 3． 15 （号）听지 | 각름젼관아 위연， <br> 여비곤 중대장이성의 간부，주민자치위인， 통리반의 항이 선거사무란겨자 등이 되고자 하는 마 그 힉의 사직 | 선거밀전 90밀까지 |  |
|  | 입후봊제한율반＇t 자의 사직 | 선거일전 90열까지 <br> ［비례대표지병의연선구N 입후보하는 <br> 켱우선겨열전 30 일 ：5，44（율）］ | \＃353（1）（2） |
| 3． 15 （묵）부터 <br> 6． 13 （수）파지 | 의점햘동보고 굼지 | 선거일젼 909요부더 선거요까지 |  |
| 4，1（일）부티 | 예비후보자동록신청 ［군의원 밎 정의 선거］ |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 법 160 의 2 （ 9 |
| 4，14（토）부터 <br> 6． 3 （수）까지 | 지팜자지단쳐졍읙선거에 영형물 미지는 행위 금지 | 선거입잔 60일부터 선거열까지 | 밥 1862 |
| 5．22（현）早ㅌ－1 <br> 5．26（트））까지 | 선거인명푸 작성 | 선거일전 22랄부터 5울이내 | 뱁37，규50 |
|  | 거소푸표자선교및 거소투표자션고인명부 작성 |  | 반38，균11 |
|  | 군인등 신ㄱㄱㄱㅁㅂㅗ 쌀홍신정 |  | 草 655 |
| 5． 24 목）부터 <br> 5． 25 （금）까지 | 후보자등려 신청 <br> （매일 오전비시－우후시） | 선거잋전 20일부터 2일간 | $\begin{aligned} & \text { 봅 } 29 \\ & \text { 균ㅇㅇ } \end{aligned}$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공직선거 업무편람




| 시형열정 | 실시사항 | 기준일 | 관게빱조 |
| :---: | :---: | :---: | :---: |
| 5，30（수）犲지 | 선거띡보 저券 | 후보자등류마갑일 후 5일파지 | $\begin{aligned} & \text { 밥 } 1642 \\ & \text { 규 } 129 / 4 \end{aligned}$ |
| 5．31（묵） | 선거기간개시일 | 후보자통훙미캄빌 후 69ㅣㄹ | 법 3333 |
| 5．31虽早門 <br> 6．12（화가지 | 선거방숭토룰위원회 주관 다망토를회 개최 | 선거운동기간중 | 밤 82 의 2 |
| 6．1）（금）까지 | 선거꽁보저슐 | 무보자동류마갑일 후 7일ग7지 | $\begin{aligned} & \text { 밥 } 165 / 6 \text { ( } \\ & \text { 규 } 130(5) \end{aligned}$ |
|  | 선가바보 접부 | 지줄마감일 후 2월마지 | 밥 $64(2)$ $\text { 규직 } 292(5$ |
| 6．（1）그ㅁㅐㅔ | 선거인명부 학정 | 선거일전 12였에 | 밥 544 （1） |
| 6．3（일）까지 | 푸표소의 명징과 소제지 굥교 | 선거올친 10율마지 | 법 14778 |
|  | 거소투표용지를송 <br> （전거강보，인내（편 동중） | 선거였전 10월까지 | $\begin{aligned} & \text { 밥 } 165(6) \text {, } \\ & 154(1) 5 \text {, } \\ & \text { 규 } 977 \end{aligned}$ |
|  | 투표안내문（선거강보 동뽕）발웅 | 선거인명부훅징일 후 2엮까지 | $\begin{aligned} & \text { 법465(6), 153(1), } \\ & \text { 규76 } \end{aligned}$ |
| 6．8（금）붙 <br> 6．9（토）林지 | 사전투표 <br> （매일 오전 6서～오후 6세） | 선거일전 5일부터 2임긴 | 밥 1555 （2）， 1558 |
| 6．13（수） | 투표（오진 6시－오후 6시） | 선거일 | 법제10장 |
|  | 제표（咎互중료후 죽시） |  | 법 제11장 |
| 6． 25 （준）까지 | 선가비용브전청구 | 선거일후 10 일까지 <br>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br> 공휴일인 때에는 그익일） | 밥 122 읭ㅇ， <br> 민법 161 <br> 균ㄷㅇㅢ 3 ⒈ |
| 8．12（일이ㄴㅐㅐ | 선거비용 브전 | 선거일후 60일이내 | $\begin{aligned} & \text { 법 } 5122 \text { 의2(1) } \\ & \text { 균ㄴㅇㅢ3(2) } \end{aligned}$ |

2018．6．13（수）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세부일정

| 서훔ㄹㄹ장 | 설사사항 | 잠시기견（재） | 기뜌열 |  |
| :---: | :---: | :---: | :---: | :---: |
| 상시 | 기부형뮈저탄 | ＋⿻丷木구트지 | 성시 | 46112－5197 |
| 상시 | 선가이 켠안 여숄ㅈㅈ사서문선교 <br>  <br>  ＊여련좃사게시일 전 2 매가지 | 누그ㄴㅔㅔ | 상시 | 뱁1096 |
| 1．1（치니부터 | 전파기푸 <br> （밦를 100 윤연 아상의 <br> 햘회헝피겸릑 즈외 <br> ＜국가경춥렷서윅창아개＞ | 후붖자가 되랴는 사함 정당 |  | 184993 |
| 1．15（율）까지 | 욘구수 동의 둥보 ＜구시 군혀뤈외에＞ | 구시 군의 장 |  |  |
| 2．3（토）까지 |  <br>  <br>  후브자우게＞ | 선가구화여외 | 미바후보자동후선청재시열전 10ㅆㅆㄹㄲㅈㅈ | 빱 160 역3， 5122 규126일․ 5510. 고자밥 4490 |
|  |  <br>  |  연롤조ㅇㅐㅐ회뤈회 |  선거임 축ㅇ울깨지 | 판189012，18013 |
| 2． 13 （화）부러 <br> 7．13（금）까지 | 정동변가ㅅㅏㅜㅅㅗ 셜치•뻔뎡 손고 （회게패멸자 민정치자금의 수입파 <br>  <br>  <br>  <br> 지멱구구호밈면선기 | 옹영잉 노는 사 도형의 두표지 |  （녈치훈영은 선거일 전 120열부버 선거일 후 309 만제 |  <br> 장겸반134．（0）／8） <br> 정그ㄱㅠㅜㅂ․ <br> 132 |
| 2．13（하）붑 | 야바후보자둥믁 신헝 ［사 드지사손겨，교여감넌개 및 지역구국외여련선개］ |  독ㄹ는 사함 |  |  <br>  |
| 3．2（글）투더 | 야비푸보자둥묵 신형 ［지뚜구시 도예월， 지역구자치구 시믜텬 및 중의 슨걱 |  |  |  |
| 4．1（일）부터 | 아비우보자둥릭 선형 ［지아구군외명및 장의 선거］ |  |  |  |
|  |  <br>  | 아비ㅍㅕㅗㅗ자기 <br> 도릐는 사날 | 여버후보꽈 팡⿹ㅠㅇ시엉시 | H66022（2） |
|  |  ＜슨마구교인회이＞ |  |  |  |
|  | 정듀였리어 핀한 중명서 <br>  저출 《선거구왜용p＞ |  |  |  |
|  | 아앙 선기기타를여 100 훈의 20 납부 ＜손가궁ㅇ쵄외애 |  |  |  |
|  |  | 신거구불화 |  | 772420 |
|  | 파선거견 즈이＜선겨구 패휼 겹참청여남．드ㅇㅗㅗ기곤지 린힐 구시음면예 증땍 | 식ㄱㄱㅜㅜㅜ요외 | 아비후브자듬룬선헝 수리훅 | $\begin{aligned} & 48609201 \\ & 782620 \end{aligned}$ |
|  | ㅁㅏㅣ후부자낸선머ㅅㅏㅜㅅ 눌치．빤겸신고 ＜손가구웄ㅆ소앙 | 여버훔자 | 지저웂잉 |  |


| 시풍팰쭐 | 맘써사항 | 싯시기타（x） | 기준에 | 가개패즈 |
| :---: | :---: | :---: | :---: | :---: |
|  | 야비후ㄴㅗㅗㅏㅏㅇㅢ 슨거시붕⼣ㅇ 선가사수원 합둥보조민선임•해임 및 료처쇤교 ＜선가국ㅇㅟㅝㅝㄴ외메＞ | 여비무부지․ <br> 선가사무항 | 지처웂이 | 빕 629 （4）， 56301） 균ㅇㅇㅇ |
|  | 예부호보자여ㄱㅐㅐㅜㅈ잫ㅇㅇ 신고 <br>  | 애이후부자 | 빵힘을내푸악ㄴ는 패 | $\begin{aligned} & \text { 만 } 60 \text { 이 } 3 \text { क } \\ & \text { 규 } 26 \text { 이211 } \end{aligned}$ |
|  | 야미후보자의 민정의 만형선로 ＜간할위연회이＞ | 아비우보ㅈㅣㅣ | 여버하버자둥훗ㅅㄴ헝시 | 개21 |
|  |  <br>  | 매이웁부자 | 유비후차둥릿ㅅㄴㅈ어시 |  |
|  | 정치자금믜 수입엿 지출을 아산 <br>  | copu｜iserex |  |  |
|  |  （수햐에 결처 별영하릐 <br>  ＜간힐선가구와연회이＞ | 애이훕ㅂㅈㅏ | 홀송열전 29 pㅔㅈㅣ <br>  | 랍 360 역ㅇ 규126여23 |
|  |  <br>  <br>  | 아비푸보치 | wㅐ란죽시 | 746024013 교지밥 4490 |
| $\begin{aligned} & \text { 2, 13(확부틔 } \\ & \text { 6.13(수) } \text { )지 } \end{aligned}$ |  | 시 도유년의 |  | $\begin{aligned} & \text { 보510의32 } \\ & \text { 규22:441 } \end{aligned}$ |
| 3．15（옥）까지 | 입무또한 공무원 퓽의 사직 <br>  얘당 지함천가야 입후브한 강후， 그교길이 해당 지빰자지탄ㅊㅇㅇㅢ 2ㄱㅇㅇㄱㅁㅁㅅㄴㄴㄴ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져요） | 후불차가 도련 서남 | 선거렬젼 909 이까지 <br>  국회의현이 잽ㅇㅈㅈ치든재의 종선가에 입호우ㅎㅏㅏ는 경무 및 지방며ㅁㅕㅕㅇ이다른 <br> 지방자자딘조의 장이나 의형ㅇㅇ영선거여 <br> 입후보아는 겅우 선거일전 30 열마징 | H553（1）क 표지붑묵（1） |
|  |  애상 긴부，추민지치윰원또늑 홍－리，밴이 장이 섯거서물ㄴㄴ계자 동이 되려는 때 그 적영 사직 <br>  | 선가쑤란겨자 둉이 대려는사함 | 선거일전 90유ㄲㅏㅏㅈㅣ | 밥602 |
|  |  교모순항 <br> ＜조영뮤원회애＞ | 중영당 |  <br>  | 밥ㅍ370（3） |
| 3． 1 （목）부터 <br> 5． 30 （수）加지 | 정앙 정펵잉탕홍연늘 선고 ＜종앙위현희이＞ | 중영당 다패자 |  <br>  <br> 선가기가맙시펼청율까지 |  <br> 7760 읜 |
| 3． 15 （옥）부터 <br> 6．13（수）까지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팜 포밉와 관현 있는 저서의 쿨판기볌회 개최글지 | 누구ㄹㅣㅣ | 선거임준 90요ㄴㅜㅜㅜ 선거묨까자 | 밥1038 |
|  | 오졍퓰둥 뽀그금제（안터냇 홍패이지 <br>  <br>  <br>  | 국히아연． <br> 자병흭외이ㄱㅕㅝㄴ |  | 푸ㅂㅐㅔ（1） |
| $\begin{aligned} & \text { 3.15(옥)부터 } \\ & \text { 5.13(열) 刀ㅏㅏㅈㅣ } \end{aligned}$ | 당분접회 개자신고 <br> ＜개피지역 관휼 구 시 군위원이 | 정¢ |  선거울까지 당횬집회 가지술지） | $\begin{aligned} & \begin{array}{l} 831412 \\ 7363.1 \end{array} \end{aligned}$ |
|  |  개보 |  | 선거열진 90열푸터 푸보자둥여신중개서멸 전열매지 | 밖 $82 \times 93910$ |


| 시충멸징 | 섰사샇ㅎ | 설시가판（재） | 기준윤 |  |
| :---: | :---: | :---: | :---: | :---: |
| 4，14（토）旱昘 5.30(수) m지 | 선허기란전언싼기란 초혈 <br> 대다－로를회이 봉옹연시 전혈밤뱁 둥 <br>  ［지방주치탄ㅈㅐㅏㅏㅇ 선거 지면구구혐ㅁㅁㅆㅆㄴ선게 | 연ํำ ${ }^{\text {a }}$ |  손과익전 60 일부터 <br>  | $\begin{aligned} & \begin{array}{l} 38827 \\ 7 \\ 7 \end{array} 445(4) \end{aligned}$ |
|  | 지밤자지단화형읙 선거어 영형올 미자는 홍우믐지 | 자항저치 단누읙장 | 손거렬쳔 60 였부터 쇤거일쨔지 | 반86 ${ }^{\text {a }}$ |
|  | 굼정선거지원단연월 추가 구성•윤영 |  | 선거길전 60 열부터 선거일훙 10여ㄹㅔㅏㅈㅣ | $\begin{aligned} & \text { 43109122 } \\ & \text { 규52\%3\% } \end{aligned}$ |
|  | 종앙 시이뻐공정선거지뵨단 후가 구셩 운영 | 종앙수우외 |  |  <br> 규눙ㄴ（ㄴ） |
|  |  위육 문염 | 구서 구구씨ㅇㅚㅢ |  | $\begin{aligned} & \text { 붚146212 } \\ & \text { 규4671 } \end{aligned}$ |
| 4．15（일）후터 <br> 6． 13 （수）깩지 | 구보자 거추으기 <br>  주민퐁훈） | 후부자가 디랴는사랄 | 선거일 훈때 구수아여 60일이병 | \％1960 |
| 5． 11 （굼） 가지 |  성명 후소 조사홍보 ＜구시 군뮤현회애＞ | 구쇼 군웍장 | 논ㄱำ zog $p$ ㄴㅣㅣ | \＃165\％ |
|  |  치믹 지장 렬포 | 장웡휘웡회 |  | 77116 |
|  | 개소푸프선교에 견한연나분및 섬고서 부ㄹㅜㅜㅇ <br>  <br>  <br>  | 구새순ํㅢ잠 | 선거펶명부찻성기준움 전 10 열개지 | 배s 38 |
|  | 임후보히려는 공무횬 ⿹ㅠㅇㅇㅢ 사픽 （비리댚ㅍ지밤역숸선가이 입후보하거나 국외워ㅇㅕㅕㅇㅇㅣ 자방자치둔ㅎt의 졍선가어 입후보아는 경우 <br>  빞오오안 경우및 지빵의원이 다른 지방자자단변읙장이나 와혀어원선기에 임두느한 경우） | 후오재가 도라는 곰루연 동 | 선거일전 30 쎤마지 <br> （비료대표궁히요빼이 지뎍구국미오련 <br> 보히선걱ㅁㅁㅇㅓ 힐후보하는 경우 <br>  | 741532 |
|  |  켤정 공고 봉지 <br> ＜음 면－동와得니애＞ |  | 선거윰전 30잉ㄲㄲㅣ |  |
|  |  <br>  ＜선가국ㅆㄴ와이＞ <br>  <br> 비라대뵤시 도외쳔선거 교묵겁선거 밎 치여구국호몄쎵섯게 |  |  <br>  <br>  | 바ำ79 <br> 규136（1） <br> 퍼주분494 |
|  |  ＜족ㅁㅇ무연외매＞ | 한국찬홍긍ㅅ | 후바중익 언둘열 가훈 <br>  <br> 붕보하는떼 | $\begin{aligned} & \text { 밥 } 1730 \\ & \frac{7}{4}+3806 \end{aligned}$ |
| 5，19（呈）加지 |  <br>  ＜구시 교멱잠에끼 | 애비우부자 |  5뉴ํ गX | 팜160의 3 ， |
| $\begin{aligned} & \text { 5. 19(로) 부버 } \\ & 5.25 \text { (금)과기 } \end{aligned}$ | 무소속후보자추천핑 검인 교부 ＜교요감선ㄱㅏㅜ보자．무소훅후보자가 됴랴는 시중아개＞ <br> 겁인 교부신쳥은 곻휴얼이도 피구하고 때잍 오전 9지투터 오우 64 （50 지） | 산거구위줜외 | 호보자동뭉시엉게시열 천 <br>  | H48824 페지붑 5490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공직선거 업무편람 ］

| 서칠임졍 | 설사샇ㅎ | 산새가패 | 기둠염 | 나례뱆ㅈ |
| :---: | :---: | :---: | :---: | :---: |
| 5．21월까지 |  <br>  ＜정당잋무부자기괴랴를 삼여개＞ <br>  르묵경천거아 한햅 | 선가구웡힌 |  | 밥643． 659. <br> 566 <br> 페자붑 499 |
|  | 후부자 둥의 방송언헐을 위찬 <br> 봉숭서견각 빌졍 지장 훙고 홍지 <br> 《종당 후노자액 <br> ［재앙자지다네장선개， <br> 비주대표서 도여연ㄴㄴㄴㅁㅣ 교욕밥신거힟 <br> 지셕갖외이영ㅅㄴㄴㄱㅣ | 천가구위선회 |  <br>  | 밥표 6 <br> 교자붑 5493 |
|  | 푸표구의 명장구 구역의 얼균형ㄱ | 구서 구구치외 | 선거윤명붖ㅈㄱ셩기주잋 전율패지 | $\begin{aligned} & \text { 변313 } \\ & \overrightarrow{797} \text { ? } \end{aligned}$ |
|  |  구쳥장데기＞ | 자차가가아닌구푤 <br> ㄹㄹㄹㅍㅍ하는 사앙 |  | Thenes |
|  | 寒지 <br>  | 부ㄷㅐㅐㅇㅇㅇ․ 경징간서화 항 | 선가만명부직송기간개시일전혈미지 | 41659 |
| $\begin{aligned} & \text { 5.22(화) 부버 } \\ & \text { 5.26(토))마지 } \end{aligned}$ | 선가밈며ㅇㅜㅜ학셩 | 구쇠 규육창 | 선거엽전 22 야阝툽 5월 이내 | $\begin{aligned} & \text { 빕1370. } \\ & 120407 \end{aligned}$ |
|  | 선거민명부착성싱형 오ㅇㅗㅗ〈구시 근예연미아＞ | 구서 균ํㅢ장 |  | 73106 |
|  | 선거인명후몇 거소표표신교민명 <br>  ＜구시 군화련햐아 | 구서 규읙장 |  적셩한 머죽시 | $\begin{aligned} & \text { 병3/8, } \\ & 53 e 6 \end{aligned}$ |
|  |  | 거ㅅㅗㅜㅜ표닌ㄱㅁㅐㅐㅓㅇㅈㅣ | 선가욘명푸착성기라웅 | 综330， 균Nas 11202 |
|  | 거소후표신ㄱ김밍부 작상 | 구서굴의장 |  | H283566004 |
|  | 군면등 선거궁보 빨홈신졍 ＜란할구－사－군위퇸혀이＞ | 그안 궁잘구무원 |  | 4u65is |
|  |  포힝）적성 궁무훤 입민차항 봉보 ＜구서 군유련치이＞ | 구사 른읮장 | 임ㅁㄴㄴ한 패의 지재운이 | $\begin{aligned} & \text { 418392 } \\ & 74120 \end{aligned}$ |
| 5． 24 （묵）까지 | 선거인명부 켬혐징소 거라． <br>  | 구세 구의장 | 손가연뭄푸 율혐게서혈전 골파지 | $\begin{aligned} & \text { 215403 } \\ & \text { 규133 } \end{aligned}$ |
|  | 선거인명부 학정 무 등재아푸 통 차인아 <br>  밋빵흡 둥고 | 구사 쿤의잠 |  | H644．8］ |
| $\begin{aligned} & \text { 5. } 24 \text { (옹)붑 } \\ & \text { 5. } 25 \text { (률) 将 } \end{aligned}$ |  <br> （매일오전이수버도우 애쌔지） | 정담 후보ㄲㅔㅏ 뫼랴는 사함 |  | （4）4997 |
|  | 따선마게ㅁㅓㅓ 결한 중명서류처충 ＜선거구웨웟회이＞ | 중항－우브자가 될tㄹ 사강 | 후배자둥이신창시 | （4）4994） |
|  |  ＜순가구와쿨의이〉 |  |  |  |
|  | 방연서앙에 간한 신고서겨쳘 ＜신가궁⿱유여임 |  |  |  |


| 시홍렬징 | 실시사항 | 선시기간（지） | ग뚱ํㄹ | 팬교삊조 |
| :---: | :---: | :---: | :---: | :---: |
|  | 화른 허연 후보자，그의 <br>  <br>  <br>  ＜선가구여쀠이이＞ | 정딩 후보자가 <br> 돌⿻上丨三ㄴ사암 | 후브자등쌔서청시 | 판4984 |
|  |  <br>  |  |  |  |
|  |  <br>  <br>  |  |  |  |
|  |  실ㄹ서주혈〈서가구위탄회이＞ |  |  |  |
|  |  ［표욕하변ㄱㄱ］ |  |  |  |
|  |  ［표욕훕번거］ |  |  | 교묘맘천가 군리규치닐 |
|  | 구ㅂㅏㅏ 인중의 안영신로《선구구워융화＞ |  |  | 7 7 T 21 |
|  | 기텀흠누 ＜손가구웅ㅎㄴㅇㅚ＞ |  |  | ［198494， 156 （1） |
|  |  <br>  ＂주보하액ㅇ |  | 후보자퐁란 산헝시 | 벞ㄱㅈㅇ |
|  |  | 선가구ㅊㅝㅚㅚ |  | Ti＋242 |
|  |  ＜2램 뮤원여에 |  |  |  4205 <br> 규28810， 1122 |
|  | 시가수부앙－선거안탁소장－서가사무원－ <br>  ＜러힢와연화이＞ | 정둥 후보조． 손가사무앙앙 선가연란소장 |  | घ2637． 3205 $7428 \% 122$ |
|  | 넌거사파장 손가온바소장 안꼉의 안명선교 <br>  | 정당 후보자 석파사무항． 선가면란소냥 | 번잉 그네선고시 | $\stackrel{7}{1} \times 21$ |
|  |  <br>  | 종당 후부주 선가연라소장 | 후보자둥무룔 선중한ㄷㅐㅐㅐ， 슨겨앤버소 함치시모롤 하는패 <br>  | 정물붑 34 （1）（3 1350 <br>  |
|  | 정처자굼역 수입련 지출율 위현 <br>  |  <br> 선가연악소쟝 | 회겨적임자를 선맘 선고한 뚜 | $\begin{aligned} & \text { 정금ㅂㅂㅂ34(4) } \\ & \text { 청륭ㄱ34.6 } \end{aligned}$ |
|  | 파선건ㄴ조혀 ＜영목기준지 련할구시열－면여 <br>  | 산개구뮤ㅊㅚㅚㅚ | 무브자훙짜ㅁㅏㅏ갈 후 | $\begin{aligned} & \text { 빰49 } \\ & \text { 규:00 } \end{aligned}$ |
|  | 진과기룩ㄱㅗㅗㅎㅣ <br> ＜선거구 론할 겸칩형읙 장이게＞ | 산수구영회 |  |  |
|  |  |  | 후보자둥차ㅁㅏㅏㅏㅁㅁㅜ |  |
|  | 푸표용지 인네용고 작겅－호ㄹㅜㅜ ＜구시 를뫄영힝＞ | 순수교영회 |  종한 후ㅈㅔㅐㅔ 왕이 | Tinc |
|  |  <br> 인새소의 명청 소제자 궇고 | 시 도위눤여 <br> 구시 루유웡회 |  지졍영이 | 밥1152\％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공직선거 업무편람]


| 시홍열장 | 실시사항 | 선시기간（지） | गㅣㅜㅜㅇ열 | 판개빛조 |
| :---: | :---: | :---: | :---: | :---: |
|  | 넌거운동용 자동자천바의 패지무선정 <br>  | 후보자． <br> 선가사루ㅎㅏㅑ <br> 선가맨릭소홓 |  온훙하겨는 ${ }^{14}$ | $\begin{aligned} & \text { W59/4 } \\ & \text { in482 } \end{aligned}$ |
|  |  |  |  불옹하는ㅁ |  |
|  |  <br> ＜ㄹㄹ할구 시 군와웡회 게시탄애＞ |  |  | \＃ 712712 <br> 규 $145 \%$ |
|  |  <br>  | 락븝위여외 <br>  | 분밥선전ㅁ⿱ㄴㅁㄹㄹㄹ 우옹하려 아가니 <br>  | 밥 27200 |
|  |  <br> 잡훙인〉 gㅕㅇㄱㅗ <br> ＜단옹인 주스미기지시 |  | 반송요 중자한 प区 |  |
| 5． 25 （금）가지 |  ［지쌍자히다ㅂㅏㅕㅈㅇㅇ선기． <br>  | 후붓자 |  |  |
| 5．26（5） ）$^{\text {P }}$ 지 | 손가민명푸（거소푸표신고민형후）시흔 <br>  | 구서 군의장 |  | $\begin{aligned} & \text { H1465 } \\ & .7818(4) \end{aligned}$ |
| 5．27（들）에 |  | 구서 구인장 |  | \＃ix 4 （1） |
|  |  ＜구－시 류뮈련혀애＞ | 구 시 군며장 | 가소蒝표신몼인여ㅇㅜㅜ 마정 후 지제 뭆이 | 균6\％ |
|  | 거소루표신고섯ㄱ거수푸표신표pㅣㅁ형부 <br>  ＜가시，군후연여이＞ | 7 ㄱ．서 구눡앙 | 가소부표선고인졍ㅁ 항점무축시 | 71609 |
|  |  | 간4구의 8 |  | 77144 |
|  | 선가임명무 염함 및 이의신형 ＜구시 근의 징애기＞ | 선가주ㄴㅏㅣㅊ 누구튼지 | 소가인명부작혁기가 만르렾의 다융 나ㅈㅜㅜㄴㅓ 3 여린 |  |
|  |  ＜선청연，ㄹ⼰게인，구 사 구웇혀외이＞ | 구시순의장 | 이어손정이 일 난의 다볼눔깨지 |  |
|  | 이웟ㅅㅅㄴ엉 켤홍네 매한 분멱신충 ＜그시 굴휘현영ㅁ | 이바신종현 잔겨인 |  반은 쿰의다옴 넬까지 | 밥 $42 \times$ |
|  |  손충힌，편계연 구 사 루익장액 | 구서 구와을회 | 홀뭉시넝이이씬 볼의 다음 떾칯 | 판422 |
|  |  | 얘비후붖ㅈ |  3위에지 | 팝60이30 |
|  | 겅따밤홍엔표 송부 <br>  <br> （자방지치다ㄴㅏㅏㅇ선가，교윰갑천거딫 <br> 지역구국회약윔선기］ | 순서구ㅇㅝㅝㅝㅚ |  | 4 4873015 <br> 규 382 <br>  |
|  | 구보자익 궁족웅울장 둥보 <br>  중영후령회이 <br>  지악구국회잉웡선기 | 한국망홍여사 <br> （자역용숙구） | 후보자의 겸랙앙송 <br>  |  |
|  |  ＜낭옹시년 경염：킨허자이게＞ | 선가구¢ㅇ연치 | 원고나항을 오정파온 <br> 매재쑈 련이 | $\begin{aligned} & \text { 보영) } \\ & \text { 규39(1) } \end{aligned}$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공직선거 업무편람 ]

| 시중였장 | 선사잘 | 설시가년(x) | ग줄 | 하게풀ㅈ |
| :---: | :---: | :---: | :---: | :---: |
|  | 앙송시셜주간 검력방영 철시 동보 <손거구묘원외이> | 앙숭시쳘 궁밍 간리따 |  | 붑 $74 \times 7$ |
| 5.29(화)叫지 | 거소투패순고인율 수홍하고있는 기리 시널믜 명힝가 소재지믗 가초무보신교면후 동 신교 <찬일구-시•군워횐외에> | 기란사여익장 | 가소푸표신마갑빌 무 32ํㄲㄲㅐ | (251490 |
| 5. 30 (수) 부터 <br> 5.31 (옥)마지 | 씬가인형부 누라자 률제선쳥 <구시 규위뻰회아> | 후잠 설가군채 <br> 구사균의 장 | 이막선정가잠ㅁㄴㄴ료멸의 <br> 다옵난부버선가민뽀ㅇㅜㅜ <br> 비정뎔 전율깨이 | , 11433 |
|  |  송사 켤정 통지 <br> <<구시 군의징, 신홍이이믹 | 구•시•구솨웡회 | 홍재선중이 있는 난의 다흠룰까이이 |  |
| 5.30(수) 까지 | 선가벼높개률 <br> <구-시-굴위여ㄴㅚㅚㄱㅏ 지정하는 장소> | 푸보자 | 후보지등련마렬여ㄹㅜㅜ $5 \%$ 피지 | 밥 54.3 |
| 5.301수)까지 | 거소투표닌고인을 두옹하고있는 기련-시셜의 홍징가 소재지말 거소푸표신고인수등 ㄹ⼰로 | 구서 구ㅇㅟㅝㅝㄴํㅊ | 서고만표울이다ㄱㅜㅜ널까치 |  |
|  |  <10ggㅇ미만의 거소투표선교인율 수용아고읐는 기란 시츨의 충이기 | 푸보저 <br> 선거수무장 <br> 선가현히소장 | 중고월훌조이ㄴㅐㅔ | 방149(4) |
|  |  <구 서 군아연혀애> |  정항당 |  | 7403 |
|  |  | 기란-시술멱장 |  | 밥14995 |
|  | 기란-시녈안의 기프 출치 운형옇시 핯 장소굴고 | 퍽인 시 긴슈영회 |  | $\begin{aligned} & \text { 밤14495 } \\ & 7 \$ 104 \end{aligned}$ |
| $\begin{aligned} & \text { 5. 31(문)부버 } \\ & \text { 6, 12(확) } \end{aligned}$ | 섯거울도이간 |  |  서가걸 전위깨지 | H1959 |
|  |  <br>  및그비영ㅂㅜㅜ <br> <구서군의 장이기> | 후보자. <br> 선파사우창 <br> 순거연라스장 |  |  규 481 |
| $\begin{aligned} & \text { 5. 31(못)붑 } \\ & \text { 6.13(수) } \end{aligned}$ | 후브자익전과기영 옾함 <br>  | 누구튼지 | 슨ㄱ긱ㄴ옹 |  |
| 5. 311 옥)부터 <br> 6. 12 (화) गㅏㅏㅈㅣ |  <br>  <br>  피라대패시 도외웅선게 | 사도선가망 트몬위훤외 | 선거우옹ㄱㅣㅏㅏ중 | 봅 82 용ㅈㅇ 퍼자볍ㄴ90 |
|  | 선가방옹로봉와훵회 주련 두보자 <br>  <br> [자지구 소 군릭장 선러및 <br>  | 구시규낸거밤울 트른워텬외 |  | 85820920 |
| 6. 1(A) 가지 | 선가공호재욤 <br>  | 훕ㅂㅈㅏ | 후로자둥호마맘일요 굴까지 | $\begin{aligned} & \text { 48665 } \\ & 743055 \end{aligned}$ |
|  | 선가탁보 포추 | 구시군마줭외 | 제출마맙임 후 2 릭 <br>  | 131643 |
|  |  <br>  <br> 웁ㅈㅈ정보종개자인 포흄 이이제가에 <br>  <br>  | 저셜요구뿐혼 이히저기치, 후보조 | 오구묻든 누분 32 이내 | $\begin{aligned} & \text { 반640, } 655 \% \\ & ㄱ ㅠ 2997,1308 \end{aligned}$ |


| 시홍렬장 | 별지사항 | 선시기간（지） | ग줏ㅇㄹ | 판게빤조 |
| :---: | :---: | :---: | :---: | :---: |
|  |  <br>  <br>  <br>  사별 종프및공고문사는 푸표구과 사전뚜를스푸표스 입구애섬부 |  선거구여쎤회 | 종명서 ${ }^{[ }$의 저 <br>  | 뷴 646 ． 2, <br> 1659 <br> 귝993．930 |
| 6． 1 （금）까지 |  <br>  | 구새 구누률회 | 넌거인 천 12 렦까지 <br>  | 서ㄴㅜㅜ분ㄴS4 <br>  |
|  | 보조무련 후줜읠리 <br>  |  |  |  <br>  |
| 6． 7 （금에 | 선가연명부 하ㅍㅓㅓ | 가．시 구잉장 | 선거잊전 129이애 | （19440 |
|  | 더가문병부 와정섬홍 쑹호 및 <br>  ＜＜구시군아훤혀이＞ | 구사 룽의잠 | 선거인밍부 혁짐 무 지지 여𧰨이 | 73163 |
|  |  ＜＜구시•그위힌회이＞ | 구시 군의잠 | 선가이영웁 쳐졍병훙⿹ㅗㅇ보시 | 77n4631 |
|  | ⿹ㅣㅇ협선가안명푸 적성 | 중앙워줜화 | 혹정딘 선가안명붐의 <br>  | 밥ㅂ4읙21） 3 <br> 규169221 |
| 6．2（是）부터 <br> 6． 13 （수）가ㅈㅣㅣ |  <br> 息．만 둥듀원회매 <br>  <br>  <br>  | 구．41 군의장 | 선거인뼝푸 와경 구 포졀시마매 |  |
| 6． 2 （도）부더 <br> 6．13（수）ㄲㅉㅈㅣ |  <br>  <br>  괴옹적 즈치 | 구．서 군의장 |  <br>  | 43447 |
| 6．3（일）께지 | 후표소의 잉헝과 소쥬지 귱그 |  |  | \＃В147⿺ |
|  | ㅁㅜㅜㅍㅛ 봉지 어소투패순고힌이기＞ | 구서궁ㅇ에회 |  | 불1882： <br> 51900 8.51910 <br> 귱95 |
|  | 고수푸푱ㅇ이찰송 <br>  애소푸표신기민아깅 | 구시 구눙⿹勹巳刂 뙤 |  | 븝 $65 \%$ 154（1） 5 ： 1212 |
|  |  | 구서군¢ㅠㄹㅎㅚ |  | ： 81658 |
|  |  （션가홍보 동궁）매써두이） |  |  | 밥 650. <br> $115312.1211 \%$ <br> 균127 |
|  | 우룬푸표합 비지 |  |  | Fif80\％ |
|  |  <br> 《핟ㄷㅁ 선가민애개＞ | 구시 군¢ㅕํ외 |  저쳐영이 | $\begin{aligned} & 41542 \\ & i+71782 \end{aligned}$ |
| 6．4（뤌ㄱㄲㅏㅏㅣ | 새진푸표셔의 병청－소쥬지 및철차 운영기라 공고－후ㄹㅔㅓ ＜선가사뭊ㅇㅇ 선가언힉소장읶＞힛 우표구마다 공ㄱ⼯룬쳐ㅇㅜㅜ | 구서 군유욘 |  | 풉 1488 균83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공직선거 업무편람

| 시중말ㅈ8ㅇ | 잣ㅆㅆㅆ항 | 선서기튜(ㅆㄱ) | गब저제 | 갠게판조 |
| :---: | :---: | :---: | :---: | :---: |
| 6. 6 (수) ${ }^{\text {Pr\|x }}$ | 사편투표소의 점귤인 선잠-신고 <br>  | 정담 후보자. 선개ㅅㅏㅜㅜ옹․ 선가면이소 |  | 245627272132 7437 |
|  | 사주ㄴㅜㅜ표맘랑인성형 <br>  <br>  | 용악동ㅇ¢신의 |  |  |
|  | 투프애지동ㅎㄹㄹㄱ |  |  | [41523) |
| 6. 7 (목) $)^{\text {P }}$ 지 |  <br>  | 서젖푸프련리란 |  | 77689 |
| 6. $8($ 글)부버6. 9 (토)께지 | 사전푸포뤂ㅍㅍ [오쩐6시푸보ㅇㅜㅜ 6시까지] | ㅅㅜㄴㅄㅜㅜ표를맃 |  | 밥녕․ 51552,158 |
|  |  <br>  <br>  | 사ㄴㅐㅜ퍂ㄹㄹㄹㄹ륜 | 마잴의 새준투프아하ㅂㅜㅜ는 <br>  | [194589 |
| 6. 8(7) ${ }^{\text {( ) }}$ 지 | 개표소 궁ㄱㄱ(ㄱ개솟ㅇㅏㅏㅇ 섷차 시 <br>  <br>  | 구시 그ㄴㅘㅒ트의 |  |  |
|  |  <br>  상영-무소여교부신형 <루사 근의항매각 | 후스자 |  | 77\%4313 |
|  |  <br> (래이앙의 개표소 별치새 |  |  |  |
|  |  |  | 서구ㅈㅐㅏ 32\% | 반샂ㅇ |
|  |  | 굿ㅅ구ㄴㅜㅕㅇㅚㅚ |  | 891400 |
| 6. 11 (f) ${ }_{\text {(f) }}$ )지 | 쑥파한자잉 선장 신교 <br>  | 종당 후부자 <br>  선가영하소장 | 스거유ํ 23pmid | 8 |
| 6. 12 (\%) ${ }^{\text {a }}$ ) $\times 1$ |  <br>  <br> 반옹된 거소푸프싯고민믜 <br> 방빈작명동지 <br>  |  |  | 82154] |
|  | 푸프홍지와 부표함 <br>  훞ㅍ용지, 푸표함 선거인명후 <br>  |  |  | 8 |
|  |  | 옴면 동여원뾰 투펴견리련 |  |  <br> 군ㅇㅇㄱㄱㄹ |
|  | 후펴침간연 선징 (우표참란연익신고가 영가나 선장 슨교한연원수가 4영 마둘 시 | 균만, 둥위운의 |  | \#\#610 |
|  | 개표충ㅇㄱ채베 | 구서군여최외 |  |  |
|  | 재표맘륜언 성장 신고 <br>  | 중당 후보자, 손가사후장 서거건랍소오 |  | \#3181\% |
|  | 개표잠칸인 선항개표칠린인의 선겍) 안가나. 햘정당 노는휸 푸부사가 <br>  | 구사 주와쳥외 |  | $4 \mathrm{H} \times 18$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공직선거 업무편람］

| 시피ㅇㅐㅐㄴ정 | 설사시장 | 술시기란（ᄌㄱ） | 기줄멸 | 과게밥조 |
| :---: | :---: | :---: | :---: | :---: |
| 6． 28 （号）加지 |  <br>  | 선가구후녀외 | 선가훌 후 15래쌔ㄲㅣㅣ | 7h250 |
|  | 〈선가구혀원의이＞ | 해닥기다자 |  | 815972 |
|  |  간힐 개무서항아게 위디징수 요구 | 선가구여ํ욏 |  | （19573） |
|  | 동선민영재싼신고서 사는 둥후 <br>  | 선가구여워의 | 담선민 쳐징 후 15릴 이새 （으총이욘는 경무） | 팝ㄴ996 |
| 7．3（화）까지 |  | 외구넉영자 |  | 정흠매N0， 1 |
|  |  ［지역구구회여연선거］ | 선가닌 정당，후부차 | 선가힐후 30필 이새 |  |
|  |  ＜기바주액ㄱㄱ | 선가구워여의 |  | $\begin{aligned} & \text { 법 } 1570 \\ & 71250 \end{aligned}$ |
|  |  쏭지기다자에기망해당 지방지치튼쳐읙 짐수간아구 넘입 |  |  | 72252 |
|  | 정지자금 회규부고 여담 위윤회의＞ | 죄거걱ㅅㄴㄴㅈㅣ | 선가피후 305이이니 |  |
|  | 슨거비용 추가보징 충구 ＜선가구와뢴회애＞ | 정당 구브자 |  |  |
|  | 힝선소송 저기 《재밥뭔이》 ［지역구구영ㅇ워원선개 | 종앙 운자 | 당선안 기정ㅇㅎㅜ 30일 이노 | 國2230 |
|  | 당선연역 병확상ㅇㅇ옹보 <br>  <br>  | 사가가여여외 | 담전인 혈정염로 붑 개눌이ㅇㅐㅐ |  <br>  |
| 7．14（토）부터 <br> 7．20（금）가지 | 정지사금표포로서즁시쓴의 <br>  비용 공교 | 파훈수련화 | 외개보곰 마혈쿠붑 줄 이내 | 정쿱ㅂㅁㅁ 42010 정금규내닌 |
|  |  <br> 조사，보로 잘⼰재출요구등 <br>  <br> 딴리타 련주앴ㅆㄱㄱ | 각붑여원회 <br> （음．면 동유웡회 저외） 와윤－직켠 | 선기비용의 수입표 지술에 관하여 학인힐 피으가 있다고 연정되는 패 | $\begin{aligned} & \text { 정혈빱439 } \\ & \text { 정규 } 4300 \end{aligned}$ |
|  |  안 ＜＜구애쌘 |  |  <br>  |  |
|  |  <br>  아뮌회아） |  | 연저든지 （선가바옹온 올함기란중） <br>  | 정흠뼘 42 （3） 정믐규4413 |
|  |  이의선장 <br>  | 애아인 자 | 될팜기균중 |  |
|  | 정지자룰히겨노고서 내8역이맷삿매 <br>  라겨운이＞ | 간한와웡회 | 이야시엉훌볃온따 | 정금붐428 <br>  |
|  | 정지자훔회ㅁㅕㅗㅗ고저 내용의 련한 소영자를 제 <br>  | 위겨격ㄱ염지， 권게인 | 홍지폈분은 블부러 괼여내 | 정금뿐428 정름규42（3） |
|  | 정치자금회서복서임 이모산졍 내용ㄱㄱㄱ 소망내용등 궁고－봉자 ＜잉ㅇㅅㅊ청인애개 | 라훌뮤운회 |  <br>  | 청훔붑 429 ： |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공직선거 업무편람 ]

http://www.nec.go.kr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 공직선거 업무편람

발 행 일 2018년 3월
인 쇄 일 2018년 3월

발 행 처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전화 : 02)2100-3856
팩스 : 02)2100-4298
홈페이지 www.mois.go.kr

## 교육내용 관련 질문사항 연락처

* 법정선거사무 처리: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02-2100-3856, 3855
- 결격사유조회시스템 운용: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과 02-736-6131
* 선거인명부작성 프로그램 운용: 행정안전부 주민과 02-2076-3501, 3502
- 사건•사고 사례 및 예방,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관할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0]:    $\checkmark$ 거소투표신고서 여백에 그 확인 내용을 기재하고 담당자가 서명 또는 날인 하도록 함

[^1]:    
    
    

[^2]:    

[^3]:    
    
    
    

[^4]:    인정자가 출력물을 요청했읍 경우, 선거인명무를 직접 출력하여 제꽁찰 수 있다.

    - "파일작성" 버튼을 누르명 파일저장율 위환 장이 나타난다.

    악성하고자 하는 디렉토리로 이동 후 파일명을 수정하지 말고 "저장" 버튼을 누른다.
    전체 루표구간으로 조회하여 작성하며, 성거인/거소후표신교인 명부 파잍이 푸표구단외로 각각 생성된다.
    O 생성된 파일은 앙호화된 파일로 지정된 프로그램으로만 츌력휼 수 있다.
    
    -> 선거업무 $->$ 자료일->게시번호 '40336' 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함께 제굥

[^5]:    
    
    

[^6]:    

[^7]:    

[^8]:    결격시유조하시스벰선거권없는자 관련 설명

[^9]:    

